기본과제 연구관리-2024-075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of the Ukrainian Reconstruction Project

이상헌
성장환
정연우
송영일
이승은

LHRI-B
Land Housing Research Institute Basic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관리 2024-075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지 은 이 이상헌, 성장환, 정연우, 송영일, 이승은
발 행 인 정창무
발 행 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주 소 (34047) 대전 유성구 엑스포로539번길 99
홈페이지 http://lhri.lh.or.kr

전화번호 042-866-8549
이 메 일 urbgis@lh.or.kr

• 이 출판물은 우리 공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구· 검토한 기초자료로써 공사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연구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관리 2024-075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of the Ukrainian Reconstruction Project

이상헌·성장환·정연우·송영일·이승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이상헌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연구진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연우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송영일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승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연구심의위원
이미홍 LH 토지주택연구원 실장 (심의위원장)
이삼수 LH 토지주택연구원 단장
임주호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임보경 LH 글로벌사업처 팀장
임재빈 충남대학교 교수
방설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자문위원 (가나다순)
김현수 한양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이동우 ㈜맵인어스 수석연구원

연구요약 Summary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필요성 증대

-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RDNA2 기준 재건 비용의 총 규모는 4,110억 달러, 그 중 주택 관련 재건 비용은 686억 달러로 추산
- 주요 재건 분야는 주택, 인프라, 산업시설,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 등으로, 그 중 주택 피해는 전체주택의 8% 수준인 140만 호(아파트 중심)로 집계

○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 심화

- EU, G7 등 주요국과 EBRD·EIB·WB·IMF 등으로 구성된 MDB를 중심으로, 재건목표 수립, 원조기금 조성 및 총괄, 포괄적 복구패키지 수립 등 추진
- 향후, 안정적 자금조달이 확보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참여 경쟁이 예상되며, 특히 최대 공여국인 EU 및 미국 등이 재건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경우 2023년 7월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합의

- 안보지원, 인도지원, 재건지원의 3대 분야에 대한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 합의
-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인프라 시설의 재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전쟁피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정부 차원의 협력
- Grant, EDCF 등 다양한 공적 자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 및 추진

○ 재건사업 진출시 고려해야 할 우크라이나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 제도는 미흡한 상황

- 우크라이나 도시계획 및 관리 관련 법률은 40개 이상으로 다수 제정되어 있으나, 각 법률의 방향성이 상이하여 오히려 도시 개발 저해
- 국가 차원의 발전계획은 목표연도 2020년 계획 이후 갱신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 계획 또한 오래 되거나 부재한 상황

○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추진과 LH 및 국내 민간기업들이 재건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진출 기반 구축 필요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현황 및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제도 등을 살펴본 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현황

• 도시개발 동향

○ 도시화율 및 발전 경향

- 우크라이나의 도시화율은 2022년 기준 약 69.92%로, 2012년의 68.78%에 비해 연평균 약 0.16%씩 완만하게 상승
- 정부의 도시 개발 프로젝트 및 각 지역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2020년대에 들어서는 연평균 0.2% 이상의 증가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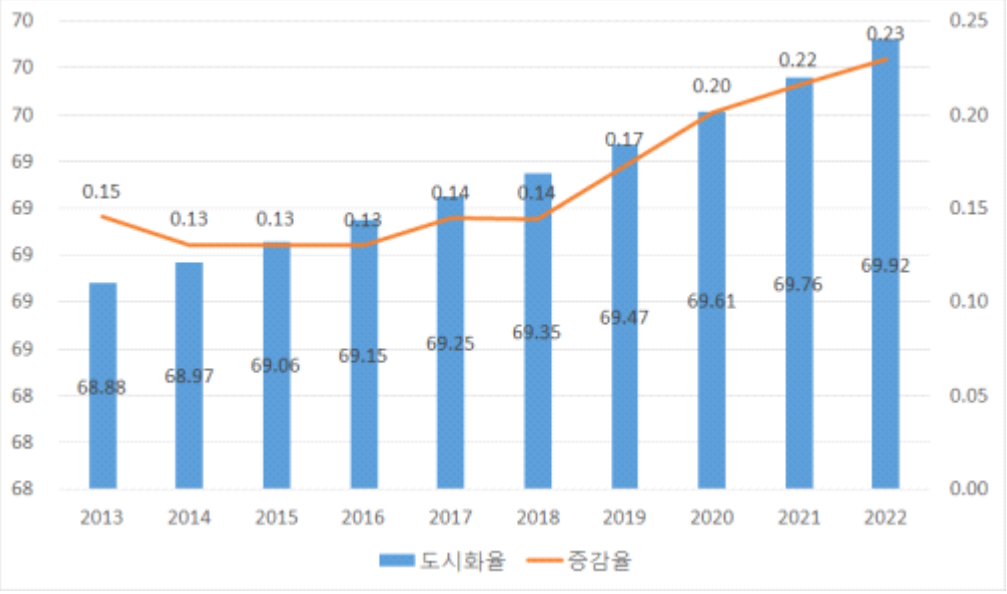

[그림 1] 우크라이나의 도시화율 추이

<출처 : Statista(2023)>

○ 도시개발 정책과 지역개발 전략

- 우크라이나는 "지역정책기본법(Law on Principles of State Regional Policy)"을 기

반으로 국가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개발 추진

- 이를 위해 2012년에 설립된 국가지역개발기금(SRDF)은 지역별 인프라 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매년 예상 세입의 1% 이상, 2023년부터는 1.5%를 기금에 배정하도록 규정
- 하지만 2021년 SRDF에 배정된 예산은 총 세입액의 0.4% 수준인 45억 UAH으로, 실제로는 최소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2014년 EU와의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이후로 경제적 분산과 지역정책을 중점과제로 추진

- 분산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와 함께 2022년 6월 EU로부터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
-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지역개발 정책과 EU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舊소련 시대에 주요 중공업 단지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발생한 지역별 격차 양상과 유사한 형태로 GDP가 편중되는 등 지역별 발전 격차 여전

• 인프라 피해 동향

○ 전쟁에 따른 인프라 피해 확산

- 2022년 러시아의 침공으로 주요 도시 인프라가 심각하게 파괴되었으며, 키이우, 마리우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피해 확산
- 특히 도로, 철도, 전력망, 에너지 인프라가 크게 손상되었고, 이로 인해 전력 및 에너지 공급망 복구가 긴급하게 요구됨

○ 에너지 인프라 집중 공격

- 2022년 10월 이후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는 9차례 이상의 집중 공격을 받아 50여 개 이상의 발전소, 변전소가 손상
- 이에 전력망 복구와 송배전선 재건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단기적으로 약 57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됨

• 전후 재건수요 동향(3차 긴급 피해 및 수요 조사(RDNA 3))

○ 2024년 2월에 발표된 세계은행, EU, UN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동으로 작성한 "3차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 조사"에서는 전쟁 초기부터의 피해와 손실, 재건 필요성을 평가하여 전후 복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 피해액(Damage)은 RDNA 2 대비 13.2% 증가한 1,524억 달러, 손실액(Loss)은 72.6% 증가한 4,992억 달러, 재건필요액(Needs)은 18.4% 증가한 4,863억 달러 등으로 조사되어 각 항목별 규모가 RDNA 2 대비 13~73% 증가한 것으로 추산

○ 재건필요액은 공통 부문 39.9억 달러, 인프라 부문 148억 달러, 생산 부문 136.6억 달러, 사회 부문 161.8억 달러로 RDNA 2대비 18.4% 증가한 총 486.3억 달러 필요

• 우크라이나 주요 개선 목록 및 2024년 재건 우선 중점 분야

○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통합을 재건의 주요 목표중 하나로 설정

○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에너지, PPP, 토지개혁, 민간산업 육성 분야에서 제도개선 추진

[표 1] 2022~23년간 우크라이나의 주요 개선 목록

분야	주요 내용
에너지 분야	• EU 기준인 EU 클린 에너지 패키지(EU Energy Package)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략 2050(Energy Strategy 2050) 수립 • 전기공급 가격 한도 상향(전력부문 투자 유치, 공급증대 유도 효과) • 재생 에너지(특히 풍력) 투자유치를 위한 유동성공급 확대 및 투자지원 • 유럽송전시스템네트워크(ENTSO-E) 연결을 위한 우크라이나에너지공사(Ukrenergo)의 기술요구사항 도입
PPP 분야	• 정부예산법(Budget Code of Ukraine)에 PPP 방식 포함
토지 개혁	• 소규모 개인간 토지거래 허용(토지 개혁 1단계) • 우크라이나 기업의 토지구매 허용 추진중('24년 1월~) • 농업부문 투자확대
민간산업 육성	• "5-7-9 저렴한 대출"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대출금리 보조금 지급 등

<출처 : RDNA 3>

▮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글로벌 현황

•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동향

○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군사적인 지원과 비군사적인 지원으로 구분

- 2022년 전쟁 발발 이후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의 국가별 군사적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개별 공여국 중 미국이 431억 유로로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 독일 100억 유로, 영국 53억 유로, 덴마크 48억 유로, 네덜란드 38억 유로 순으로 집계
- 동기간 비군사적 지원의 경우 EU, 미국, 일본, 독일, 태나다, 영국이 주요 공여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중 인도적 지원의 주요 공여국은 독일 30억 유로, 미국 25억

유로, EU 23억 유로 순이며, 재정적 지원의 경우 EU 277억 유로, 미국 215억 유로, 일본 48억 유로, 캐나다 34억 유로, 영국 33억 유로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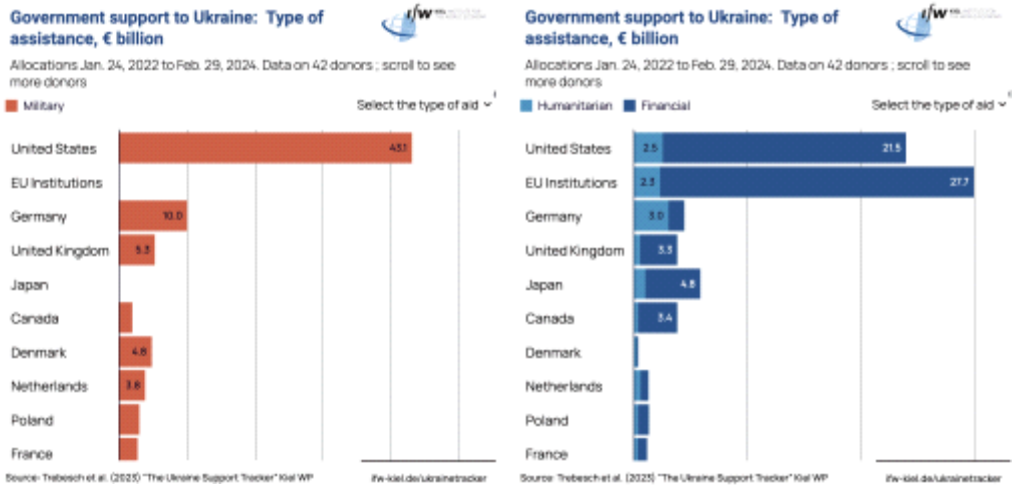

군사적 지원(십억 유로) 비군사적 지원(십억 유로)

[그림 2] 국가별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출처 : KIEL 연구소의 Ukraine Support Tracker(검색일자 2024.05.14)>

○ 일반적으로 전후 재건의 단계를 회복(recovery), 재건(reconstruction), 개발(development). 평화구축(peacebuilding) 영역으로 구분 가능

○ 현재 우크라이나는 회복단계로 '긴급복구' 사업이 진행 중

- 긴급복구 사업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립한 Ukraine Plan과 EU가 수립한 EU Ukraine Facility을 기반으로 추진
- 2024년 2월까지 EU, EU 가입국, 유럽금융기관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880억 유로(129조 원)를 투입
- 유엔과 세계은행이 긴급지원 형식으로 각각 34억 달러(4조 6천억 원)와 390억 달러(53조 원)를 조달하는 등 유럽 국가들과 EU가 주도적으로 참여

•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협력 현황

○ 한국은 2022년부터 개최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의지 표명

○ 2024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3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또한 참석하여 해당 회의에 참석한 60여개국 2,000여명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상황과 지원 수요

를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재확인

○ 對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 2024년 코이카 무상원조 사업 총 약 1억 달러와 함께 2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
- 2024년 4월 약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체결
- 세계은행(WB)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우크라이나 지원기금에는 각각 5천만 달러 출연을 통해 1억 달러 지원
- 미주개발은행(IDB)의 인베스트(Invest)의 운영 전략 이행 계획에 지지를 나타내면서, IDB 인베스트 증자에 정부도 1억5천만 달러 규모로 참여의지 표명

▮ 전후 재건사업 진출 사례의 시사점

• 이라크 전쟁 재건사업

○ 전쟁의 경과

-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자유 작전(Operation Iraq Freedom)”이라는 작전명 하에 미국의 침공 개시
- 4월 9일에 바그다드 함락과 함께 후세인 정부 붕괴
- 2003년 5월 1일 후세인 정권의 붕괴와 종전을 선언하며 전쟁 종료

○ 전후 복구과정

- 동맹군 임시행정처(CPA) 주도로 지속되어 오던 군정이 2004년 6월 이라크 임시정부 구성까지 통제
- 이 기간동안 긴급 재건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선진 원조기관들의 활동이 빠르게 전개
- 이라크 치안은 연합군 주도의 치안강화활동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
- 2004년 중반부터 2005년 12월 주권정부 구성을 위한 이라크 총선까지 이라크 내 각 정파·종파간의 이해관계와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활동 강화로 인해 치안불안 급격 증가 및 재건지원 난항

○ 재건 과정의 시사점

- 이라크 정부의 ISRB(Iraqi Strategic Review Board)를 통해 이라크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 선정 및 조율
- 이라크 개발 프레임워크와 중장기 개발전략 제시를 통해 각국의 이라크 개발원조

가 통합적으로 추진

- 하지만 일부 공여국이 ISRB를 통한 사업심사 및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 진행한 사례가 있으며, 이라크 정부의 제한적인 역할로 인해 사업의 중복 및 우선순위 사업의 배제
- 또한, 치안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한 치안비용 증가로 원조사업의 축소, 변경, 취소 사례 존재

• 리비아 전쟁 재건사업

○ 전쟁의 경과

- 2011년 2월 리비아의 제 2도시 벵가지에서 42년간 독재해 온 카다피 정부에 대한 반정부시위 발생 및 확산
- 3월 국가과도위원회(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NTC) 발족 후 NTC군과 정부군의 내전으로 발전
- 8월 NTC군이 수도 트리폴리에 진입하여 승리를 거두고 신정부 수립 선언

○ 전후 복구과정

- NTC는 향후 5년 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사업 추진 계획 발표(정유시설 포함 인프라 분야 1,200억 달러)
- 리비아 원유 생산량 복구에 따라 중국과 원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UAE의 정유시설 투자, 영국의 중단되었던 리비아 유전 탐사활동 재개하는 등 외국인 투자 증가
- NTC군의 승리 이후 민주화로의 이행보다 종교와 부족 정체성이 결합된 군벌 또는 파벌 간의 경쟁으로 변질
- 2014년 수도 트리폴리를 거점으로 하는 제헌의회(General National Congress, GNC)세력과 동부 토부룩을 거점으로 하는 대표자의회(House of Representatives, HoR)세력 간 내전이 발발(2차 내전)
- 현재, GNC(또는 GNA)와 HoR & 리비아국민군(Libyan National Army, LNA) 간의 대립이 한 축을 이루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이해관계에 따라 각 세력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대립 구도 형성

○ 재건 과정의 시사점

- 리비아 건설시장을 3등분하고 있던 한국과 중국, 튀르키예 중 나머지 2국가 대비 한국 건설사의 경우 현지에서 이익만 추구한다는 부정적 이미지 형성

- 1차 내전 종료 이후 2차 내전이 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
- 이에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 특히 안전 확보에 대한 대비 필요

• 아프가니스탄 전쟁 재건사업

○ 전쟁의 경과

- 9.11 테러사건 주범들에 대한 인도 요청을 탈레반 정부가 이행하지 않자 2001년 10월 7일 미군 주도의 군사공격 전개 이후, 11월 탈레반 정권 붕괴
- 12월 임시 통치기구 구성 합의 및 신헌법제정을 위한 제헌의회 소집을 요청하는 "본 합의서" 서명

○ 전후 복구과정

- 2001년 11월 14일 안보리 결의안(1378) 채택 : 과도정부 수립을 지원에 UN이 중심적 역할 수행
- 2001년 11월 27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 개최
- 2001년 12월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도쿄 각료급 회의 개최 및 재건사업의 우선분야 결정
- 2004년 3월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한 베를린 각료급회의에서 국제치안지원군(ISAF)의 지속 주둔, 지방에 대한 치안유지 활동 및 재건과 개발노력 지원, 제 1단계 무장해제(DDR) 계획의 이행 등 합의
- 2006년 1월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을 위한 런던 각료급회의에서 "아프간 국가개발 전략" 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담은 "아프간 협약" 체결

○ 재건 과정의 시사점

- 승전 선언 이후, 20여년에 걸쳐 전쟁이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인 테러로 인한 안전확보 비용 문제 바생
- 우리 정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원조예산의 제약에 의해 초기 서약한 지원금액 대비 적은 금액 지원
- 현지 경험이 풍부한 NGO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 필요하며, 문화와 스포츠 등 원조 분야의 다변화 또한 필요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법·제도

• 우크라이나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제도 개요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 필요

○ 우크라이나의 공간계획 체계는 법·제도 상에서는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지방(local, 정주지)의 3 단계로 구분

- 하위 단계의 공간계획은 상위 공간계획의 방향에 부합해야한다고 규정
- 국가공간계획의 경우 2020년 이후의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역(regional) 수준의 공간계획 중 4개 지역(주, oblast)을 대상으로 하는 주 영토 계획 또한 현 시점에 부합하는 최신 계획이 부재한 상황
- 군(raion)의 영토 계획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이 전체 군(raion)의 27%이며, 과거 수립 이후 개정되지 않은 군(raion)의 영토 계획이 61%로, 총 87%의 군(raion)에서 영토 계획 수립이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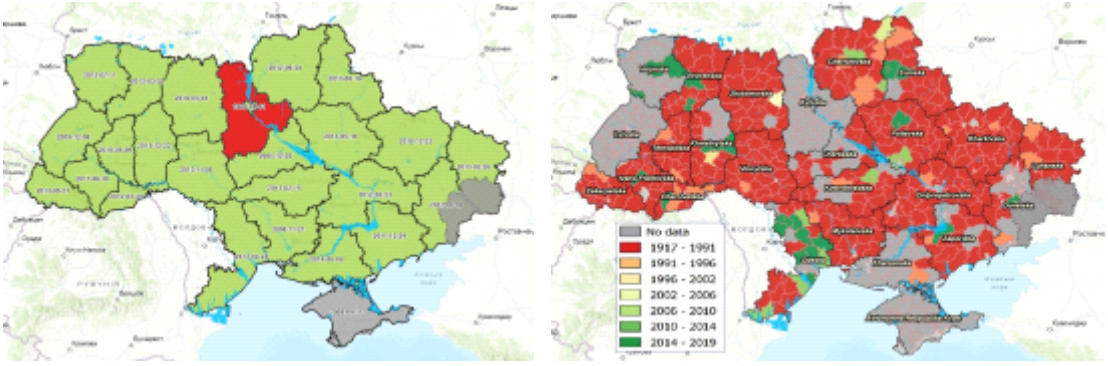

주의 영토계획 수립 현황　　군의 영토계획 수립 현황

[그림 3] 주 및 구역의 영토계획 수립현황(2020.07 기준)

<출처 : Decentralization in Ukraine>

○ 전쟁 발발 이전 우크라이나 건설시장 진출 방안과 전쟁 중 또는 전쟁 직후의 진출방안을 구분하여 검토 필요

○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지속적인 피해를 입으며 국제사회에 재건을 위한 원조 기대

- 전쟁 발발 이전보다 신속하고 간결한 절차에 따라 재건사업 추진
- 건설면허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계엄기간 중에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원전 건설 및 시운전 등 일부 법률에 따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건설면허가 필요치 않은 상황
- 계엄기간 중에는 일부 제한된 건설업 분야에 대해 허가없이 통보만으로도 사업 수

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엄령 종료 또는 취소 이후 3개월 내 당국에 사후 허가 신청 필수

• **우크라이나 국가재건계획**

○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2022년 수립한 국가재건계획에 의거하여 진행 예정

- 우크라이나의 국가재건계획에서는 당시 추산한 총 복구비용을 7,500억 달러 중 약 1,500억~2,500억을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물류망 개선, 에너지 자립 및 그린딜 사업 추진에 투자할 계획 수립
- 해당 부문은 LH의 주요 업역인 도시 및 주택개발과 함께, LH를 주축으로 관련 공기업 및 민간기업들과 One Team Korea를 구성하여 다양한 인프라 건설과 연계한 진출방안에 부합
- 이에, 기존 해외사업 진출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사전에 마련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도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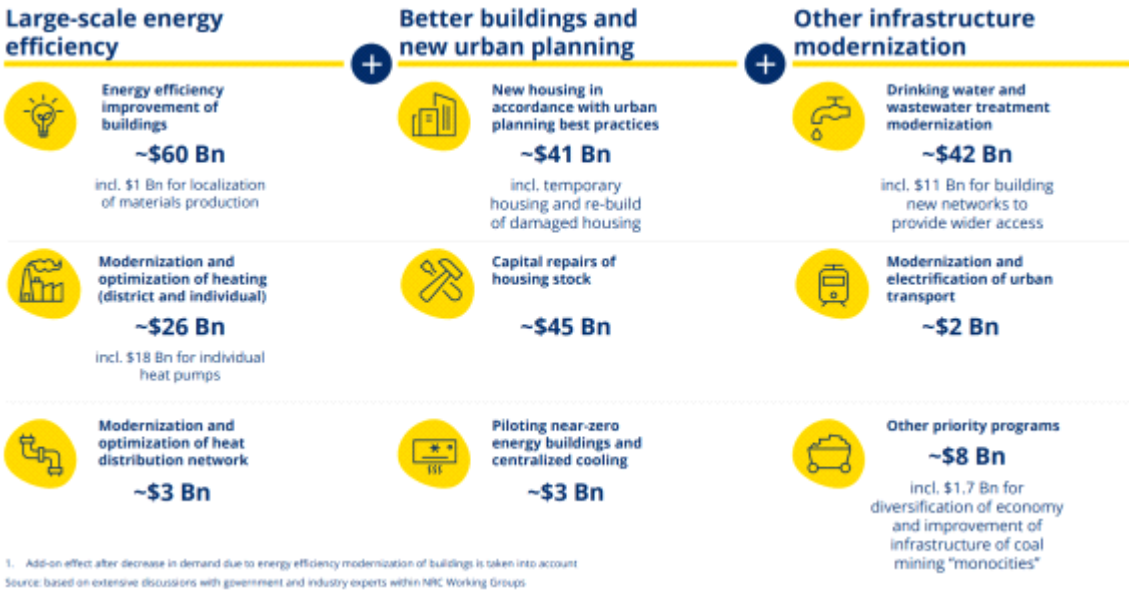

[그림 4]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프로그램

<출처 : National Recovery Council(2022)>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방안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해 앞선 현황분석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동향, 과거 전후 재건사업 사례분석 결과, 우크라이나 법제도 등을 종합하여 분석 필요
- 이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SWOT 분석방법 활용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국가 • 정부의 강력한 진출 의지	국가 • 서방국가 대비 저조한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LH • 도시·주택 분야의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 • 국내 유관 기관과의 연계성	LH • 해외사업 경험 미흡 • 공기업 예타 실시에 따른 지연 • 해외사업 추진 분야의 축소 • 해외 투자과정의 복잡성
기회(Opportunity)	• 많은 인구로 인한 사업의 수요확보 용이 • 체코, 폴란드 등 V4국가와의 인접성 • 전쟁으로 인한 풍부한 재건 수요 • 재건을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 도시계획 및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LH가 강점을 갖는 사업 중심으로 재건사업 진출 • One Team Korea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 •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제시	• One Team Korea 구성 시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업 포함 • ODA·ECDF 등과 연계한 사업구도 • 해외진출관련 기능 강화 및 진출 요건 완화 • 내부 규정 개정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절차 마련
		SO	WO
위협(Threat)	• 전쟁으로 인한 대내외 정치, 안보 불안 • 열악한 재정 상황 • 노동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 • 서방을 중심으로 한 다수 국가의 진출에 따른 경쟁 • EU 미가입으로 인한 통관·관세 혜택 부재	• PPP사업 추진을 통한 장기간에 걸친 수익 확보 • 우크라이나와의 협정 및 ODA 등의 지원사업을 통한 진출 기반 마련 • 인접 국가로의 선 진출을 통한 사업기반 구축 • 인접 EU국가들과의 접경에 자유무역지대 조성	• MIGA 등을 통한 리스크 헷지 방안 마련 • LH 내부 리스크 평가 및 대응 방안 고도화 •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른 최대한의 정부보증 계약 • ODA 등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
		ST	WT

[그림 5]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

- 목표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서 중추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전략 수립
- 추진전략 : ①원활한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선제적 사업 추진
  ②다양한 사업방식을 활용한 재원조달
  ③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LH 내·외부 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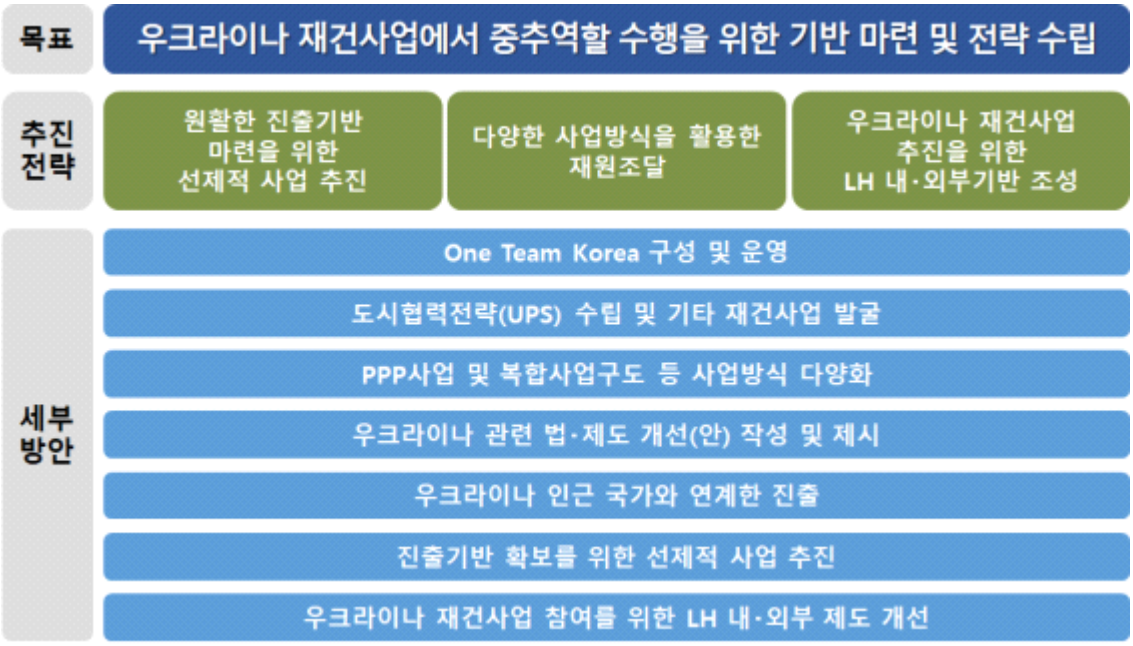

[그림 6]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목표 및 추진전략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세부 방안(안)**

○ One Team Korea 구성 및 운영

- 다양한 분야의 사업 대응 가능 : LH 주력 분야(주택 또는 산업단지 등) + 다양한 인프라 구축
- 금융 및 재원관련 공기업이 참여를 통한 원활한 재원 마련
- KIND 등 컨설팅 등에 관련 공기업 참여로 재건사업 전반에 걸친 사업추진 가능
-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LH의 부족한 해외사업 경험 보완
-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G2G)
  - 국내의 지원사업 등을 활용한 복합적인 사업 추진 가능
  - 우크라이나 정부 보증 획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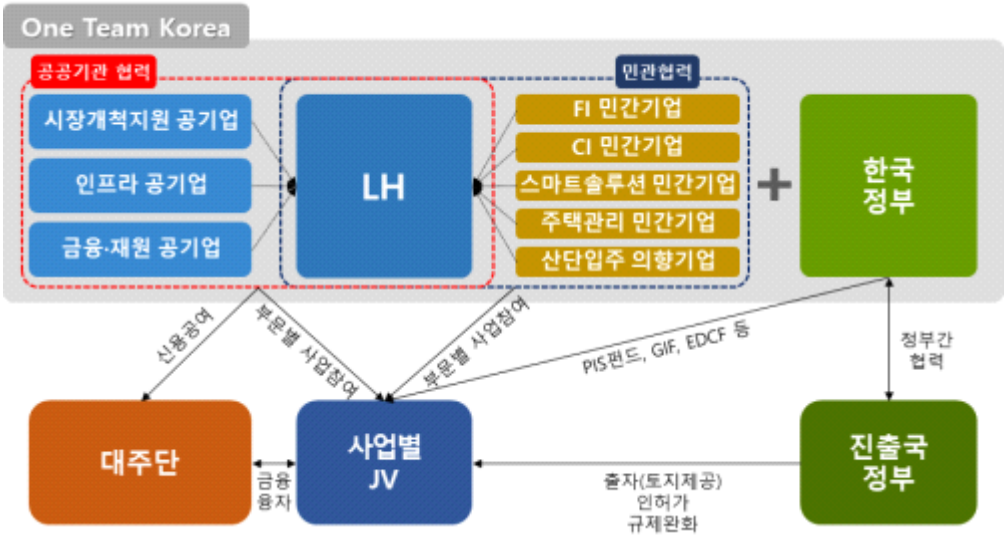

[그림 7] 해외개발사업 민관 동반진출 플랫폼

○ 도시협력전략(UPS) 수립 및 기타 재건사업 발굴

- 전쟁의 피해로 인해 도시의 복구와 현대화 등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높은 기대 수요
  -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및 지방의 중심도시 대상 도시협력전략 등 도시 발전사업 발굴 및 사업전략 등 종합계획 성격의 발전안 수립
  - 우크라이나 관련 기관에 제시하거나 유관 공무원 등의 연수에 활용함으로써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주 가능성 제고에 기여 가능
- LH가 추진가능한 재건사업 발굴 및 계획을 능동적·선제적으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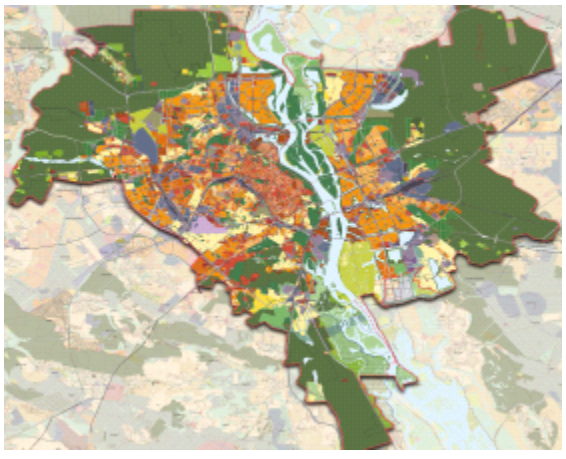

[그림 8] 키이우 마스터플랜 2040

<출처 : ГЕНЕРАЛЬНИЙ ПЛАН МІСТА КИЄВА>

○ PPP사업 및 복합사업구도 등 사업방식 다양화

-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재정 운용에 있어 해외 원조 및 차관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재건사업의 경우 도급방식이 아닌 PPP사업 형식으로 진행 가능성 高
- 복합사업방식 : 연계 인프라 구축을 한국의 EDCF 등을 활용한 재정사업으로 추진
- 사업분할방식 : 하나의 대형사업을 분할하여 LH 주력 분야 외에 타 분야와의 공동사업 추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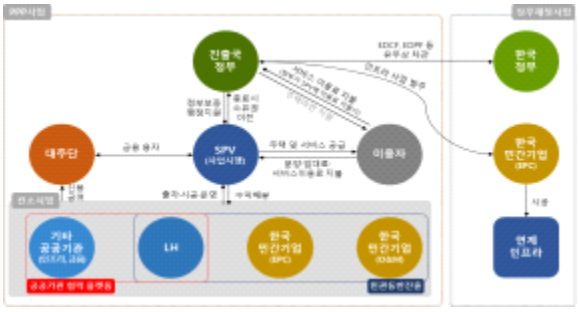

[그림 9] 복합사업 방식의 PPP사업 추진 구도
<출처 : 이상헌 외(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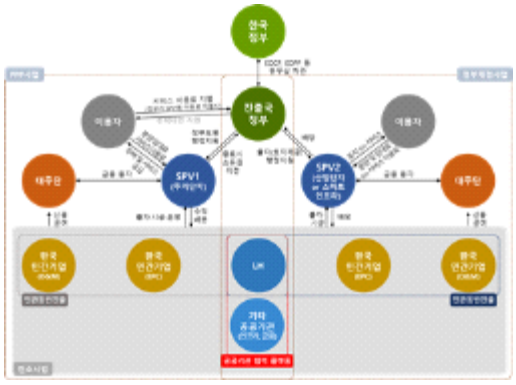

[그림 10] 사업분할 방식의 PPP사업 추진 구도
<출처 : 이상헌 외(2023)>

○ 우크라이나 관련 법·제도 개선(안) 작성 및 제시

[표 2] 우크라이나 법률 보완사항

구분	보완사항
도시계획기본법	• 공간 위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적은 편으로, 계획수립을 의무화정례화하여 국가에 제출보고하는 조항 추가가 필요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각 지방의 계획이 일관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필수 요건은 아니며, 공간 위계별로 서로 기능이 상충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기구 설치 및 운영이 필요
토지법	• 외국인의 경우 농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금지되어 있음. 향후 재건사업 추진은 기존 도시지역의 개발 및 보수가 중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도시 내에서 기능을 재분배하거나 전쟁지역과 이격된 곳에 신규 도시를 건설할 경우, 외국인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토양, 토질, 농업생산성 등의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농지 또한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 수용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수용 과정과 보상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상황으로, 수용이 가능한 조건과 수용의 과정, 수용시 보상 규모의 산정과 보상방안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외국인투자법	•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타국에 투자시 내국인보다 다양한 리스크에 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음
PPP법	• PPP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불분명한 상황으로, 인허가 관련 전담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보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히 어떠한 보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음. 따라서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고정대금 지급(Availability Payment, AP), 건설보조금(Viability Gap Funding, VGF) 등 PPP사업 추진시 받을 수 있는 정부보증 방안을 명확히 하여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와 연계한 진출

- 우크라이나는 서쪽으로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에 따라 인접 국가들에 먼저 진출하여 공장 설립 시, 종전 이후 물자 조달에 이점 확보 가능
  - 저렴한 생산비용을 바탕으로 EU 전역 제조업의 생산기지 역할
  -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 단, 우크라이나는 현재 EU 비 회원국으로, 통관 및 관세 혜택에 제약이 있어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들의 접경지역을 활용하여 자유무역지대 조성을 통해 혜택 수혜 필요
  - 양 국가간의 경제협약을 통해 해당 지역을 통할 때 통관 및 관세 등에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EU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의 기조를 고려시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들 간의 협약 성사 가능성이 높음

○ 진출기반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 추진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실시
  - 2023년 7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체결
  - 2023년 9월 6대 선도 프로젝트 발표 및 23억 달러 규모의 EDCF 공여협정 체결
- 최대 공여국인 미국 및 EU와의 경쟁을 위해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유대관계 형성 필요 →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LH 내·외부 제도 개선

- 외부 제도 개선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공기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완화 또는 면제를 통해 신속한 대응 필요
- 내부 제도 개선
  - 리스크 평가 제도 개선 : 리스크 요소 도출 및 평가, 대응을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실시하되, 전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 필요
  - 행정처리 패스트트랙 도입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하여 LH 내부에서의 투자의사결정 등의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이 필요하며, 외부적으로도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와의 협상단 운영
  - 조직구조 개편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분담**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①사업의 발굴, ②인프라 구축, ③금융 및 재원의 조달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LH 외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분담 가능

사업 발굴	해외건설협회 등	• 우크라이나 개황,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 • 우크라이나 진출 지원 → 민간기업간, 민간-공공간 연계 • 우크라이나 전황 정보 제공 등
인프라 구축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사업 연계 인프라 구축 • 인프라 구축 이후 관리·운영
금융 및 재원조달	KOICA	• 교육, 보건, 인력양성, 도시공간 개선사업 등 ODA사업 추진
	한국수출입은행	• 대출·보증·보험 등 공적 지원 • 직·간접적 지분출자 (EDCF를 통한 사업분할방식 또는 복합사업방식 등 투자)
	KIND	• 우크라이나 사업 추진 시 재원조달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컨설팅

[그림 11] 분야별·기관별 역할분담

차 례 Contents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범위 및 방법 — 3
   2.1 연구범위 — 3
   2.2 연구방법 — 5

제2장 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현황

1. 우크라이나 국가 현황 — 7
   1.1 국가 개요 — 7
   1.2 도시 및 인프라 개발 현황 — 21
2.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 동향 — 31
   2.1 3차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 조사(RDNA 3) 개요 — 31
   2.2 RDNA 3의 부문별 주요 내용 — 35
   2.3 우크라이나 주요 개선 목록 및 2024년 재건 우선 중점 분야 — 36
3.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글로벌 현황 — 38
   3.1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동향 — 38
   3.2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협력 현황 — 44
4. 소결 — 45

제3장 전후 재건사업 진출 사례

1. 기존 전후 복구사업 진출 사례 — 47
   1.1 이라크 전쟁 재건사업 — 47
   1.2 리비아 전쟁 재건사업 — 50
   1.3 아프가니스탄 전쟁 재건사업 — 53
2. 동유럽 및 우크라이나 개발 사례 — 56
   2.1 우크라이나 개발 사례(산업단지) — 56

2.2 동유럽 개발 사례 — 59
4. 소결 — 70

제4장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법·제도

1. 우크라이나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제도 개요 — 73
2. 우크라이나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률 — 77
2.1 국가 지역 정책의 기본에 관한 법률 — 77
2.2 도시계획 기본법 — 81
2.3 도시개발 규제에 관한 법률 — 83
2.4 토지법 — 86
2.5 산업단지법 — 89
2.6 외국인투자법 — 93
2.7 민관협력(PPP, Public-Prvate Partnership)에 관한 법 — 96
3. 우크라이나 국가재건계획 — 99
4. 소결 — 102

제5장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방안

1.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 105
1.1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 105
1.2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 — 109
2.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세부 방안(안) — 111
3.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분담 — 118

제6장 결 론

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121
2. 향후 연구과제 — 124

참고문헌 — 127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2-1] 우크라이나 정부각료 현황 — 9
[표 2-2] 우크라이나의 행정구역 — 11
[표 2-3] 우크라이나 경제동향 — 12
[표 2-4] 우크라이나 예산안 — 13
[표 2-5] 우크라이나 연도별 철강 생산량 — 16
[표 2-6] 최근 5년간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량 — 17
[표 2-7] 한국·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입 상위품목(2022 기준) — 19
[표 2-8]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부문 글로벌경쟁력지수 세부항목(2019년 기준) — 25
[표 2-9] 전체 추정 복구액 및 2023년 우선순위 고려 분야별 복구액 — 29
[표 2-10] 우크라이나 재건관련 주요 계획 — 33
[표 2-11] RDNA 3 주요 피해·손실액 현황 — 33
[표 2-12] RDNA 3 분야별 규모 — 34
[표 2-13] 2022~23년간 우크라이나의 주요 개선 목록 — 37
[표 2-14] 2024년 재건 우선 중점 분야 및 내용 — 38
[표 2-15] 재난대응특별기금(CRSF) 개별국가계정 지분 및 지원사업 — 41
[표 3-1] 이라크 재건비용 추정치 — 48
[표 3-2] 2011년 8월 이전 국내기업의 리비아 건설 수주 현황 — 52
[표 3-3] 우크라이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 58
[표 3-4] 브로츠와프 아마존 물류센터 개요 — 60
[표 3-5] 폴란드 주요 산업단지 현황 — 62
[표 3-6] 중러 국가급 협력구(기업) 현황 — 65
[표 3-7] Arctic LNG-2 사업과 야말 LNG 사업 비교 — 67
[표 3-8] 북극LNG-2 사업 참여 국가별 역할 — 68
[표 4-1] 국가 지역 정책의 기본에 관한 법률의 구성체계 — 78
[표 4-2] 지역 정책의 전략적 계획 문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 79

[표 4-3] 영토의 기능적 구분 및 주요 특징 ——— 80
[표 4-4] 도시계획기본법의 구성체계 ——— 81
[표 4-5] 도시계획관련 주체들과 각 주체별 권한 ——— 82
[표 4-6] 도시개발 규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체계 ——— 84
[표 4-7] 건물 및 구조물의 결과(책임)의 종류 및 관련 건설면허 ——— 86
[표 4-8] 토지법의 구성체계 ——— 87
[표 4-9] 토지 관련 권리의 종류 및 주요 내용 ——— 89
[표 4-10] 산업단지법의 구성체계 ——— 90
[표 4-11] 외국인투자법의 구성체계 ——— 93
[표 4-12] 외국인투자의 유형 및 수행 형대 ——— 94
[표 4-13]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 제도 중 산업단지 관련 인센티브 – 96
[표 4-14] PPP법의 구성체계 ——— 97
[표 4-15] 민관협력사업 이행의 기본 원칙 ——— 98
[표 4-16]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프로그램의 주요 우선순위 프로젝트 – 101
[표 5-1] 우크라이나 법률 보완사항 ——— 115

그림 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EU 및 각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 2
[그림 1-2] RDNA2 기준 재건비용 — 2
[그림 1-3] 한국·우크라이나 6대 선도 프로젝트 — 2
[그림 1-4] 연구의 흐름 — 6
[그림 2-1] 우크라이나 위치도 — 8
[그림 2-2]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 — 15
[그림 2-3]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직접투자금액 및 신규법인수 추이(1996~2023) — 20
[그림 2-4]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수주현황(1993~2023) — 20
[그림 2-5] 공종별 수주현황(1993~2023)(천 달러) — 21
[그림 2-6] 우크라이나의 도시화율 추이 — 22
[그림 2-7] SRDF에 배정된 예산 추이 — 23
[그림 2-8] 우크라이나 GDP의 지역별 산출액 비중 상위 10개 지역(2022) — 23
[그림 2-9] 우크라이나 주요 도로 및 철도 구축 현황 — 26
[그림 2-10] 우크라이나 주요 공항 및 항만 현황 — 26
[그림 2-11] 우크라이나 에너지 공급·소비 현황 — 27
[그림 2-12] 지역별 피해규모(2023.2.24 기준) — 28
[그림 2-13] 분야별 피해규모(2022.2.24~2023.2.24) — 28
[그림 2-14] 운송 인프라 복구 및 재건수요 현황(2022.2~2023.2) — 30
[그림 2-15] 전력 · 에너지 인프라 복구 및 재건수요 현황(2022.2~2023.2) — 31
[그림 2-16] 국가별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 39
[그림 2-17] 2023년 G20 정상회담 — 45
[그림 2-18]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 — 45
[그림 3-1] 이라크 전쟁 및 종전 선언 — 47
[그림 3-2] 리비아의 당시 경제성장률 및 예측치(%) — 51
[그림 3-3] 복구사업 이후 당시 원유 생산량 전망(천 b/d) — 51

[그림 3-4] 우크라이나 산업단지 분포도 ——— 56
[그림 3-5] 브로츠와프 아마존 물류센터 전경 ——— 59
[그림 3-6] 브로츠와프 아마존 물류센터 내부 ——— 60
[그림 3-7] 폴란드 특별경제구역(SEZ) ——— 61
[그림 3-8] 야말 LNG와 Arctic LNG-2 위치 ——— 66
[그림 3-9] 즈베즈다 조선소 위치와 조선단지 현황 ——— 69
[그림 4-1] 우크라이나 영토 계획의 일반 계획 ——— 74
[그림 4-2] 주 및 구역의 영토계획 수립현황(2020.07 기준) ——— 75
[그림 4-3] 산업단지 조성 절차 ——— 92
[그림 4-4] 우크라이나의 재건 프로그램과 예상 복구비용 ——— 100
[그림 4-5]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프로그램 ——— 101
[그림 5-1]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 109
[그림 5-2]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목표 및 추진전략 ——— 110
[그림 5-3] 해외개발사업 민관 동반진출 플랫폼 ——— 111
[그림 5-4] 키이우 마스터플랜 2040 ——— 112
[그림 5-5] 복합사업 방식의 PPP사업 추진 구도 ——— 113
[그림 5-6] 사업분할 방식의 PPP사업 추진 구도 ——— 114
[그림 5-7] 에렌호트-자민우드 자유무역지대 ——— 116
[그림 5-8] 분야별·기관별 역할분담 ——— 120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특수 군사작전”을 명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에 걸쳐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했으나, 우크라이나 군대와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의해 2024년 10월 현재까지도 전쟁이 지속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여론은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많은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비판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재정 지원 등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재건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기 위한 경쟁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EU, G7 등 주요국과 EBRD·EIB·WB·IMF 등으로 구성된 MDB를 중심으로, 재건목표 수립, 원조기금 조성 및 총괄, 포괄적 복구패키지 수립 등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안정적 자금조달이 확보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참여 경쟁이 예상되며, 특히 최대 공여국인 EU 및 미국 등이 재건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국가 재건 차원이 아닌 건국 수준의 대역사로, RDNA2[1] 기준 재건 비용의 총 규모는 4,110억 달러, 그중 주택 관련 재건 비용은 686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주요 재건 분야는 주택, 인프라, 산업시설,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 등으로, 그 중 주택 피해는 전체주택의 8% 수준인 140만 호(아파트 중심)로 집계되고 있다. 재건이 필요한 분야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주택 임대지원, 핵심 인프라 복구, 잔해물 제거, 건물 개보수 등 긴급성 복구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신축 및 개보수와 함께 교통·상하수도·에너지·산업·통신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RDNA(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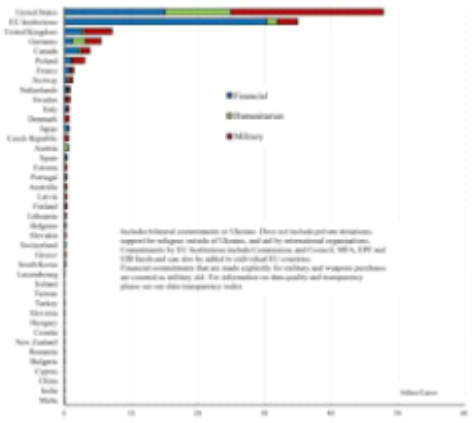

[그림 1-1] EU 및 각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출처 : 킬세계경제연구소>

[그림 1-2] RDNA2 기준 재건비용

<출처 : World Bank, Government of Ukraine, EU and UN(2023)>

우리나라 또한 2023년 7월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에서 안보지원, 인도지원, 재건지원의 3대 분야에 대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통해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인프라 시설의 재건, 식량 및 에너지 안보, 전쟁피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정부 차원의 협력을 합의했다. 이의 일환으로 Grant, EDCF 등 다양한 공적 자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 및 추진하기 위하여 2023년 9월 양국의 합의하에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3억 달러 규모의 EDCF 공여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토지관리 인프라, 주택 부문 마스터플랜, 모듈러, 교량 및 터널 등 토목공사, 플랜트 등 산업설비, 에너지 공급망, 폐기물처리, 건설 기자재 공급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프로젝트명	참여기관(업체)	프로젝트 내용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전쟁으로 파괴된 교통 시설을 스마트·저탄소 기반으로 복구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 및 사업계획 수립
우만시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KIND, 한국수자원공사	재난 재해 대응, 친환경에너지, 모빌리티 등 도시기반시설 솔루션 제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한국공항공사	시스템 현대화, 안전 관련 시설 정비, 활주로 정비 확장 등 운영과 인프라 정비 아우르는 종합계획 수립
부차시 하수처리시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마련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계획수립
키호우카 댐 재건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지난 6월 붕괴된 키호우카 댐과 발전소 재건을 위한 기술 지원
철도노선 고속화	국가철도공단	키이우-폴란드 국경 등 우크라이나 주요 철도 노선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지원

[그림 1-3] 한국-우크라이나 6대 선도 프로젝트

<출처 : 국토교통부>

현 시전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6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의 참여를 하고 있으나, 향후 종전 이후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전쟁 발발 이전 우크라이나의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면 40개 이상의 다양한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으나, 각 법률의 방향성이 상이하여 오히려 도시 개발을 저해하고 있었으며, 국가 차원에서의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국가 지역 개발전략"은 목표연도 2020년 계획 이후 갱신되지 못하고 있으며, 구역(Rayon)의 수준에서는 87%가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과거 시점을 목표로 한 계획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의 성공적인 추진과 함께 종전 이후 LH 및 국내 민간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현황 및 법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함께 보다 원활한 참여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의 진출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현황 및 법·제도, 관련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LH 및 국내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①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현황 분석, ②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관련 주요 사례 조사, ③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법·제도 조사·분석, ④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방안 도출로 구분된다. 각 부문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현황 분석

- 우크라이나 국가현황 및 전황 조사 분석
  - 국가개황, 행정구역 및 지방행정 체계, 주요 사회개발지표, 도시개발 동향,

인프라 현황 등

- 우크라니아-러시아 전쟁에 따른 재건수요

-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글로벌 및 한국의 동향 분석

-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지원사항 등 최신 동향

- 우크라이나 외교 동향 및 한국과의 관계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관련 주요 사례 조사

- 전후 재건사업 사례

- 이라크 전쟁(2003) 및 리비아 전쟁(2011), 아프가니스탄 전쟁(2001) 등 전쟁 이후 재건사업 사례

- 동유럽 및 우크라이나 개발사업 진출 사례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적용을 위한 시사점 도출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법·제도 조사 분석

-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제도

- 국가 지역 정책의 기본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기본법, 토지법, 산업단지법, 외국인투자법, PPP법 등

- 공간계획의 위계 및 계획별 주요 내용 및 우크라이나 재건계획 주요 내용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방안 도출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세부 방안(안) 도출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분담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기초자료 수집,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제기구, MDB 등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한 상세자료 수집, 국내 주요기관 및 국제기구 주최행사 참여를 통한 최신 정보 수집, 해외 도시개발 실무자 및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개최 및 원고의뢰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보다 원활이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 선행연구 고찰 및 유관 자료 수집을 통한 기초자료 분석

법제처(세계법령정보센터), KOTRA, KIND,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건설협회 등의 국내 유관기관과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원의 발간물(보고서, 소책자, 세미나 자료 등) 및 통계자료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국가 현황 및 관련 법·제도, 주요 진출 사례 등 최신 동향 정보를 구득하고 검토한다.

□ 우크라이나 정부 및 국제기구, MDB 등의 홈페이지 검색을 통한 상세자료 수집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 및 각종 UN 산하기구, Worldbank 등 발간하는 최신 보고서·이슈브리프 및 주요 연구논문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현황 자료 및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최신 정보를 구득하고 분석한다.

□ 국내 주요기관 및 국제기구 주최행사 참여를 통한 최신 정보 수집

스마트국토엑스포('23 재건협력포럼 및 세미나) 및 해건협 주도의 세미나(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설명회,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 및 자금조달 세미나 등) 등 국토교통부, KIND, KOTRA, 해외건설협회 등 국내 주요기관이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행사 참석을 통해 정보를 구득한다.

□ 해외 도시개발 실무자 및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개최 및 원고의뢰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하여 원고 및 자문 등을 의뢰하고, KIND, KOTRA, 해외건설협회, 국토연구원, 민간부문 등의 실무자 및 해외개발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종합된 의견을 수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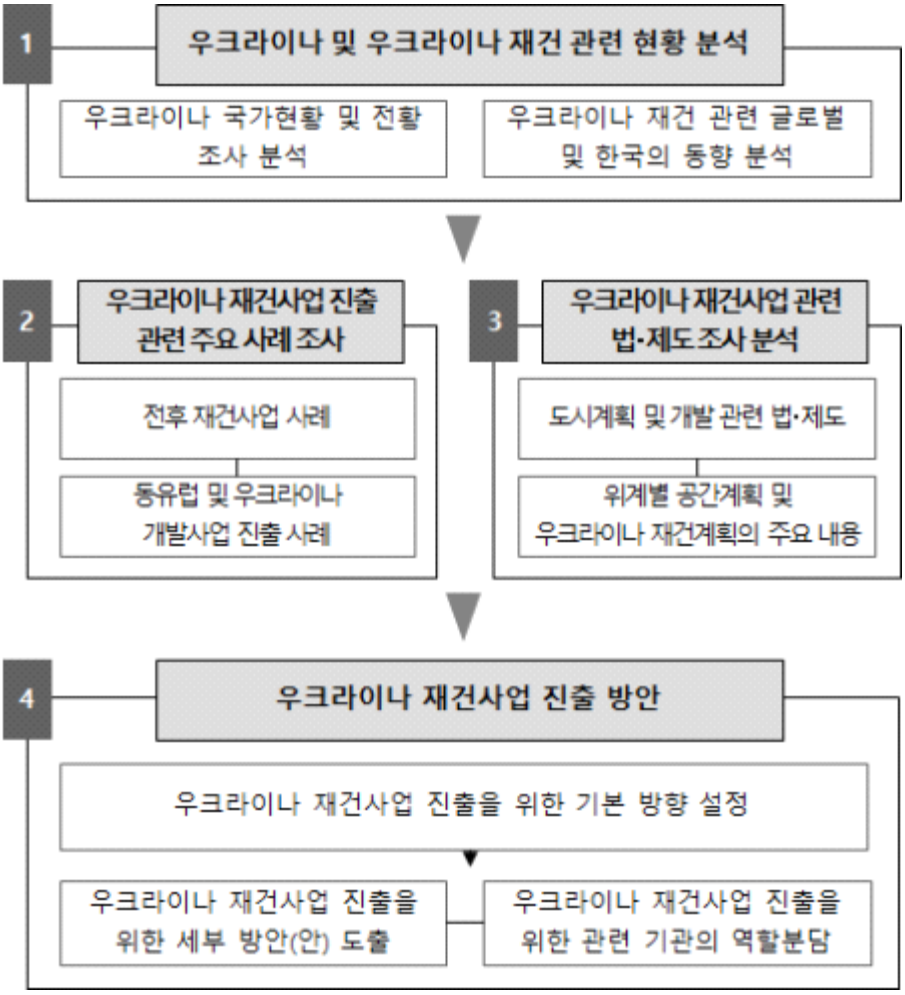
1
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현황 분석
우크라이나 국가현황 및 전황 조사 분석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글로벌 및 한국의 동향 분석
2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관련 주요 사례 조사
전후 재건사업 사례
동유럽 및 우크라이나 개발사업 진출 사례
3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법·제도 조사 분석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제도
위계별 공간계획 및 우크라이나 재건계획의 주요 내용
4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방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세부 방안(안) 도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분담

[그림 1-4] 연구의 흐름

제2장 우크라이나 및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현황

1. 우크라이나 국가 현황

1.1 국가 개요

1) 일반현황

우크라이나(Ukraine)는 정식 국명으로, 고르바초프 개혁개방 정책 이후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장악력 약화로 1991년 국민투표에 의해 독립하였다. 우크라이나는 60.3만㎢의 면적으로 동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폴란드, 벨라루스, 러시아, 몰도바,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는 키이우(Kyiv)로 1934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시대에 '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수도'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의 수도를 맡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으나, 급속한 전후 복구를 통해 당시 소련의 제3대 대도시로 등극했으며, 현재는 840㎢ 면적에 인구 약 297.3만 명이 거주(UN, 2021)하면서 유럽에서 7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이외의 주요 도시로는 하르키우(Kharkiv, 142만 명), 오데사(Odesa, 101만 명), 드니프로(Dnipro, 97만 명), 도네츠크(Donetsk, 90만 명), 르비우(Lvyv, 70만 명) 등이 있다. 2023년 기준 전체 인구의 70.1%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정치로 도시화율은 연평균 0.27% 정도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1년 UN의 통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총 4,160만 명으로 2021년 기준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0.5% 내외의 인구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구성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계가 7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러시아계가 17%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녀 성비는 여성 1명 기준 남성 0.86명으로 체르노빌 사고 수습, 우크라이나 내전 등에 군인들이 대규모로 희생되어 우크라이나 내 남성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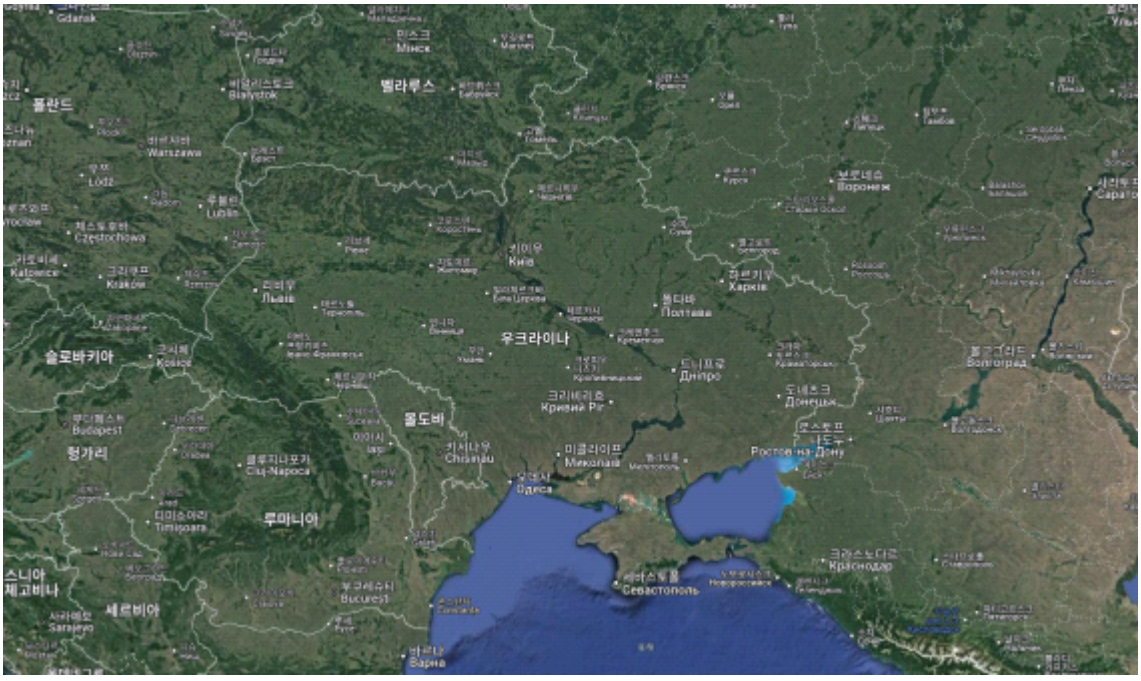

[그림 2-1] 우크라이나 위치도

<출처 : 구글 지도>

2) 정치·행정

① 우크라이나 정치현황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후, 구소련 우크라이나 공화국 헌법을 일부 수정해 활용했으며, 1996년에 제정된 신헌법에서 공화국 및 이원집정제[2]를 정치체제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3권 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를 준수에 대한 내용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헌법수호자 역할을 하게 되어있으며, 국민직접선거에 의해 5년을 임기(연임 가능)로 선출한다. 이외에 국가대표, 외교·국방활동수행, 조약체결, 외교사절 파견·접수에 대한 권한과 함께, 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국장·검찰총장(후보자)에 대한 임명·해임 요청권, 정부각료회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 주지사·시장의 임명·해임권, 의회통과 법안에 대한 거부권, 헌법재판소 위원 1/3 임명(6명) 및 헌법개정안 발의 등의 권한을 갖는다. 또한 정부각료회의(내각)의 수반인 총리는 대통령이 후보자를 국회에 제출하는 외교장관·국방장관·국가안보국장·검찰총장

2)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정치제도

외의 각 부처 장관(후보자) 명단을 국회에 제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 내각 구성을 살펴보면, 총리 외에 부총리 5명, 각 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되며, 각 부처들은 경제, 영토재통합부, 디지털전환부, 에너지, 유소년·스포츠, 전략산업, 내무, 외무, 보훈, 보건, 교육·과학, 재무, 법무, 농업식품, 환경, 사회정책, 문화정보, 국방 등으로 구성된다.

[표 2-1] 우크라이나 정부각료 현황

부처	장관
국무총리	Denys Shmyhal
수석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	Yuliia Svyrydenko
부총리 겸 영토재통합부 장관	Iryna Vereshchuk
부총리 (유럽·대서양통합)	Olha Stefanishyna
부총리 (혁신·교육·과학기술 발전) 겸 디지털전환부 장관	Mykhailo Fedorov
부총리 (우크라이나 재건) 겸 공동체· 국토·인프라 개발 장관	Oleksandr Kubrakov
내각부 장관	Oleh Nemchinov
에너지부 장관	German Galushchenko
유소년·스포츠부 장관	Vadym Huttsait
전략산업부 장관	Oleksandr Kamyshin
내무부 장관	Ihor Klymenko
외무부 장관	Dmytro Kuleba
보훈부 장관	Yulia Laputina
보건부 장관	Viktor Liashko
교육·과학부 장관	Oksen Lisovyi
재무부 장관	Serhii Marchenko
법무부 장관	Denys Maliuska
농업·식품부 장관	Mykola Solskyi
환경보호·천연자원부 장관	Ruslan Strilets
사회정책부 장관	Oksana Zholnovych
문화·정보정책부 장관	(임시) Rostyslav Karandieiev
국방부 장관	Rustem Umerov

<출처 :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2023.10)>

입법기관인 국회의 경우 단원제로, 국회의원 정원은 450명이나 크림자치공화국 및 동부내전지역에서의 국회의원이 미선출됨에 따라 현원은 42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의 정식 임기는 5년이지만, 2019년 7월 조

기총선으로 출범한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2023년 10월에 예정되었던 총선은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계엄령 발효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50%는 지역직선제(소선거구제)로, 나머지 50%는 비례대표제 투표로 선출하게 되어있다. 국회는 국정자문회의 및 각 위원회 운영 계획 준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위원회는 국정자문회의 의장 · 부의장 및 각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Specialized Committees)와 필요에 따라 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국회의 권한을 살펴보면, 입법기관으로서 갖는 법률제정 외에 국가 예산법안 심의 및 채택과 국정감독을 맡고 있으며, 이외에 내각의 업무계획 승인·채택, 국내·외 정책원칙 결정, 총리,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 임명 및 해임, 내각 불신임권 및 대통령 탄핵[3], 헌법개정안 발의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

3권 분립의 마지막인 사법부는 일반법원 최고심 법원인 대법원과 24개주, 크림 자치공화국, 키이우市, 세바스토폴市 등 지역별 설치된 고등법원, 행정구역별로 전국에 총 74개 법원 설치된 지방법원 등이 있으며, 이외에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이 제소하는 헌법관련 사항 심의 결정, 대통령 탄핵 여부 최종 결정권을 갖는 헌법재판소로 구성되어 있다.

② 우크라이나 행정구역 및 지방행정 체계

우크라이나의 헌법에는 지방자치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영토 및 지방정부는 크림자치공화국 및 24개의 주(州)로 구성되며, 수도인 키이우와 크림자치공화국의 수도인 세바스토폴은 특별시로 지정되어 있다. 그 중 특별시 중 하나인 세바스토폴과 크림자치공화국은 2014년부로 러시아에 병합되었으며, 헤르손주, 자포리자주, 도네츠크주, 루한스크주의 4개 주는 2022년 9월 러시아로 병합되었다.

행정구역의 구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주·특별시·공화국(oblast)), 군(raion), 공동체(hromada) 등 3개 층의 위계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구역의 중간단계의 위계인 군(raion)의 경우 2020년 행정개혁을 통해서 490개의 군(raion)과 118개의 지방도시를 136개의 군으로 개편되었으며, 크림공화국에

3) 탄핵결정 후, 국회의장이 신임 대통령 취임까지 권한대행

속한 10개의 군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구역의 제일 마지막 위계인 공동체(hromada)는 1,469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 2-2] 우크라이나의 행정구역

행정구역 위계	행정구역 명칭	개수	비고
1	자치공화국	1	크림 자치공화국
	특별시	2	키이우, 세바스토폴
	주(oblast)	24	-
2	군(raion)	136	-
3	공동체(hromada)	1,469	-

<출처 : Wikipedia(2023), 외교부(2023)>

3) 경제·산업

① 우크라이나 경제동향

우크라이나의 2021년 명목 GDP는 2021년을 기준으로 1,998억 달러였으나,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2022년에는 약 19.7% 감소한 1,60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후 2023년은 2023년 대비 7.0% 상승

한 1,718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22년 대비 약 25.3% 상승하여 전쟁 발발 이전보다 높은 2,15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인당 명목 GDP의 경우에도 2021년 4,800달러/인을 기록한 이후, 2022년 4,440달러/인으로 7.5% 감소하였으나, 2023년에는 4,700달러/인으로 5.9%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4년에는 5,820달러/인으로 23.8%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GDP의 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와 함께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의 약 60%를 타 국가의 정부 및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에서 지원받은 무상원조와 차관으로 충당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 예산 사정은 점차 악화되면서 2024년 경제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내외 전망 보고서 등을 종합해보면, 우크라이나 중앙은행의 경우 4.3%, EBRD 3.0%, IMF 3.2%, EU 4.0% 등의 성장세를 예측하는 등 모든 다수의 기관에서 2024년에 약 3~4%대의 경제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표 2-3] 우크라이나 경제동향

주요지표	단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인구	백만 명	42.2	41.9	41.7	41.5	41.0	36.1	36.6	37.0
명목 GDP	십억 달러	112.1	130.9	154	155.3	199.8	160.5	171.8	215.2
1인당 명목 GDP	달러	2,660	3,120	3,690	3,740	4,800	4,440	4,700	5,820
실질성장률	%	2.4	3.5	3.2	△4.0	2.5	△30.4	0.7	3.9
실업률	%	9.7	9.0	8.5	9.2	9.7	21.1	16.7	15.3
소비자물가상승률	%	14.4	10.9	7.9	2.7	10.0	20.1	15.3	10.3
재정수지(GDP대비)	%	△1.5	△1.6	△1.9	△5.1	△3.4	△16.3	△13.9	△15.9
총수출	백만 달러	433	473.7	500.8	492.2	680.9	444.4	-	-
(對韓 수출)	백만 달러	5.4	3.9	4.6	6.3	3.1	7.0	2.0	-
총수입	백만 달러	494.6	568.2	604.3	536.7	718.9	552.2	-	-
(對韓 수입)	백만 달러	2.6	3.4	3.5	3.9	5.8	2.2	1.1	-
무역수지	백만 달러	△61.6	△94.4	△103.4	△44.4	△37.9	△107.8	-	-
경상수지	백만 달러	△24.5	△42.8	△42.1	62.3	△38.8	80.0	48.0	26.0
환율(연평균)	현지국/US$	26.5	27.2	25.8	26.9	27.3	32.34	36.57	35.58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26.2	25.9	34.1	27.5	-	-	-	-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36.8	44.6	52.1	△9.5	66.87	8.3	-	-

* 2023년은 추정치, 2024년은 전망치

<출처 : 2024 우크라이나 진출전략, KOTRA(2024) 재인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우크라이나는 중부·동유럽권역 국가들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며, 舊 소련 시절부터 구축된 탄탄한 산업기반과 함께 어느 정도 내수시장까지 확보하고 있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나라였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국가 경제의 기능 1/3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에서 산정하는 경제 위험 지수 발표 대상 164개국들 중 161위를 기록하며 하위권을 기록하였다.

우크라이나의 2023년 예산은 약 720억 달러로, 이 중 43.3%인 약 312억 달러가 국방비로 책정되었고,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연금 및 사회보장으로 전체 예산의 33.3%인 240억 달러가 에 책정되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무부가 매달 35억 달러의 해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는 등 국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전쟁 발발 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약 1년 3개월 간 빌린 해외 차관은 총 290억 달러 규모이며, 이에 따라 2023년 우크라이나 정부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약 180억 달러(국내 147억 / 국외 33억)로 산정되었다. 또한, 2024년도 예산 규모는 850억 달러로 책정했으나, 국가 수입은 426억 달러로 예상됨에 따라 나머지는 해외 원조를 통해서 충당할 계획이나, 해외 원조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2023년과 2024년의 주요 예산 우선 분야는 국방, 사회 보장, 보건과 교육, 보훈, 경제 회복의 5가지로 선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예산안은 [표 2-4]와 같다.

[표 2-4] 우크라이나 예산안

(단위 : 백만 USD)

구분	2023	2024		22/23 증감률
		금액	비중	
국방 및 보안	31,204	46,285	54.5	48.3
사회 보장	12,240	12,820	15.0	4.7
보건	4,816	5,521	6.5	14.7
교육	4,266	4,862	5.7	14.0
비즈니스 지원	-	842	1.0	-
참전용사 지원	186	391	0.5	66.3
그 외	19,487	14,275	16.8	-26.7
총액	72,199	84,996	100.0	17.7

* 달러는 중앙은행 고정 환율 1USD=36,5686UAH로 계산

<출처 : 2024 우크라이나 진출전략, KOTRA(2024) 재인용>

② 우크라이나 산업동향

우크라이나는 전통적으로 농업, 철강, 전력, 항공 산업 등이 발달해왔으며, 천연가스와 석탄 등의 자원도 비교적 풍부한 국가였으나, 주요 산업기반들과 자원 매장지가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러시아와의 관계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존재해왔다. 실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최악의 산업경제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조금씩 회복하며 2016년에는 산업생산지수가 전년 대비 2.8% 성장하였으나, 2017년부터 산업 생산지수가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며 2019년 5월 −1.8%, 2020년 1월 −5.1%를 기록하였다. 이후 코로나19 또한 산업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2022년 우크라이나의 산업 생산량은 2021년 대비 36.9% 감소하는 등 우크라이나 산업은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농산물의 약 89%가 해상운송을 통해 수출됐으나 전쟁으로 항구가 봉쇄되면서 곡물 수출이 어려워지는 등 농업과 철강 등 주요 산업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농업

우크라이나 국토의 80%가 경작이 가능한 토지이며, 그 중 60%는 비옥한 흑토(black soil)지대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광활한 경작 가능지와 농작에 적합한 기후를 활용하여 곡물을 대량으로 생산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특히, 유럽과 북아프리카 등에 수출하기 좋은 지리적 이점을 보유함에 따라 2017~2018년 세계 2위 곡물 수출국에 등극하는 등 일명 '세계의 식량 바구니(food basket of the world)'라 불리고 있다. 이렇듯 농작에 적합한 천혜의 환경과 지리적 이점에 힘입어 연간 곡물 수확량이 7천만 톤 이상이 이르면서 우크라이나 전체 GDP의 10%를 농업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약 5천만 톤의 곡물을 수출함에 따라 해바라기씨, 옥수수, 밀·보리, 콩 등은 전 세계 수출량 상위 10위권 내에 위치하는 등 우크라이나 총 수출의 약 45%를 농업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 생산성은 가족 중심의 중·소작농(5~3,000㏊ 규모) 중심으로 계절성 사업으로 인식하며 생산 활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뛰어난 자연환경으로 신기술 도입에 대한 인식과 노력은 낮은 편으로 동일 면적 당 농업 생산성은

주변 국가들 보다 낮은 편이다. 또한 곡물의 수출에 집중함에 따라 곡물과 연계된 식품 가공 부문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농기계의 약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외국산 제품 의존도가 상당히 높고 기존 장비의 노후화 또한 심각한 상황으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농지를 스마트팜 및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활용하거나, 농기계 부품업체의 동반 진출하는 등 농기계 및 농업용 드론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진출 잠재력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분쟁지역인 동부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체 밀 생산량의 40%를 담당하는 주산지로, 전쟁에 따른 생산성 저하로 국제시장 밀 가격은 연일 최고점을 갱신하는 중이다. 또한 전쟁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생산 및 자원 잠재력 손실과 함께, 농지의 상당 부분이 점유되거나 지속적인 포격·채굴 등으로 인해 농업 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총 파종 면적이 20% 감소하였다.

[그림 2-2]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

<출처 : 한국농정(2023.10.22.)>

▮ 철강 및 광물자원 산업

舊소련 당시 우크라이나는 군수산업의 중심지로, 풍부한 철광석 및 석탄을 활용하여 우주·항공, 조선, 탱크 등 우크라이나 소재의 군수 산업이 전 소련 군수품의 25~30%를 생산하였다. 이외에 정유, 비철금속, 시멘트, 비료, 건축 자재, 자동차, 공구류, 화공 설비, 전기 제품, 섬유, 화학 섬유, 의료 기기 등 기타 철강, 기계 화학 공업 등 전략 산업의 집중 육성으로 인해 1991년 독립 당시 우크라이나 공업이 GDP의 46%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철강 산업은 총 GDP의 12%, 총수출의 25.6%를 차지하는 등 농업과 더불어 우크라이나를 대표하는 핵심 산업으로, 2017년과 2020년 세계 철강 생산국 12위를 달성하는 등 2021년 까지 세계 철강 생산국 15위 안에 위치해 있었다. 다만 높은 수준의 기술보다는 저렴한 원자재 및 노동력을 기반으로 발전해온 산업 부문으로, 코로나19 이후 회복세와 함께 철강 기업들은 산업구조의 현대화 관련 프로젝트, 부가가치 높이는 제품 개발, 직접환원철 코일 생산, 전기로 제강 개발에 주력할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발에 따라 철강 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철강 산업이 활발한 마리우폴(Mariupol), 자포리자(Zaporizhzhia), 크리비리흐(Kryvyi Rih) 등의 동부지역이 최전선에 속하거나 또는 점령됨에 따라 철강 생산이 감소하게 되었고, 아조우스탈(Azovstal)과 마리우폴 제철소(Mariupol Metallurgical Plant) 등의 일부 제철소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우크라이나 철강 생산량은 약 630만 톤으로, 세계 철강 생산국 25위로 수위가 떨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강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대표 수출 품목 중의 하나로 우크라이나 2022년 45억 5,900만 달러를 수출함에 따라 전체수출 품목 3위를 차지하였다.

[표 2-5] 우크라이나 연도별 철강 생산량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철강 생산량(백만 톤)		21.3	21.1	20.8	20.6	21.4	6.3
수출량(백만 달러)		9,565	11,059	9,782	8,571	15,232	5,617
	철강(HS 72)	8,667	9,940	8,739	7,687	13,938	4,559
	철강제품(HS 73)	898	1,119	1,043	884	1,294	1,058

<출처 : World Steel Association, Global Trade Atlas>

▮ 에너지 산업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가스 분쟁 및 에너지 안보 문제 등으로 인해 고효율 에너지 생산·분배 시스템에 대해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EU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어, EU 표준에 맞추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대체에너지 생산 확충 계획도 추진 중이다. 에너지원별 전력 생산 비중을 살펴보면 원자력 55.1%, 천연가스 및 석탄 29.3%, 수력 6.7%, 신재생 8.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크라이나는 유럽 최대의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Zaporizhzhya)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총 4개의 원자력 발전소, 16기의 원자로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 침공 이후 약 41억 4,000만 달러 발전소 시설 피해와 약 20억 달러 규모의 송전시설 피해, 약 3억 5,400만 달러의 배전시설 피해 등 총 64억 9,400만 달러의 피해를 입는 등 약 50%가 손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약 44%의 발전 용량을 상실한 상황이다.

[표 2-6] 최근 5년간 우크라이나 전력 생산량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전력 생산량(GMh)	155,414	159,351	153,950	148,810	156,576
원자력 발전소 전력 생산량(10억 kWh)	85.58	84.40	83.00	76.20	86.20

<출처 :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주로 풍력과 태양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균 이상의 풍속, 일조량 등 이상적인 기후조건을 갖춘 덕에 우크라이나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가 신재생(친환경·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소형 수력발전 등을 통해 생산된 전력에너지를 높은 가격에 사들여 공급하도록 보장하는 “녹색 전력요금(Green Tariff)” 제도를 2009년에 도입하는 등 국가 차원의 지원도 원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우크라이나 총 재생 에너지 설치 용량의 80%로 성장하는 등 2019~2021년 사이 신재생에너지들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이에 2021년 태양광 발전 부문에서 유럽 국가 중 7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풍력

발전소는 자연조건이 충력발전에 가장 유리한 아조브 및 흑해 해안 근처의 남부 지역에 주로 건설되어 2022년 초 1.6GW의 설치 용량을 확보하였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용량이 각각 20%와 80% 이상 손상되거나 점유되었다.

▮ IT 산업

IT 산업은 2003년 1.1억 달러에서 2018년 45억 달러로 수출이 확대되는 등 우크라이나의 신흥 산업 중 하나로, 최근 5년간 수출 규모가 약 157% 성장하였다. 이는 좋은 나라 지수(Good Country Index)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169개 중 1위를 차지하고 인증된 IT전문가 보유국가 3위를 기록하는 등 풍부한 인적 자원과 긍정적인 대외 평가에 따름이며, 특히 별도의 규제가 없어 타 산업에 비해 인허가 절차가 간단한 편으로, 삼성, Microsoft, Google, Boeing, IBM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R&D 센터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일부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4) 한국과의 협력관계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외교관계 수립은 1992년 2월 10일 수교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대북 포용 정책 및 남북 대화 노력을 지지하고,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등을 지지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2021년 1월,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2기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했으며, 2022년에는 KOICA 사무소가 우크라이나 내에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 보건, IT 등의 분야를 중점으로 우크라이나 대상 유무상 원조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KOICA를 통한 인도적 물품 지원을 중심으로 2022년 한 해 1억 달러가량의 물품을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상원조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2023년 9월,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 협정(Agreement, A/G)을 정식으로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2024년부터는 EDCF 자금의 본격적인 제공을 통한 경제개발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국간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양국 교역 규모가 26억 달러로 9.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 우크라이나 금융위기 이후 2010년 15억 달러로 교역규모가 격감하였다. 이후 증가세를 회복했으나 2013년의 유로마이단[4] 사태와 동부지역 내전 등으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경기 침체에 따라 다시 교역 규모가 둔화되었다. 2022년 기준 교역 규모는 약 9.22억 달러로, 한국에서 우크라이나로의 교역은 자동차·철강판 및 부품, 플라스틱, 고무제품, 화장품 등을 중심으로 2.1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우크라이나의 對한국 교역은 곡물, 광물, 철광, 정밀화학원료, 목재류 등을 중심으로 7.0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표 2-7] 한국·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입 상위품목(2022 기준)

순위	우크라이나 → 한국	우크라이나 ← 한국
1	곡류	화물자동차
2	사료	화장품
3	기타 정밀화학원료	승용차
4	기타 난방 및 전열기기	의료용기기
5	박류	전기자동차
6	직물제의류	의약품
7	제재목	기타 섬유제품
8	원동기	아연도강판
9	운반하역기계	자동차 부품
10	채소류	의료용 전자기기

<출처 : KOTRA(202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직접투자 금액은 약 3.1억 달러, 투자법인은 50개사로 집계되어 있다. 주요 진출 업종으로는, 도·소매업, 제조업, 운수업 등으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종합상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한국타이어, 에코비스, 오스템임플란트 등이 우크라이나 현지 법인 및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2016년 약 47백만 달러 투

4) 2013년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정을 무기한 연기하면서 그해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어졌던 시위로, 야누코비치의 탄핵과 친서방 정권의 탄생,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과 돈바스 내전의 도화선으로 작용

자 이후 크림반도 강제합병 등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과 동부 내전사태 등으로 신규 투자가 어려워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동부 내전사태 이후 기 진출한 한국 대기업도 철수하거나 규모를 축소·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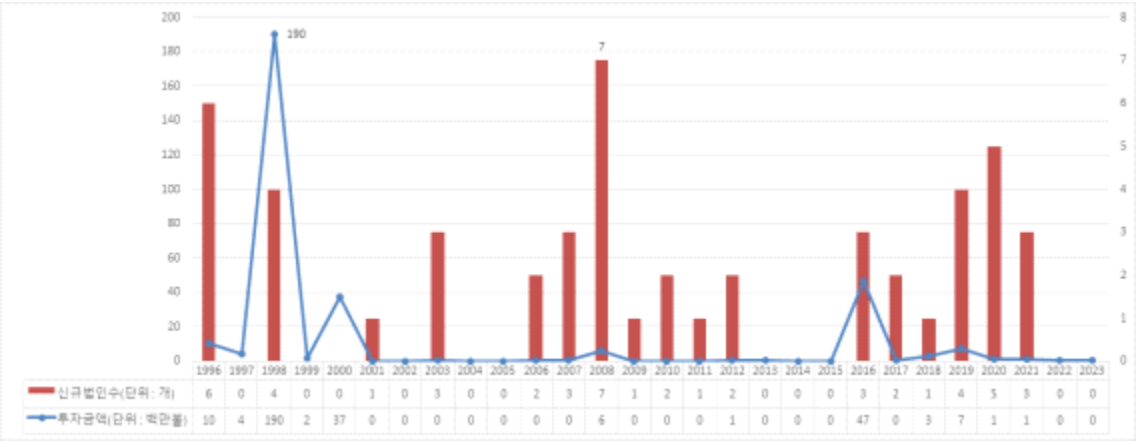

[그림 2-3]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직접투자금액 및 신규법인수 추이(1996~2023)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검색일자 2023.10.9)>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93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의 對우크라이나 수주실적은 총 18건(약 3.1억 달러)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1997년에 약 2.8억 달러 규모의 수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최근 5개년(2019~2023년) 실적을 살펴보면, 2020년 약 693만 달러가 최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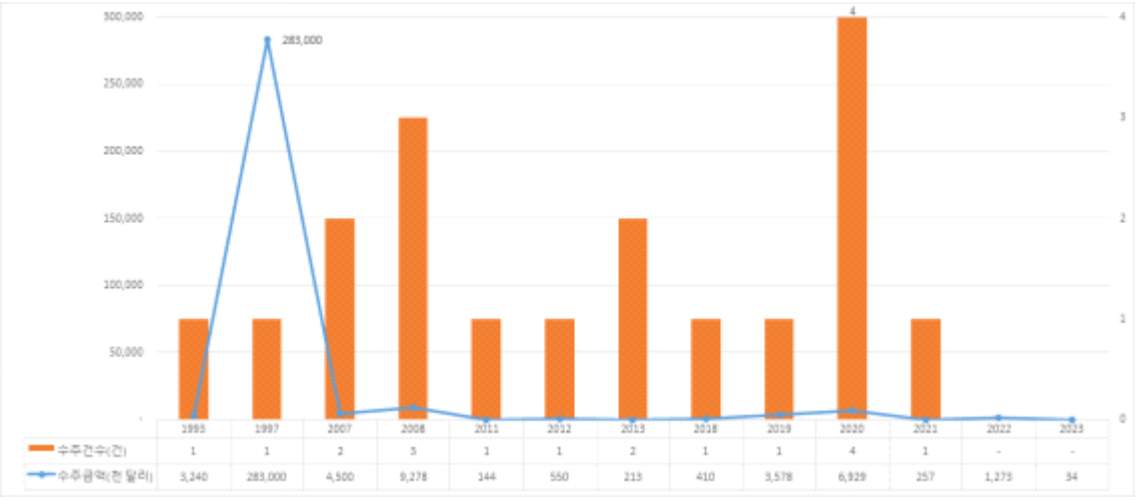

[그림 2-4] 한국의 對우크라이나 수주현황(1993~2023)

<출처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검색일자 2023.10.9)>

1993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의 공종별 수주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 분야가 전체 수주금액의 90.4%(2.8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에 용역 8.4%(2,626만 달러), 토목 1.2%(378만 달러) 순으로 집계되었다. 공종별 세부 공종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분야는 사무실(2.8억 달러), 상업시설(1.8만 달러), 용역 분야는 설계(1,370만 달러), 감리(1,011만 달러), 조사(131만 달러), CM(83만 달러), 기술지원(31만 달러), 토목 분야는 단지조성(324만 달러), 조경(54만 달러)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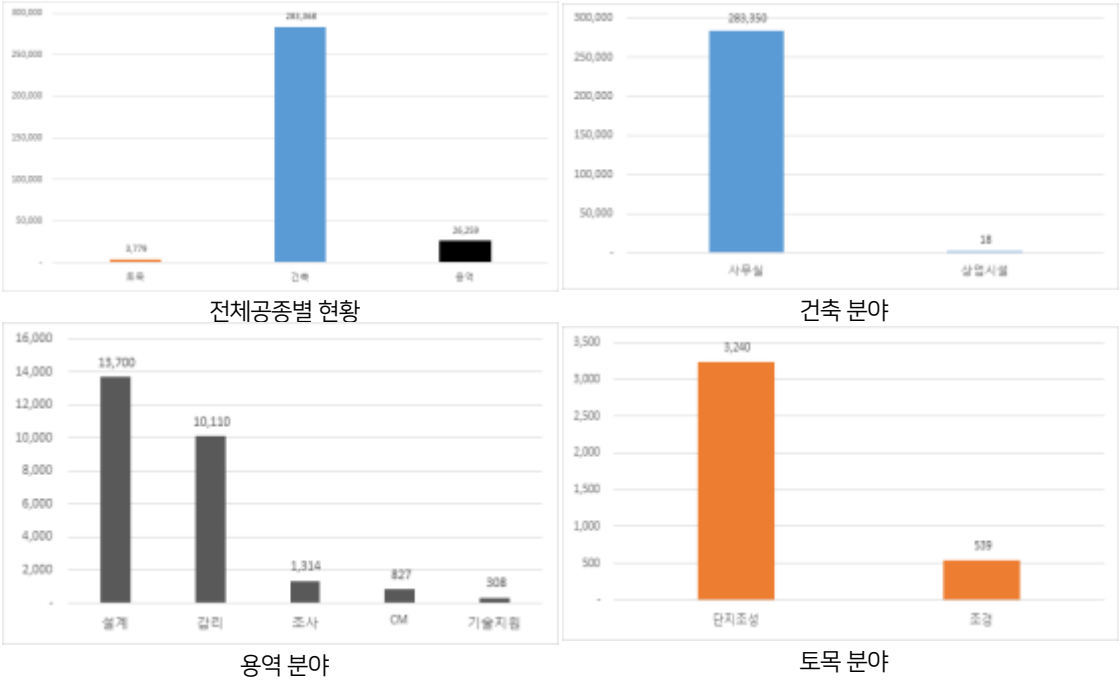

[그림 2-5] 공종별 수주현황(1993~2023)(천 달러)

<출처 :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검색일자 2023.10.9)>

1.2 도시 및 인프라 개발 현황

1) 도시개발 동향

우크라이나의 도시화율은 2022년 기준 69.92%로 전체 인구 중 약 7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도시화율은 68.78%로 10년간 총 1.66%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연평균 약 0.16%의 완만한 도시화 증가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대에는 0.13~0.17%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2020년대에 들어서는 0.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기존 대비 약간 빠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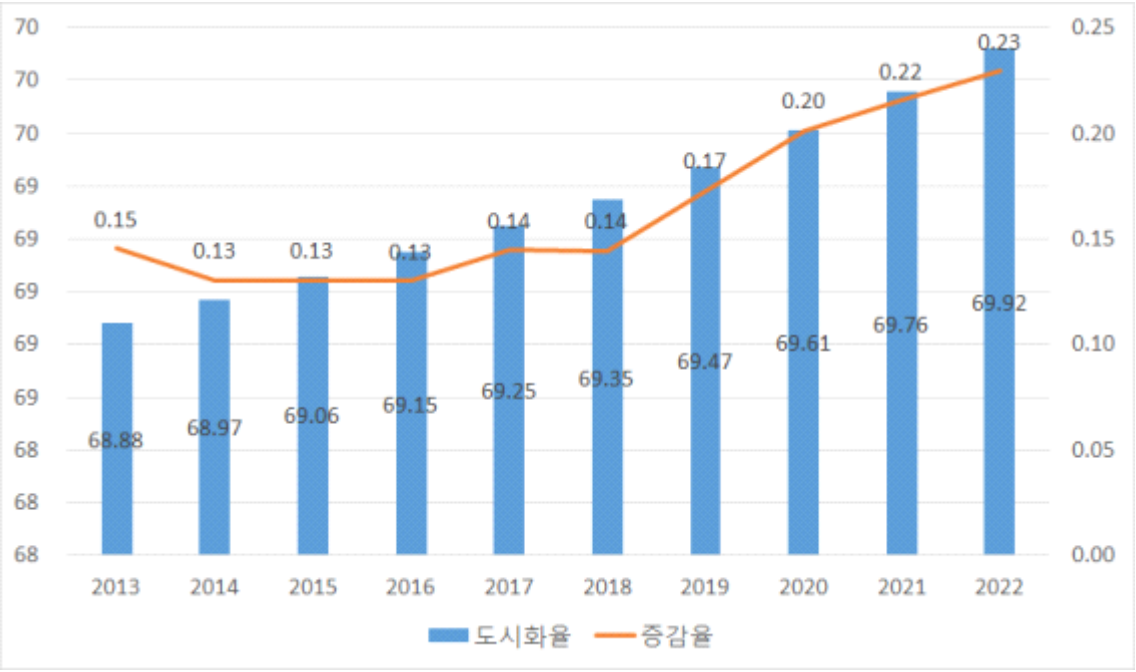

[그림 2-6] 우크라이나의 도시화율 추이

<출처 : Statista(2023)>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도시성장은 지역정책기본법(Law on Principles of State Regional Policy)을 기반으로 사회 및 경제 문제를 비롯한 지역 정책 전반을 다루는 지역개발 전략(National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수립을 통해서 각 지역 차원에서 개별 강점을 살리는 특화된 접근법으로 추진한 개발 전략에 기반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2년 지역별 경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적 수단으로 지역개발기금(State Regional Development Fund, SRDF)을 신설하였다. 이는 지역 차원의 투자사업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예상 세입의 1% 이상을, 2023년부터는 1.5% 이상을 SRDF에 배정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2021년 SRDF에 배정된 예산은 총 세입액의 0.4% 수준인 45억 UAH으로, 실제로는 최소한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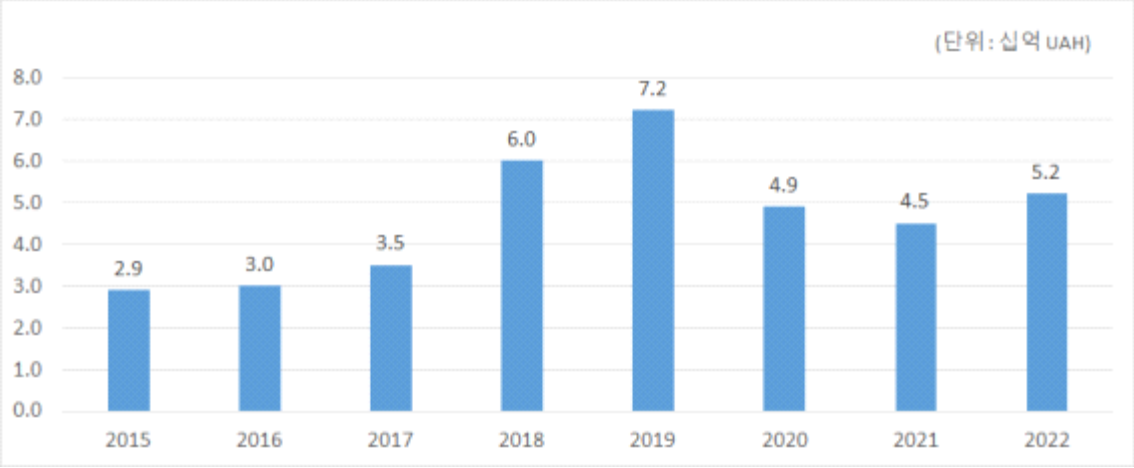

[그림 2-7] SRDF에 배정된 예산 추이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이와 더불어, 2014년 EU와의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이후로 경제적 분산과 지역정책을 중점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분산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평가와 함께 2022년 6월 EU로부터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지역개발 정책과 EU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GDP가 일부 지역에 지나치게 편중되는 등 지역별 발전 격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키이우(수도)에 24%, 드니프로페트로우시크(Dnipropetrovsk)주 9.4%, 하르키우(Kharkiv)주 6.1%, 르비우(Lviv)주 5.6%, 도네츠크주 4.9%, 폴타바(Poltava)주 4.5% 등 舊소련 시대에 주요 중공업 단지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발생한 지역별 격차 양상과 유사한 형태로 GDP가 편중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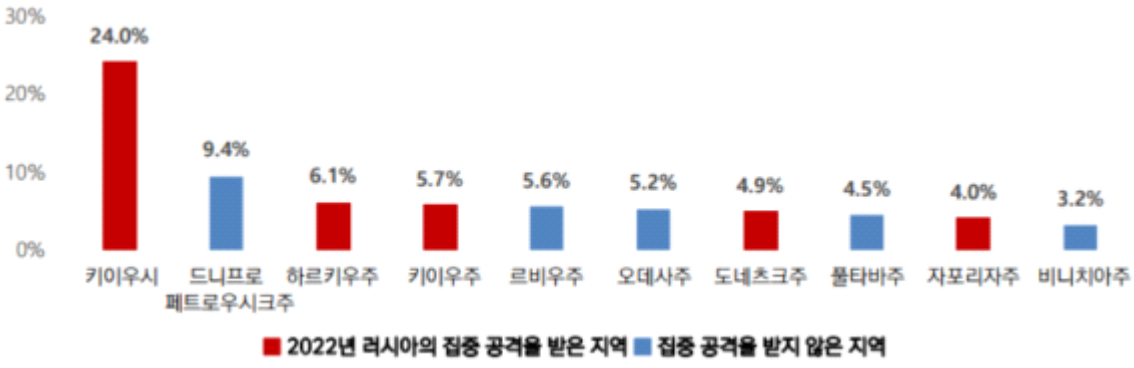

[그림 2-8] 우크라이나 GDP의 지역별 산출액 비중 상위 10개 지역(2022)

<출처 : 우크라이나 통계청>

또한, 2020년 발표된 “우크라이나 대건설(Great Construction) 프로젝트”는 각 지역별 ’대건설 프로젝트‘추진을 위해 20억 UAH(한화 약 811억 원)를 투입하는 국가지역개발기금과 정부의 예산, 지역기금 등을 투입하여 대규모 사회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는 국가 프로젝트이다. Worldbank는 우크라이나에 총 17만㎞의 육로 복구 및 현대화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500억 UAH 규모의 재원을 도로 및 고속도로 복구건설에 투입하는 등, 최종적으로 학교 100곳, 유치원 100곳, 스타디움 100곳, 병원 200곳, 도로 약 4,000㎞ 등의 건설을 통해 약 1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노력에 의해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2020년대에 들어 도시화 증가율이 소폭 상승하게 되었다.

2) 인프라 개발동향

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인프라 현황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부문 글로벌 경쟁력지수는 70.3으로 전체 조사대상 141개국 중 57위를 기록하며 양호한 인프라 여건을 보유하고 있었다(WEF, 2019). 그 중에서도 특히 철도밀도(Railroad Density)와 철도서비스 효율성(Efficiency of train services), 그리고 전력(Electricity access) 분야의 인프라는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표 2-8] 전쟁 이전 우크라이나의 인프라 부문 글로벌경쟁력지수 세부항목(2019년 기준)

Component	Score	Rank/141	Best Performer
2nd Pillar: Infrastructure	**70.3**	**57**	**Singapore**
1. Transport Infrastructure	55.5	59	Singapore
1.1 Road connectivity (0~100)	78.2	59	Multiple(3)
1.2 Quality of road infrastructure (1~7)	33.7	114	Singapore
1.3 Railroad density	93.3	25	Multiple(24)
1.4 Efficiency of train services	52.9	34	Japan
1.5 Airport connectivity (score)	56.6	53	Multiple(8)
1.6 Efficiency of air transport services (1~7)	50.0	101	Singapore
1.7 Liner shipping connectivity (0~100)	30.1	57	Multiple(5)
1.8 Efficiency of seaport services (1~7)	48.8	78	Singapore
2. Utility Infrastructure	**85.2**	**71**	**Iceland**
2.1 Electricity access (% of population)	100.0	2	Multiple(67)
2.2 Electricity supply quality (% of output)	93.4	64	Multiple(10)
2.3 Exposure to unsafe drinking water(% of population)	88.1	67	Multiple(28)
2.4 Reliability of water supply (1~7)	59.4	80	Iceland

<출처 : WEF(2019)>

도로·철도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아시아 및 중동을 연결하는 주요 운송의 요지로서 총 연장 5,000㎞가 넘는 국제운송네트워크가 개설되었으며, 이 네트워크를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도로총연장은 약 169,000㎞로 집계[5]되어 있다. 그러나 광활한 국토 면적에 비해 고속도로망이 부족한 편으로, 도시·지역간 이동 및 운송은 대부분 철도가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의 총 연장은 약 23,000㎞에 달하며, 이는 국영기업인 우크라이나철도공사(Ukraine Railway)가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5) https://dlca.logcluster.org/23-ukraine-road-network(검색일자 2023.11.5.)

도로 네트워크 현황　　철도 네트워크 현황

[그림 2-9] 우크라이나 주요 도로 및 철도 구축 현황

<출처 : WFP Logistics Cluster(검색일자 2023.11.5)>

공항·항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보리스필 국제공항을 포함하여 총 18개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 중 수도 키이우의 관문인 보리스필국제공항(Boryspil Int'l Airport)은 우크라이나의 최대 공항으로, 2016년 기준 여객수송량이 약 865만명에 달하는 등 우크라이나 상업 항공의 60%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수출 등에 주로 활용되는 해상운송을 위한 항만들은 모두 국가 소유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남쪽에 인접한 흑해, 아조프해 연안을 따라서 오데사(Odessa), 유즈니(Yuzhniy), 일리체프스크(Ilyichvesk) 항만을 포함한 총 18개 항만과 12개 터미널이 운영 중이다.

공항네트워크 현황　　주요 항만 위치도

[그림 2-10] 우크라이나 주요 공항 및 항만 현황

<출처 : WFP Logistics Cluster(검색일자 2023.11.5)>

▮ 전력·에너지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우크라이나 에너지 공급·소비 추이를 살펴보면, 총 에너지 공급량(Total Energy Supply, TES)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발전원별로는 과거보다 비중이 많이 줄었으나 여전히 천연가스, 석탄 발전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종 에너지 총 소비량(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 TFC)을 에너지 사용처별로 살펴보면, 산업용, 주거용, 운송용의 순으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 1인당 에너지소비량은 2020년 기준, 약 3.0MWh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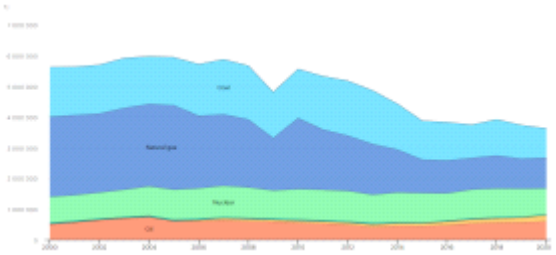

총에너지공급량(TE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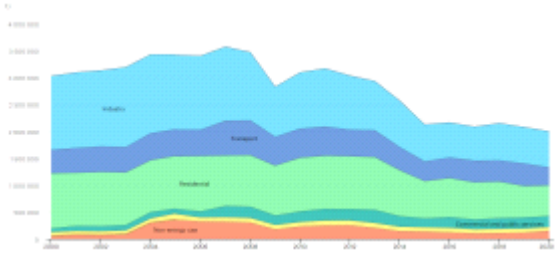

최종에너지총소비량(TFC)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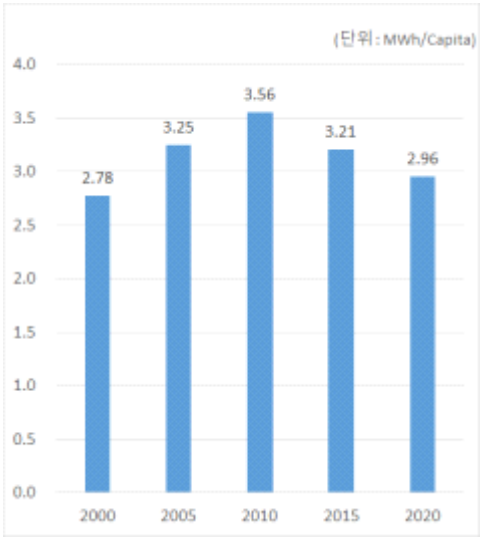

국민1당 에너지소비량 추이

[그림 2-11] 우크라이나 에너지 공급·소비 현황

<출처 : IEA Data and Statistics(검색일자 2023.11.5.)>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프라 피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는 수도인 키이우와 마리우폴 등 주요 도시에서 전투가 발생했으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주요 인프라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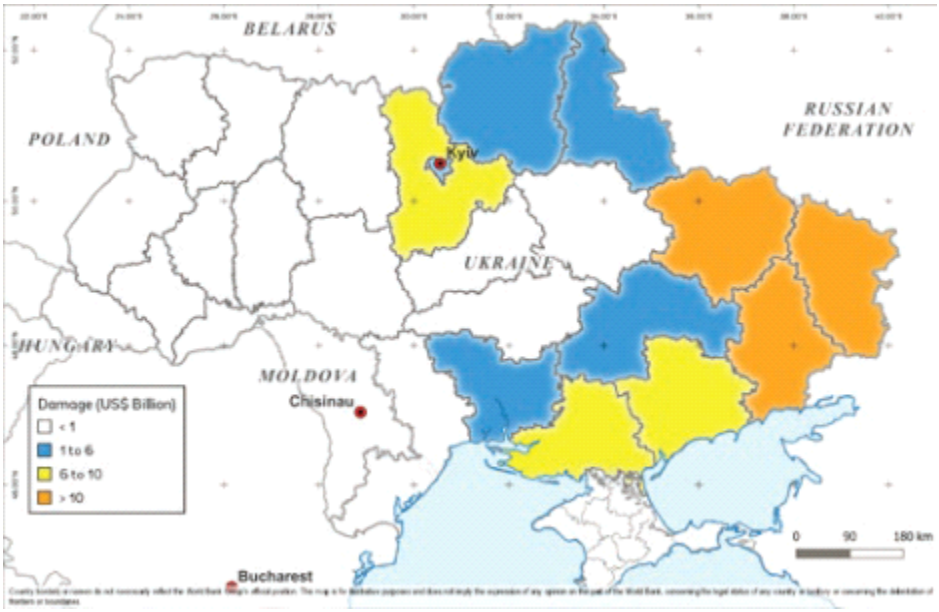

[그림 2-12] 지역별 피해규모(2023.2.24 기준)

<출처 : World Bank, Government of Ukraine, EU and UN(2023)>

세계은행과 우크라이나정부, EU, UN이 공식발표한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2(RDNA2)'에서 제시한 피해현황과 복구우선순위(단기, 중장기)를 살펴보면, 2022년 2월 24일부터 2023년 2월 24일까지의 총 피해액(Total Damage)은 약 1,350억 달러로 추산되나 사회·경제적 피해, 기타 손실까지 포함한 총 손실액(Total Loss)은 약 2,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피해는 주로 운송, 주택 등 주요 인프라에 대한 손해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운송 분야에서의 총 손실액은 약 320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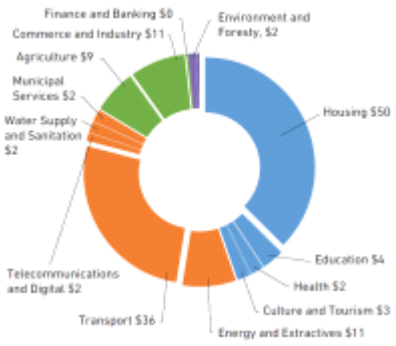

총 피해액(십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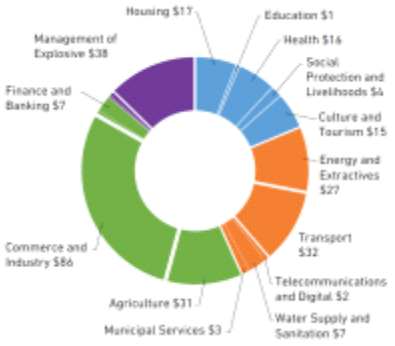

총 손실액(십억 달러)

[그림 2-13] 분야별 피해규모(2022.2.24~2023.2.24)

<출처 : World Bank, Government of Ukraine, EU and UN(2023)>

또한 RDNA2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회복과 복구를 위한 금액은 약 4,11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2023년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복구액은 141억 달러로 추산하였다. 그 중 피해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된 수송 분야 복구에 2023년 우선순위 복구액의 약 24%에 달하는 약 30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으로 에너지 인프라 21억 달러, 주택 20억 달러의 복구액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전체 추정 복구액 및 2023년 우선순위 고려 분야별 복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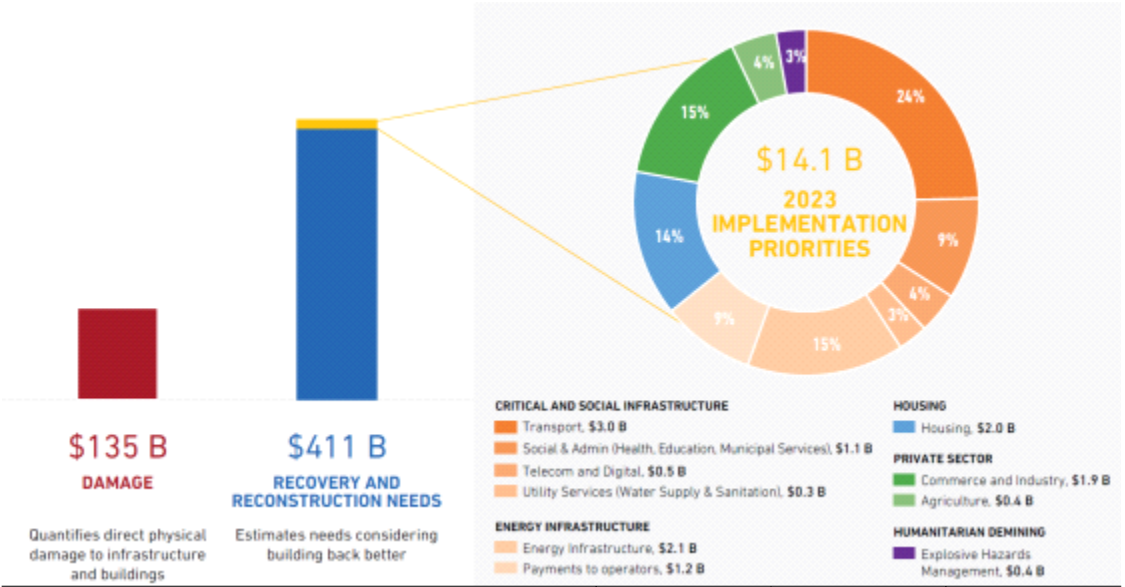

인프라 부문 총 피해 및 손실, 복구추정액(십억 달러)	피해액	손실액	추청 복구액
Energy and extractives	10.6	27.2	47.0
Transport	35.7	31.6	92.1
Telecommunications and digital	1.6	1.6	4.5
Water supply and sanitation(WSS)	2.2	7.5	7.1
Municipal Services	2.4	3.0	5.7
Infrastructure Sector	50.1	67.9	150.7

<출처 : World Bank, Government of Ukraine, EU and UN(2023)>

RDNA2 보고서에 나타난 인프라 부문별(운송, 전력·에너지) 재건수요[6] 중 운송 인프라 복구 및 재건수요를 살펴보면, 2026년까지 단기간 내 긴급 복구해야하는 프로젝트는 대략 141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 중 고속도로, 국도, 교량 복구 프로젝트는 46.7억 달러로 전체의 33%를 차

6) 우크라이나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존 인프라 여건의 상세 제시보다는 복구와 재건의 시급성을 요하는 운송, 에너지 부문의 재건 수요 등을, 관련 문서를 통해 확인·제시함

지하고 있어 도로 프로젝트가 복구, 재건 및 현대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선행되어야 할 프로젝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철도 관련 프로젝트가 전체의 28%를 차지하며 2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항 및 항만d,; 복구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대규모 사업으로 대부분 2027년부터 2033년까지의 중장기 프로젝트로 구분되어 있다.

Category	Types of activities/investments	Short term (2023–2026)	Medium to long term (2027–2033)	Total (2023–2033)
Reconstruction needs	Road bridges (national roads)	872.5	6,398.2	7,270.6
	Road bridges (local roads)	91.2	668.9	760.2
	Motorways, highways, and other national roads	3,171.0	23,254.0	26,425.0
	Oblast and village roads	636.7	4,669.0	5,305.6
	Communal roads	1,013.3	7,430.6	8,443.8
	Airports	201.3	1,476.2	1,677.5
	Railway track, bridges, stations, and electrical	2,792.7	20,479.9	23,272.7
	Railway rolling stock	294.3	2,157.9	2,452.2
	Railway equipment and other assets	171.7	1,259.0	1,430.7
	Private vehicles	819.0	6,006.2	6,825.2
	Ports and inland waterway infrastructure	39.7	291.3	331.0
	Urban public transport rolling stock, infrastructure, depots, maintenance vehicles	529.0	3,879.5	4,408.5
Service delivery restoration needs	National road and bridge repair	1,498.6	-	1,498.6
	Local road and bridge repair	324.8	-	324.8
	Communal road and bridge repair	176.4	-	176.4
	Railway infrastructure emergency repair	524.4	-	524.4
	Railway rolling stock and equipment	169.6	-	169.6
	Urban transport repairs	23.5	-	23.5
	Urban transport rolling stock and equipment	173.4	-	173.4
	Ports repair	4.6	-	4.6
	Border crossing point expansion	51.0	-	51.0
	Inland waterways infrastructure repair & Danube River port expansion	30.0	-	30.0
	Equipment for repair and maintenance of urban transport infrastructure	29.9	-	29.9
	Equipment for repair and maintenance of national and regional roads and bridges	68.8	-	68.8
	Maintenance of road and bridge infrastructure affected but not damaged by war	399.9	-	399.9
Total		**14,107.3**	**77,970.6**	**92,078.0**

[그림 2-14] 운송 인프라 복구 및 재건수요 현황(2022.2~2023.2)

<출처 : World Bank, Government of Ukraine, EU and UN(2023)>

2022년 10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9번에 걸친 전력인프라에 대한 집중 공격(KOTRA 해외시장뉴스, 2022)으로 인하여 변전시설, 발전소 등 50여 개소가 넘는 전력·에너지 시설이 파괴되었고, 일 3회 단전 및 단수가 이루어지는 등 전력 및 에너지 인프라 복구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른 전력·에너지 인프라 복구 및 재건수요를 살펴보면, 2026년까지의 단기 수요는 긴급을 요하는 송배전계통 재운영, 발전설비 등 재구축 프로젝트 등에 대해 약 57.1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Category	Types of activities/investments	Short term (2023–2026)	Medium to long term (2027–2033)	Total (2023–2033)
Reconstruction needs	Power sector reconstruction, including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distribution system operators, power generation facilities	2,962.7	34,070.8	37,033.5
	District heating reconstruction, including heat supply networks, heating points and heat-only boiler houses, 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 facilities	747.4	1,743.9	2,491.3
	Gas transportation system reconstruction, including gas transmission system operator and distribution system operators	377.1	2,136.7	2,513.7
	Fuel oil sector reconstruction, including oil refinery facilities and distribution networks	339.5	3,055.4	3,394.8
	Coal mining sector (urgent closure works on flooded mines, not currently under government control)	48.0	272.0	320.0
Service delivery restoration needs	Power sector liquidity needs	200.0	-	200.0
	District heating sector liquidity needs	-	-	-
	Gas purchasing and gas system liquidity	1,032.0	-	1,032.0
Total		5,706.6	41,278.8	46,985.4

[그림 2-15] 전력 · 에너지 인프라 복구 및 재건수요 현황(2022.2~2023.2)

<출처 : World Bank, Government of Ukraine, EU and UN(2023)>

2.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 동향

2.1 3차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 조사(RDNA 3) 개요

세계은행(Worldbank)과 우크라이나 정부, UN, 유럽연합(EU)은 재건지원의 기초조사인 "3차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 조사(Third Ukraine Rapid Damage Assessment, 이하 RDNA 3)"를 2024년 2월에 공개했다. 1차 RDNA는 2022년 2월 전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같은 해 8월까지의 재건 피해 및 수요를 조사

하여 2022년 8월에 발표했으며, 2차 RDNA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년 간의 재건 피해와 수요를 조사하여 2023년 4월에 공개했다. RDNA 3은 가장 최산 자료로 전후 2년에 걸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피해(Damage)[7], 손실(Loss)[8], 재건필요(Needs)[9]를 조사한 우크라이나 전쟁피해 산출 보고서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경제개발 총괄계획인 Ukraine Plan과 2023년 7월에 발족한 EU의 재건 재원지원 메카니즘인 Ukraine Facility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RDNA 3부터는 EU 회원국의 재건기초 이니셔티브인 Building Back Better 원칙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Building Back Better 원칙이란 EU가 코로나 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환경으로 타격을 받은 재정이 열악한 회원국에 대해 제시하는 경제회복 지원 이니셔티브로 건설, 에너지 등 기초 인프라의 EU 기준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RDNA 3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로드맵인 Ukraine Plan과 EU 가입을 위한 기초 프레임워크인 EU통합 절차, 재원조달 계획인 Ukraine Facility가 명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주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먼저 RDNA 3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를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분야별로 산출한 전쟁의 피해, 곤실, 재건 필요액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Ukraine Plan의 경우 재건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재건이 필요한 투자·개선 부문을 선정하고, RDNA 3를 기반으로 EU편입을 위한 우선추진 분야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앞서 기술한 Building back better 원칙이 적용되었다. EU통합 절차에서는 재건추진시 EU회원국 기준 준용하여 전 분야에 걸친 제도개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EU통합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Ukraine Facility는 RDNA3·Ukraine Plan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으로, 각종 재건계획과 재건지원에 있어 재원을 마련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

7) 피해(Damage): 전쟁으로 인한 물질적 자산/인프라의 파괴 또는 손상 규모로, 해당 자산/인프라 교체 및 수리에 필요한 추정비용. 전쟁 이전 해당 자산의 교체가격을 고려

8) 손실(Loss): 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흐름의 변화로, 운영비 증가, 수입상실 등을 가치 기준으로 평가.

9) 재건필요(Needs): 향후 10년(2023~2033년)간 전쟁 이전의 정상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에너지효율성 (EE), 현대화, 지속가능성 기준 충족 등 각종 프리미엄과 인플레이션 등 각종 가격요소 등을 반영

[표 2-10] 우크라이나 재건관련 주요 계획

구분	주무기관	역할	주요 내용
RDNA 3	Worldbank, UN, EU, 우크라이나 정부	피해 산출	• 분야별 전쟁 피해, 손실, 재건필요액 산출
Ukraine Plan	우크라이나 정부	재건 로드맵	• 재건 필요 투자·개선 부문 선정 • RDNA 3를 기반으로 EU편입을 위한 우선추진 분야 선정 • 재건로드맵에는 "Building back better" 원칙 도입
EU통합 절차	EU	EU 가입을 위한 기초 프레임워크	• 전분야에 걸친 제도개혁 • 재건추진시 EU회원국 기준 준용 • EU통합을 위한 장기적 계획 수립
Ukraine Facility	EU	재원조달 계획	• RDNA3·Ukraine Plan을 위한 재원지원 계획수립 • 각종 재건계획과 재건지원의 가교역할

<출처 : RDNA 3>

RDNA 3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액(Damage)은 RDNA 2 대비 13.2% 증가한 1,524억 달러, 손실액(Loss)은 72.6% 증가한 4,992억 달러, 재건필요액(Needs)은 18.4% 증가한 4,863억 달러 등으로 조사되어 각 항목별 규모가 RDNA 2 대비 1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11] RDNA 3 주요 피해·손실액 현황

항목	내용	규모
전체	피해 총액	1,520억 달러
	재건필요 총액(10년간)	4,860억 달러
	충당 필요액(2024년)	95억 달러
인적 피해	유럽 난민	590만 명
	국내 실행민	490만 명
경제적 피해	GDP('23/추정)	2021년 GDP의 74%
	해외원조 필요액('24년 예산기준)	373억 달러
사회부문 피해	피해 주택수	200만 호 이상
	피해 교육기관수	3,809개
	일부 온라인 학습 의존 학교	43%
	피해 의료시설	1,242개
산업부문 피해	농업부문 피해액	801억 달러
	가호프카 댐 파괴로 인한 농수산업 피해 증가율	300%
	관개 및 수자원 설비 피해/손실액	14억 달러
	상공업 시설 및 설비 피해액	156억 달러
	에너지 분야 손실액(수입손실)	540억 달러
	발전분야 손실액	320억 달러
인프라부문 피해	도로 피해규모	8,400㎞
	피해 교량수(고속도로, 국도 등)	290개
	피해 기차역수	200여개
	피해 철도교량수	150여개
	통신분야 피해액	21억 달러
	피해 상하수도 설비	441개
	피해 국토면적	54만 ㏊
기타 부문 피해	오염 국토면적	17.4㎢
	인도적 지뢰제거 소요액	346억 달러

<출처 : RDNA 3>

RDNA 3의 재건필요액은 인적·경제적·사회적·산업·건설인프라 등 주요 부문에 대한 피해·손실 규모를 기초로 산정되었으며, 공통 부문 39.9억 달러, 인프라 부문 148억 달러, 생산 부문 136.6억 달러, 사회 부문 161.8억 달러로 RDNA 2대비 18.4% 증가한 총 486.3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RDNA 3 분야별 규모

(단위 : 십억불, %)

분야	피해			손실			재건필요		
	합계	증감액	증감율	합계	증감액	증감율	합계	증감액	증감율
공통 부문	**4.0**	**2.0**	**100.0**	**63.3**	**23.3**	**58.3**	**39.9**	**-1.3**	**-3.1**
폭발 위험 관리	0.0	0.0	0.0	34.6	-3.0	-7.9	34.6	-3.0	-7.9
긴급대응 및 시민안전 보호	0.4	0.2	100.0	0.5	0.0	0.0	2.3	0.8	53.3
환경, 자원, 산림	3.3	1.8	120.0	26.5	26.0	5200.0	2.3	0.8	53.3
사법 및 행정	0.3	0.0	0.0	1.7	0.3	21.4	0.7	0.1	16.6
인프라 부문	**55.2**	**2.7**	**5.1**	**115.4**	**44.5**	**62.7**	**148.0**	**-8.4**	**-5.3**
교통	33.6	-2.1	-5.8	40.7	9.1	28.8	73.7	-18.4	-19.9
에너지 및 채굴	10.6	0.0	0.0	54.0	26.8	98.5	47.1	0.1	0.2
행정 서비스	4.9	2.5	104.1	6.8	3.8	126.6	11.4	5.7	100.0
상수도 및 위생	4.0	1.8	81.8	11.6	4.1	54.6	11.1	4.0	56.3
통신 및 디지털	2.1	0.5	31.5	2.3	0.7	43.7	4.7	0.2	4.4
생산 부문	**26.6**	**6.6**	**33.0**	**249.4**	**125.0**	**100.4**	**136.6**	**68.0**	**99.1**
상공업	15.6	4.7	43.2	173.2	87.4	101.8	67.5	44.3	190.9
농업	10.3	1.6	18.3	69.8	38.3	121.5	56.1	26.4	88.8
관개 및 수자원 관리	0.7	0.3	75.0	0.7	0.4	133.3	10.7	1.8	20.2
금융 및 은행	0.0	0.0	0.0	5.7	-1.1	-16.1	2.3	-4.5	-66.1
사회 부문	**66.6**	**6.5**	**10.8**	**71.1**	**17.2**	**31.9**	**161.8**	**17.4**	**12.0**
주택	55.9	5.5	10.9	17.4	0.2	1.1	80.3	11.7	17.0
사회복지	0.2	0.0	0.0	9.4	5.2	123.8	44.5	2.7	6.4
보건	1.4	-1.1	-44.0	17.8	1.3	7.8	14.2	-2.2	-13.4
교육	5.6	1.2	27.2	6.9	6.1	762.5	13.9	3.2	29.9
문화 및 관광	3.5	0.9	34.6	19.6	4.4	28.9	8.9	2.0	28.9
총계	**152.4**	**17.8**	**13.2**	**499.2**	**210.0**	**72.6**	**486.3**	**75.7**	**18.4**

<출처 : RDNA 3>

2.2 RDNA 3의 부문별 주요 내용

▮ 사회 부문(Social Sector)

사회 부문 중 주택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긴급 피해주택 복원에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피해복구 기초조사(Register of Damaged and Destroyed Property, RDDP)와 EU 기준에 맞춘 주택정책 현대화 등을 추진 중이다. RDDP에 따르면 주택 부문의 피해는 총 주택수의 10%에 달하는 2백만 호가 피해를 입어 총 피해액은 559억 달러로 산정되었으며,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803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EU 기준에 맞춘 주택정책 현대화를 위해 건축규제 프레임워크, 부동산 규정 개정, 주택 및 도시개발 정책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 부문 중 보건분야를 살펴보면, 전국 의료시설의 12.5%가 피해를 입어 총 피해액은 14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를 재건하기 위해서는 시설확충에 필요한 37.1억 달러를 포함하여 총 143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건의 방향으로는 국민 복지에 중점을 두는 Building Back Better 원칙을 위해 제도개혁과 시설확충에 집중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 생산 부문(Productive Sector)

생산 부문에서는 2023년 6월 Kakhovka 댐 폭격에 의해 관개시설에 대한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Kakhovka 댐 폭격을 계기로 피해규모가 전년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하며 RDNA3의 손실액은 전년대비 233% 급증한 7.4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관개시설과 관련한 재건사업은 Kyivska, Khersonska 지역의 관개시설 설비 현대화와 관개기술 등으로 재건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EU Water Framework Directive 등 EU통합을 위한 기술기준 도입이 추진 중이다. 기타 상공업 분야의 경우 전쟁에 따른 최대 피해분야로 재건필요액은 전년대비 190.1% 증가한 675억 달러를 기록했다.

▮ 인프라 부문(Infrastructure Sectors)

인프라 부문에서는 Kakhovka 수력발전소 폭격을 계기로 에너지 분야의 손실액이 인프라 부문 손실액의 46%인 54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98.5% 증가했으며, 이에 따른 발전분야 재건필요액은 전체 에너지 재건필요액 470.7억 달러의 85.9%인 404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재건은 2024년 긴급예산에 총 20억 달러 규모의 원전공사(Energoatom) 재개와 현지 Naftogaz Group이 추진하는 총 사업비 25억 달러 규모의 정유설비 현대화 등을 포함하여 발전·송배전 긴급복구, EU송배전 연결을 위한 설비증축, 난방에너지 확보 재원마련 등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교통 분야는 흑해 및 영공 폐쇄 등으로 인해 상공업에 이어 2번째로 많은 손실액인 40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요 손실액 비중은 흑해 폐쇄 65.0%, 항공로 폐쇄 15.5%, 도로 및 철도 중단 11.0%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수출역량 증대, 연결성 강화, 공공서비스 회복을 중점으로 핵심(Core) 네트워크를 선별하여 분야별 재건을 추진할 예정으로, 이를 위한 2024년 교통부문 예산 비중을 도로 및 교량 보수 40%, 철도 보수 12%, 국경도로 확장 11%, 철도 차량 및 설비 16%, 내륙수로 보수 2%, 다뉴브강 항만 확장 2% 순으로 반영하였다.

생산 부문 중 상하수도 분야는 중앙-지방정부간 정책수립 및 이행에 있어 괴리가 있으며 지방정부의 설비운영 노하우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품질이 저하됨에 따라 용량 대비 사용량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향후 EU기준 충족을 위한 설비 복구를 위해 폐수처리장 26%, 집수설비26%, 지하 상수처리시설 25% 순으로 재건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서비스 품질향상을 중점으로 재건 추진을 계획 중이다.

2.3 우크라이나 주요 개선 목록 및 2024년 재건 우선 중점 분야

우크라이나 정부는 EU 통합을 재건의 주요 목표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에너지, PPP, 토지개혁, 민간산업 육성 분야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EU 기준인 EU 클린 에너

지 패키지(EU Energy Package)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략 2050(Energy Strategy 2050)을 수립하였으며, 전략부문 투자 유치와 공급증대 유도 효과를 위해 전기공급 가격의 한도를 상향조정 했다. 이와 더불어 재생에너지 투자유지를 위한 지원활동과 함께, 유럽송전시스템네트워크(ENTSO-E) 연결을 위한 우크라이나에너지공사(Ukrenergo)의 기술요구사항을 도입하였다. PPP 분야에서는 정부예산법(Budget Code of Ukraine)에 PPP 방식을 포함하여 PPP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토지 개혁과 관련해서는 소규모 개인간 토지거래를 허용하고 우크라이나 기업의 토지구매 허용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민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5-7-9 저렴한 대출"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대출금리 보조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표 2-13] 2022~23년간 우크라이나의 주요 개선 목록

분야	주요 내용
에너지 분야	• EU 기준인 EU 클린 에너지 패키지(EU Energy Package)에 부합하는 에너지 전략 2050(Energy Strategy 2050) 수립 • 전기공급 가격 한도 상향(전력부문 투자 유치, 공급증대 유도 효과) • 재생 에너지(특히 풍력) 투자유치를 위한 유동성공급 확대 및 투자지원 • 유럽송전시스템네트워크(ENTSO-E) 연결을 위한 우크라이나에너지공사(Ukrenergo)의 기술요구사항 도입
PPP 분야	• 정부예산법(Budget Code of Ukraine)에 PPP 방식 포함
토지 개혁	• 소규모 개인간 토지거래 허용(토지 개혁 1단계) • 우크라이나 기업의 토지구매 허용 추진중('24년 1월~) • 농업부문 투자확대
민간산업 육성	• "5-7-9 저렴한 대출" 프로그램 등 중소기업 대출금리 보조금 지급 등

<출처 : RDNA 3>

우크라이나의 2024년 재건 우선 중점분야는 에너지와 교통, 주택 및 시설,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산업 및 서비스, 복합부문으로 구분된다. 그 중 에너지 분야의 경우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한 송배전선 복원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발전설비의 탈중앙화, 전력망 보호조치 강화 추진을 계획 중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방과 국경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과 도로, 철도, 교량, 항만 등 파괴된 인프라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 및 시설 분야의 경우, 수도 키이우를 중심으로 주택의 수리와 복원을 추진할 계획이며, 중앙난방, 에너지 효율성, 상수도, 폐기물처리 인프라 복원 등 주택과 관련된 서비스 시설

의 복원을 계획하고 있다.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학교 및 의료시설 등 필수 분야의 인프라를 복원하는 것과 함께 기타 사회 및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 복원 계획을 갖고 있으며,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공업과 농업 등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설비 복원을 복표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복합 부문에서는 지뢰 제거, 통신, 디지털 및 사이버 보안, 긴급 대응 및 시민보호 등의 조치와 함께 민주주의와 정의, 인권을 강화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표 2-14] 2024년 재건 우선 중점 분야 및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에너지	• 송배전선 복원 • 발전설비의 탈중앙화(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 전력망 보호조치 강화
교통	• 지방 및 국경 간 연결성 강화 • 인프라 복원(도로, 철도, 교량, 항만, 국경연결, 우편 등)
주택 및 시설	• 주택 수리 및 복원(수도 키이우 중심) • 중앙난방, 에너지 효율성, 상수도, 폐기물처리 인프라 복원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	• 학교 및 의료시설 복원 • 사회 및 문화 인프라 및 서비스 복원
산업 및 서비스	• 상공업, 농업 등 민간운영 설비 복원
복합 부문	• 지뢰 제거 • 통신, 디지털 및 사이버 보안 • 긴급 대응 및 시민 보호 • 민주주의, 정의 및 인권

<출처 : RDNA 3>

3.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글로벌 현황

3.1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동향

1)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동향 개괄

국제사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군사적인 지원과 비군사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2년 전쟁 발발 이후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의 국가별 군사적 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개별 공여국 중 미국이 431억 유로로 압도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으며, 그 다음으로 독일 100억 유로, 영국 53억 유로, 덴마

크 48억 유로, 네덜란드 38억 유로 순으로 집계되었다.

동기간 비군사적 지원의 경우 EU, 미국, 일본, 독일, 태나다, 영국이 주요 공여국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인도적 지원의 주요 공여국은 독일 30억 유로, 미국 25억 유로, EU 23억 유로 순이며, 재정적 지원의 경우 EU 277억 유로, 미국 215억 유로, 일본 48억 유로, 캐나다 34억 유로, 영국 33억 유로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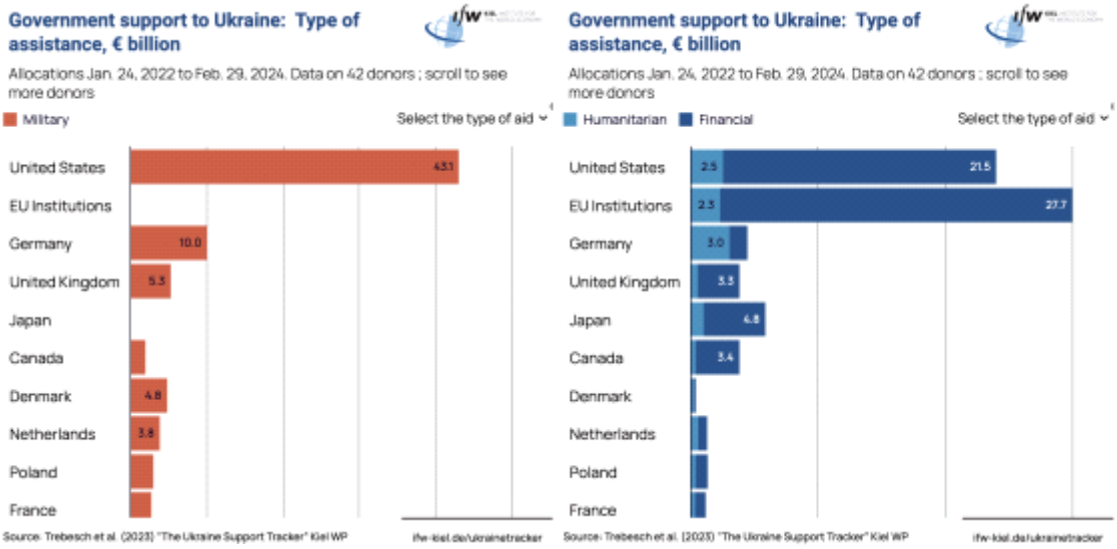

군사적 지원(십억 유로)　　비군사적 지원(십억 유로)

[그림 2-16] 국가별 우크라이나 지원 현황

<출처 : KIEL 연구소의 Ukraine Support Tracker(검색일자 2024.05.14)>

일반적으로 전후 재건의 단계를 회복(recovery), 재건(reconstruction), 개발(development). 평화구축(peacebuilding) 영역으로 구분 가능하며, 현재 우크라이나는 회복단계로 '긴급복구' 사업이 진행 중이다. 긴급복구 사업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립한 Ukraine Plan과 EU가 수립한 EU Ukraine Facility을 기반으로 추진 중으로, 2024년 2월까지 EU, EU 가입국, 유럽금융기관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880억 유로(129조 원)를 투입하고, 유엔과 세계은행이 긴급지원 형식으로 각각 34억 달러(4조 6천억 원)와 390억 달러(53조 원)를 조달하는 등 유럽 국가들과 EU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 주요 국제기구 및 국가별 우크라이나 지원 동향

① 국제기구 및 MDB

주요 국제기구 및 MDB들을 중심으로 긴급자원을 대출해주는 방식으로 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은행(Worldbank), 유럽부흥은행(EBRD), 유럽투자은행(EIB) 등의 금융기관들은 대부(loan)의 형태로 긴급자금 지원에 참여하고 있으며, UN이나 기타 국제구호기구 등의 국제기구들도 '긴급자금지원'의 형태로 재건자금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2022년 12월 전후 복구·재건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행정역량 강화 및 안정화, 회복·재건 지원하기 위하여 EU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기 위한 우크라이나 신탁기금(The Relief, Recovery, Reconstruction and Reform Trust Fund for Ukraine, URTF)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자금조달 및 지원 메커니즘 제공, 구호 및 재건을 위한 자문 및 분석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창립 기금으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국가들이 2억 5,000만 달러를 기부하였고, 2023년 2월 일본이 4억 7,10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2023년 6월 기준으로 총 10국을 통해 총 11억 1,300만 달러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①보건의료 개선 및 인명구조 사업(Health Enhancement and Life-saving (HEAL) Project), ②필수물류 인프라 네트워크 연결망 사업(Repairing Essential Logistics Infrastructure & Network Connectivity (RELINC) Project), ③우크라이나 방한 및 에너지 자원 복구 사업(Restoration Project of Winterization and Energy Resources Ukraine) 등에 기술지원 및 투자·단기정책융자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경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정보 공유 및 참여기관 간 협조융자 추진을 위해 우크라이나 투자 플랫폼(Ukraine Investment Platform, UIP)을 설립하였다. UIP는 궁극적으로 참여기관 간 협조융자를 통해 민간부문 중심의 재건사업을 지원하여 우크라이나 경제·산업·인프라 회복과 국제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5월 도쿄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EBRD 및 G7 8개 개발금융기관(DFI)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후, 2023년 6월 런던에서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서 추가 10개 참여기관과 양

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설립되었다. 2023년 6월 기준 현재에는 EBRD와 G7 8개 개발금융기관 외에 핀란드·스웨덴·스위스 등 유럽 각국 개발금융기관 등 총 1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 재난대응특별기금(Crisis Response Special Fund, CRSF)은 대응 수단의 단일화와 공여 방식의 다각화를 통한 신속·유연한 재건 지원을 위해 2022년에 설립되었다. 총 11개국에서 8.8억 유로를 출연하여 우크라이나 기업과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과 도시재건사업 등의 이행에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G7·노르웨이·스위스는 타기금의 공여액 7천만 유로를 공동계정(Pooled Sub-Account)으로 이관하였으며, 일본 역시 러시아 중소기업 지원기금 출연액 2,700만 달러를 동 계정으로 이관하였다. 이외에 미국과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사실상 단독기금과 같이 운영되어 관심 분야·수단 반영이 가능한 개별국가계정(Individual Sub-Account)에 공여하여 각자의 관심 분야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2-15] 재난대응특별기금(CRSF) 개별국가계정 지분 및 지원사업

공여국	지분율	공여액	지원사업
미국	10.09%	5억 달러	•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 농업 유관기업 및 우크라이나 에너지 국영기업(Ukrenergo) 대상 대출 및 단기 유동성 공급 • 취약계층 생계지원
노르웨이	1.26%	2억 유로	• 우크라이나 석유가스 국영기업(Naftogaz) 가스 매입
네덜란드	2.50%	1억 유로	•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
덴마크	1.21%	1,300만 유로	• 우크라이나 행정도시(Mykolaiv) 재건 지원
이탈리아	8.60%	1,000만 유로	• 사업 검토 중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07.18.)>

② EU

EU가 2023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하기로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의 총 금액은 약 180억 유로(한화 25조 5,000억 원)였으며, 대출 상환 기간은 35년으로, EU 회원국이 이자를 부담하고 우크라이나는 원금만 갚는 방식의 대규모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이러한 지원과 함께 우크라이나는 EU에 가입하고자 하고 있으나, EU 가입은 27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에 친러 성향 정부가 들어서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되면서 금융과 국방 양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

한 지원에 대한 EU내부 의견 불일치 등으로 지속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③ 미국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EU 통합, NATO 가입 추진 등의 친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과 고위 인사 및 군사 교류 확대, 각종 원조경제 수령 등을 추진해왔다. 미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러한 우크라이나에 약 40억 달러의 경제적·인도적·군사적 원조를 제공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약 5,300만 달러(한화 약 651억 원) 추가 지원 및 지속적인 원조를 약속하는 등 우크라이나 지원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로, 단순 지원을 넘어 재건사업 진행에 가장 영향력이 큰 국가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 경과 당시 미국 정부는 경제적 지원에만 130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후 99억 달러를 추가 지출로 편성하는 등 막대한 금액 지원을 약속했다.

이외에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우크라이나의 재건에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을 목적으로 2022년 7월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협의체를 발족하고, 협의체 공동의장으로 에너지기업 CEO와 곡물기업 전임 CEO를 선임하는 등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23년 4월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우크라이나 파트너십 포럼(US-Ukraine Partnership Forum)」을 개최하고 재건사업과 관련된 주요점을 논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미국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가 주최한 이 포럼에는 미국 상무부장관과 우크라이나 총리가 참석하여 사업 자금조달, 우크라이나의 재건계획 공유, 에너지·인프라·기타산업 부문에서의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④ 폴란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동쪽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초기부터 2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사실상 서방의 병참기지 역할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향후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폴란드의 주요 은행인 Bank Pekao가 2022년 10월 발간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보고서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약 7,500억 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에 따라 폴란드가 얻을 경제적 이익은 GDP의 3.6~3.8%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외에 2023년 2월 바르샤바에서 「우크라이나 재건박람회(Rebuild Ukraine 2023)」를 개최하면서 재건사업의 플랫폼 역할 수행하였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한 2023년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재건사업에서 폴란드가 최우선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⑤ 발트 3국(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발트 3국이라 명명되고 있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3국은 작은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 및 재건 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중 라트비아는 자국 GDP 대비 1.2% 이상의 금액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 또한 각각 자국 GDP 대비 1.1%, 0.9%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라트비아는 2022년 9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라트비아의 참여(The Involvement of Latvia in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문건을 내부적으로 승인하였으며 2023년 6월부터 우크라이나 체르니히브 지역(Chernihiv Oblast)에 2개의 여성지원센터 설립 및 주택 재건축을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자이토미르 지역(Zhytomyr Oblast)의 재건에 힘쓰고 있으며, 유치원, 학교 등 인프라 재건에 「에스토니아국제개발센터(Estonian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ESTDEV)」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발트 3국의 마지막 국가인 리투아니아는 학교 및 유치원 재건, 전기시스템 현대화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해 왔으며, 향후 에너지, 수자원 관리, 건설, 식품산업, 투자환경 개선 분야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⑥ 독일

독일은 유럽의 정책을 주도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로,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2년 10월 베를린에서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를 개최하여 전후 재건 사업에 대한 각 국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한 종합적인 정보제공과 네트워킹 및 기업에 대한 기회제공을 목표로 '통합포털플랫폼(Plattform Wiederaufbau Ukraine)'을 2023년 3월 창설하고,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과학기술단체 등이 참여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기존 루가노(Lugano)에서 합의되었던 '우크라이나의 지역-국가' 매칭 형태의 재건사업 추진방향을 거부하면서 좀 더 유연한 방식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3.2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협력 현황

한국은 2022년부터 개최된 우크라이나 복구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의지를 보여 왔으며, 2024년 6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제3차 우크라이나 복구회의 또한 참석하여 해당 회의에 참석한 60여개국 2,000여명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상황과 지원 수요를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재확인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2024년 코이카 무상원조 사업 총 약 1억 달러와 함께 2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했으며, 2024년 4월 약 21억 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을 체결하는 등 꾸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세계은행(WB)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우크라이나 지원기금에는 각각 5천만 달러 출연을 통해 1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미주개발은행(IDB)의 인베스트(Invest)의 운영 전략 이행 계획에 지지를 나타내면서, IDB 인베스트 증자에 정부도 1억5천만달러 규모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이러한 지원은 비록 미국와 유럽의 서방국가들 대비 지원규모는 작은 편이나, 기존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우호적인 관계에 기반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초청연수 프로그램,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을 지속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림 2-17] 2023년 G20 정상회담
<출처 : VOA 뉴스(검색일자 2024.10.24)>

[그림 2-18]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
<출처 : 무역뉴스(검색일자 2024.10.24)>

4. 소결

우크라이나는 도시화율이 70.1% 정도로 향후 도시화가 진행될 여지는 매우 높으나, 광활한 영토로 인해 특정 지역을 중심의 거점개발형 사회·경제발전 정책으로 인해 실제 도시화 또한 일부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전쟁 발발 직전 우크라이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우크라이나 대건설 프로젝트」와 같이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에 대한 의지가 높은 편으로, 향후 다양한 지역에서 도시건설 등에 대한 사업 가능성이 높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함에 따라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 대한 재건과 함께, 전쟁이 발발한 지역 외의 지역에서의 도시화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례로 재건수요를 살펴보면, RDNA3 기준으로 전체 재건필요액 486.3억 달러 중 주택부문의 재건필요액은 80.3억 달러로 전체 재건필요액의 16.5%에 달하고 있으며, 2024년 우크라이나 재건 우선 중점분야에 주택 및 관련 시설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LH의 주 사업분야인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타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인프라 관련 재건필요액이 148.0억 달러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인프라 유관 공기업 및 민간기업들과 연계한다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2022~2923년 우크라이나의 주요 개선 사항에 PPP방식이 정부예산법(Budget Code of Ukraine)에 포함되었으며, 우크라

이나 정부 예산의 약 60%를 무상원조와 차관으로 충당함에 따라 향후 재건사업에 있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농후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는 재건사업의 주요 부문을 PPP사업 형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도시·주택 부문과 각종 인프라가 연계된 One Team Korea를 활용하여 계획-시공-운영·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LH가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적인 상호 우호적인 관계가 형상될 필요가 있다. 1992년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 간 외교관계 성립 이후,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 및 남북대화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지지하는 등 지금까지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속적인 분쟁 등에 의해 실제 직접적인 투자는 투자금액 기준으로 약 3.1억 달러, 투자법인은 50개 사 정도로 미미한 상황이다. 하지만, 2021년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2기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고, 2022년 우크라이나에 KOICA 사무소를 설립하는 등 점차 적극적인 교류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2년 KOICA를 통해 약 1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물품을 지원하고 2023냔 9월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여협정을 체결하는 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재건사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보이고 있어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요 국제기구 및 MDB들과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원을 이어오고 있어, 향후 서방의 선진국들과 재건사업 참여에 대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원규모 면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상황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협력관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관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예전 한국전쟁 이후 복구사업에 성공한 한국의 전후복구 사례와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룩한 사례 등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고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 등을 통해 한국만이 갖는 강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KOICA 등을 통한 인도적 사업을 지속적을 추진하여 우크라이나 내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제3장 전후 재건사업 진출 사례

1. 기존 전후 복구사업 진출 사례

1.1 이라크 전쟁 재건사업

이라크 전쟁은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 중 2번째 전쟁으로,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다. 미국은 알 카에다의 9.11 테러 이후 엄청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테러는 신의 응징”이라는 공식 성명 발표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탈레반에 지원한다는 탈레반 고위급 간부의 자백, 그리고 이라크가 UN이 금지한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 등 일련의 자료에 기반하여 이라크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국제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재에 신음하는 이라크 민중 해방,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통한 세계평화에 기여, 알 카에다와 연계된 이라크 정부를 무너뜨리고 중동을 민주화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이라크 침공을 결정하였다. 2003년 3월 20일 “이라크 자유 작전(Operation Iraq Freedom)”이라는 작전명 하에 미군의 본격적인 침공이 개시된 이후, 2주가 경과한 4월 9일에 바그다드 함락과 함께 후세인 정부는 붕괴되었으며,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3년 5월 1일 후세인 정권의 붕괴와 종전을 선언하며 전쟁이 종료되었다.

[그림 3-1] 이라크 전쟁 및 종전 선언

<출처 : 나무위키(검색일자 2024.06.04)>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함께 동맹군 임시행정처(CPA) 주도로 지속되어 오던 군정이 2004년 6월 이라크 임시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라크를 통제했다. 이 기간동안 이라크는 긴급 재건지원과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선진 원조기관들의 활동이 빠르게 전개되었고, 이라크 치안은 연합군 주도의 치안강화활동으로 인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2004년 중반부터 2005년 12월 주권정부 구성을 위한 이라크 총선까지 이라크 내 각 정파·종파간의 이해관계와 이라크 내 저항세력의 활동 강화로 인해 치안불안이 급격히 증가하며, 이라크 재건지원 또한 어려움을 겪었다.

[표 3-1] 이라크 재건비용 추정치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4	2002~2007	합계
UN & Worldbank	행정·사법	101	212	313
	교육·보건·고용촉진	1,880	5,310	7,190
	교육	1,005	3,800	4,805
	보건	500	1,100	1,600
	고용촉진	375	410	785
	인프라	5,836	18,368	24,204
	운송 및 통신시설	1,043	2,366	3,409
	상하수도 및 폐기물 처리	1,881	4,961	6,842
	전력시설	2,377	9,745	12,122
	도시관리	110	303	413
	주택 및 토지관리	425	993	1,418
	농업·수자원	1,230	1,797	3,027
	농업부문 투자	1,230	1,797	3,027
	민간부문 개발	145	476	621
	국영기업	30	170	200
	금융부문	71	10	81
	투자환경	44	296	340
	광산업	80	154	234
	소계	9,272	26,317	35,589
CPA	치안유지	5,000	0	5,000
	석유	2,000	6,000	8,000
	문화	140	800	940
	환경	500	3,000	3,500
	인권	200	600	800
	외교	100	100	200
	종교	100	200	300
	자연과학	100	300	400
	청년스포츠	100	200	300
	소계	8,240	11,200	19,440
총계		17,512	37,517	55,029

<출처 : UN&Worldbank(2003), KIEP(2003) 재인용>

UN과 Worldbank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이라크 재건비용이 3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물리적인 복구, 기술지원 및 훈련비용 외에 각 분야의 신규투자와 관련된 추가적 관리·운영비용도 포함된 것으로, 인프라 복구 외에 경제제도 개선, 행정 및 사법제도 개선, 보건 및 교육 개선 등을 포함하여 총 1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비용 규모별로 살펴보면 인프라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 전체의 2/3에 이르는 24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보건, 교육 및 고용촉진에 72억 달러, 농업 및 수자원 개발에 3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더불어 CPA는 치안유지 50억 달러, 석유부문 정상화 80억 달러, 환경보호 35억 달러 등 UN과 Worldbank이 포함시키지 않은 치안과 석유부문의 복구에 추가로 194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제사회의 이라크 지원은 이라크 전쟁이 종료된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은 25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재건지원기금(Iraq Relief and Reconstruction Fund)을 편성하여 이라크 긴급지원 및 인도적지원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마드리드 원조공여국회의를 통해 184.4억 달러의 추가지원을 약속하였다. 또한 일본은 15억 달러의 무상지원과 35억 달러 규모의 유상지원 등 총 50억 달러를, 영국은 9억 달러를 원조자금으로 책정하였으며, 우리나라 또한 마드리드 회의에서 2.6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실시키로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국제기구 및 NGO를 통한 이라크 인도적지원을 위해 1천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결정하고 KOICA 사무소를 바그다드에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재건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마드리드 원조공여국회의에서는 2.5억 달러의 이라크 재건비용을 추가로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2007년까지 5년간의 지속적인 지원을 발표했다. 그리고 재건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재건사업 단계별로 사업추진 전략을 차별화하였다. 재건지원 초기에는 이라크 정부부처의 기관능력 향상과 보건, 교육 등 기초시설의 재건, 그리고 파병지역에서의 대민복구사업 강화 등의 전략을 세웠다. 재건사업이 가속화하는 중기에는 전력, 상하수도, 교통, 통신 등 경제·사회인프라 복구와 우리나라의 기업진출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며, 마지막 사업 종료시기에는 그 동안 지원한 사업들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능력강화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중점 지원을 목표로 했다.

이러한 재건사업은 이라크 정부가 운영한 ISRB(Iraqi Strategic Review

Board)를 통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원조기관 간 사업을 조정하는 등 이라크 개발계획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라크 개발 프레임워크와 중장기 개발전략 제시를 통해 각국의 이라크 개발원조가 통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통상적으로 여타 수원국의 경우 요청주의 방식을 통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이라크 개발원조는 협의주의 방식을 바탕으로 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와 더불어, 재건사업이 미국 및 동맹국 주도로 실시됨에 따라 민주주의나 법집행, 공공행정 등의 분야에 많은 자금을 투자되었고, 이는 이라크 정부 및 행정조직의 제도적·인적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미국과 동맹군이 목표로 하는 이라크 민주주의 정착 및 정부기능 강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공여국이 ISRB를 통한 사업심사 및 승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분야별 실무그룹회의나 사업조정을 위한 원조기관 회의가 정례화되지 못하는 등 적격사업 발굴 및 선정, 사업조정을 위한 제한적인 이라크 정부 역할로 인해 사업의 중복 및 우선순위 사업의 배제와 같은 부작용이 있기도 했다. 또한 이라크 치안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한 치안비용 증가로 원조사업 자체가 축소,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1.2 리비아 전쟁 재건사업

리비아 내전은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의 영향을 받은 반정부 시위로부터 촉발되었다. 2011년 2월 리비아의 제 2도시 벵가지에서 42년간 독재해 온 카다피 정부에 대한 반정부시위가 발생하여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었으며, 3월에 국가과도위원회(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NTC)가 발족되면서 NTC군과 정부군의 내전으로 발전하였다. NTC군이 주요 물류통로 및 정유시설, 석유수출항 등을 장악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동년 8월 수도 트리폴리에 진입하여 승리를 거두고 신정부 수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내전 당시 폭격 등으로 주택 및 항구, 도로 등 인프라 등이 파괴되었고, 석유·가스 플랜트 및 정유시설 등이 손상되어 원유생산량이 급감하였다. 내전 이전인 2010년 리비아의 원유생산량은 150만 b/d였으나 내전 직후인 2011년 8월에는 4만 5,000 b/d까지 하락하면서 2011년 리비아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3.3% 대비 대폭 하락한 −27.9%를 기록하였다.

내전의 피해 극복을 위해 NTC는 향후 5년 간 3,000억 달러 규모의 재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정유시설·주택·공장 건설 등 인프라 분야에 1,200억 달러, 자동차·가전제품 등 각종 상품 수입 관련 분야에 1,500억 달러, 방산분야에 300억 달러로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2012년 정부예산 545억 달러 중 약 120억 달러를 주택·공공사업부에 배정하여 교육시설, 주택, 인프라 순으로 재건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재건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리비아의 원유 생산량이 다시 복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과 2012년도에 14만 b/d의 원유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UAE의 al-Ghurair Group은 향후 4년 간 리비아 정유시설에 15억 달러 투자, 영국의 BP와 Shell은 중단되었던 리비아 유전 탐사활동 재개를 계획하는 등 외국인 투자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리비아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 34.4%의 경제성장에 이어 2016년까지 10% 대 성장을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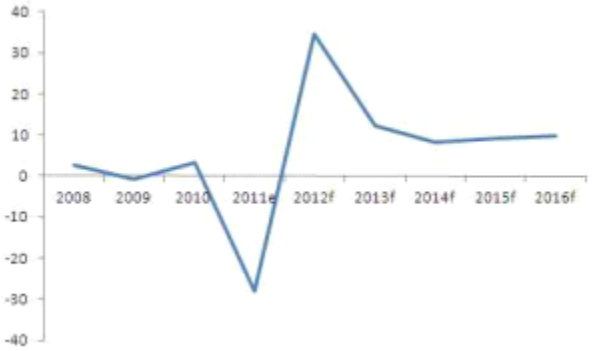

[그림 3-2] 리비아의 당시 경제성장률 및 예측치(%)
<출처 : 수은해외경제(2012)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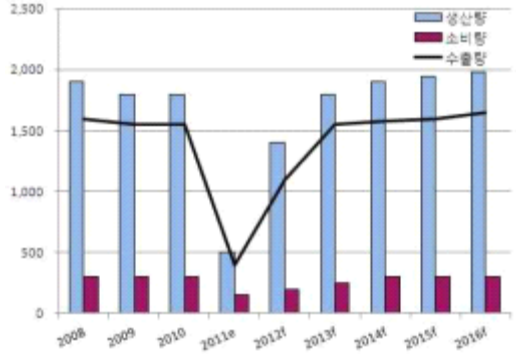

[그림 3-3] 복구사업 이후 당시 원유 생산량 전망(천 b/d)
<출처 : 수은해외경제(2012) 재인용>

내전 발발 이전인 2022년부터 2010년 동안 리비아의 10대 프로젝트 수주기업 중 현대엔지니어링, 대우엔지니어링, 성원건설이 각각 2, 3, 10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 건설기업은 리비아 건설시장의 약 30%를 점유해왔다. 당시 한국 건설기업들은 현지에서 플랜트, 주택, 전력 등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대한 기술력 및 사업수행능력을 인정받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 엠코 등은 주택, 도로, 병원, 교량,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 참여를 리비아 국가과도위원회로부터 요청받았다. 이외에 2012년 3월, STX중공업과 리비아 북부의 토부르크 지역 정부와 발전, 담수, 철강, 화학, 시멘트 등 각종 플랜트 건설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2012년 7월, 벵가지와 미수라타 등 2개 신공항청사 건설사업(550억 달러 규모)에 한화 S&C를 비롯하여 한국공항공사, 종합건축사무소, 근정건축설계 사무소 등 '네모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한국 건설사의 리비아 진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태였다. 하지만 내전 후 중국은 리비아에 약 790만 달러 상당의 지원품(쌀, 식용유, 의약품 등)을 제공했으며, 튀르키예 또한 22톤의 식량을 지원하는 등의 인도적 지원이 있었으나, 한국기업의 경우 건설사업 수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리비아 사회로의 기여는 소홀했다는 여론이 있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한 한국 기업의 현지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였다. 이에 한국 정부도 2011년 7월 리비아 난민에 100만 달러를 지원하고, 국가과도위원회에 100만 달러 추가 지원을 발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표 3-2] 2011년 8월 이전 국내기업의 리비아 건설 수주 현황

건설사	공사내용	수주액(억 달러)	공정률(%)
대우건설	미수라타 복합발전소	5.4	97
	벵가지 복합화력발전소	4.7	98
	즈위티나 복합화력 발전소	4.4	0
신한건설	자위아시 5,000가구 아파트	8.1	19
	질리톤 주택기반시설 토목공사	4.7	2
	트리폴리 5,000가구 주택공사	4.3	14
원건설	토브룩 5,000가구 주택 공공건물	9.4	0
	데르나 1,384가구 빌라 기반시설	2.3	71
	데르나 616가구 빌라 기반시설	1.3	20
이수건설	젠텐 3,300가구 프로젝트	4.2	1
한일건설	자위아 3,000가구 주거단지	6.7	4
	사르만 1,000가구 주거단지	2.1	14
현대건설	트리폴리 웨스트발전소	13.6	0
	알카리즈 발전소	6.9	46
현대엠코	굽바시 2,000가구 주택 기반시설	4.4	17

<출처 : 수은해외경제(2012) 재인용>

그러나 2011년 8월 NTC군의 승리 이후 리비아는 민주화로 이행되기 보다는 종교와 부족 정체성이 결합된 군벌 또는 파벌 간의 경쟁으로 변질되었으며, 결

국 2014년 수도 트리폴리를 거점으로 하는 제헌의회(General National Congress, GNC)세력과 동부 토부룩을 거점으로 하는 대표자의회(House of Representatives, HoR)세력 간 내전이 발발하였다. 정통성을 주장하는 두 세력 간 충돌은 반복되는 평화 및 휴전협정, 통합정부(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GNA)의 구성과 해체를 겪어왔다. 그리고 현재, 리비아 내전은 주요 당사자인 GNC(또는 GNA)와 HoR 및 HoR을 지원하는 리비아국민군(Libyan National Army, LNA) 간의 대립이 한 축을 이루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이해관계에 따라 각 세력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 UN과 미국, EU, 카타르, 터키는 UN의 중재로 구성된 리비아 통합정부 GNA를 지지하는 반면 러시아와 이집트, 사우디, UAE는 종교·경제안보적 이해 등에 따라 동부 산유지를 장악한 HoR 및 LNA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등도 경제적인 이유로 HoR 및 LNA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리비아 내전 이후의 재건사업 추진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리비아 건설시장을 각각 3등분하고 있던 한국과 중국, 튀르키예 중 나머지 2국가 대비 한국 건설사의 경우 현지에서 이익만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이에 다른 국가로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는 단순 사업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한국과 한국 기업들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리비아 내전의 경우 타국가와의 전쟁이 아닌 내부의 세력들 간의 다툼에 의한 것으로, 1차 내전 종료 이후 2차 내전이 발발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전 확보 또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이에, 전쟁 이후 재건사업 참여시에는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안전 확보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1.3 아프가니스탄 전쟁 재건사업

아프가니스탄은 1979년 12월부터 1989년 2월 소련군 철수 완료까지 약 10년간의 전쟁을 겪은 이후, 다시 아프가니스탄 국내 정파 간의 투쟁으로 인한 내전을 경험했다. 내전 기간 중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탈레반이 1996년 9월 아

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한 이후 2001년 11월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테러전으로 탈레반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약 22년에 걸쳐, 외부로부터의 전쟁과 내전을 겪었다.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테러전은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 당시 아프가니스탄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테러 주범들에 대한 인도 요청을 탈레반 정부가 이행하지 않자 2001년 10월 7일 이들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미군이 주도하고 동맹국이 협조하는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공격이 전개된 이후, 2001년 11월 탈레반 정권이 붕괴되었다. 이후 UN의 후원 하에 2001년 12월 아프가니스탄 여러 정파 간 본(Bonn) 회의가 개최되어, 회의에 참석한 아프간의 각 계 대표들은 임시 통치기구(Afghan Interim Authority) 구성에 합의하고 신헌법제정을 위한 제헌의회 소집을 요청하는 "본 합의서(Bonn Agreement)"에 서명하였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탈레반 정권이 축출된 후 아프가니스탄의 경제 및 사회 재건을 위한 노력에 착수하였으며, 대표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유엔안보리의 조치를 들 수 있다. 2001년 11월 14일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안(1378)에서는 아프간 국민들의 과도정부 수립을 지원에 UN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함과 동시에, UN 회원국들이 아프간 과도정부 및 아프간 국내외의 난민에 대한 지원과 아프간의 경제 및 사회재건을 위한 장기지원을 권장하고 있다. 이후, UN 안보리 결의안(1378) 이행을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을 포함한 21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여한 고위급 회담이 2001년 11월 27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의 우선분야를 결정한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도쿄 각료급 회의(2001년 12월)에서는 참가국과 국제기구들이 2002년 중 18억 달러 규모의 원조 시행 후, 이를 포함하여 향후 3년에 걸쳐 총 45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서약을 하였다. 이후 2004년 3월 말 65개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아프간 재건지원을 위한 베를린 각료급회의에서는 국제치안지원군(ISAF)의 계속적인 주둔, 군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지방개발팀(PRT)의 지방에 대한 치안유지 활동 및 재건과 개발노력 지원, 2004년 6월 말을 시한으로 하는 제 1단계 무장해제(DDR) 계획의 이행 등을 합의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재원으로 1994년부터 6년간 82억 달러의 원조를 공여하기로 서약하였다. 이외에도 2006년 1월 말 개최된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을 위한 런던 각료급회의에서는 "본 합의서"와 도쿄 원조국회의 및 베를린 원조국회의

를 통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원 경험을 기반으로 보다 장기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경제·사회개발 지원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아프간 국가개발 전략(Afghanistan 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S)"에서 밝힌 향후 5년간에 걸쳐 이행해야 할 내용과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방안을 담은 "아프간 협약(The Afghanistan Compact)"을 체결하고, 2006년부터 향후 5년간 약 105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서약하였다. 한국 또한 앞서 기술한 고위급 회담 및 각 각료급 회의에 참여하였으며, 도쿄 각료급회의에서는 2002년~2004년에 걸쳐 4,500만 달러(전체 서약 규모의 약 1%)를,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을 위한 런던 각료급회의에서는 2006년부터 3년에 걸쳐 약 2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등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시 가장 문제가 됐던 사안은 전쟁의 원인이었던 테러단체인 알카에다와 탈레반 등 테러단체의 지속적인 테러였다. 초기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우선 공격목표가 외국군, 아프간 군과 경찰 및 고위 정부 공무원을 포함한 아프간 정부, 외교관과 외국 원조기관원, 아프간 정부와 외국군 및 기관에 협조하는 자 및 NGO 등으로 특히 외국원조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원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로, 원조활동에 있어서 안전 확보가 필요하지만 현지 경찰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상당부분, 사실상 전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전쟁 역시 리비아 전쟁과 마찬가지로 2001년 12월 승전을 선언한 이후, 다시 탈레반이 득세를 하며 결국 2021년 8월 31일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기 전까지 20년에 걸쳐 전쟁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종전 선언 이후에도 전쟁의 재발위험이 있으므로, 재건사업 참여시에는 이러한 돌발상황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처음 종전선언 이후 개최된 도쿄각료회의에서는 국제사회의 서약한 액수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약속 하였으나 베를린 회의와 런던 회의에서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한 지원내용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원조예산의 제약 때문으로, 재건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기 전 가용 예산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현지 경험이 풍부한 NGO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과 문화와 스포츠 등 원조 분야의 다변화 또한 필요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동유럽 및 우크라이나 개발 사례

2.1 우크라이나 개발 사례(산업단지)

우크라이나 건설사업에 국내 기업 또는 타 국가의 건설기업이 진출한 사례 검토에 애로가 있어, 우크라이나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한 산업단지 사례를 조사하였다. 우크라이나에서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0여 년 전부터로, 우크라이나 경제부에 따르면 2021년 9월 2일 기준으로 산업단지 계획을 제출하여 인·허가를 받은 곳은 주정부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리우네州,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州의 2개소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산업단지가 32개소, 이외에 민간기업에서 조성하는 산업단지가 18개소의 총 52개소로 나타나 있다. 그 중, 현재 건설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산업단지는 키이우州의 Bila Tserkva Industrial Park와 자카르파탸州)의 Industrial Park Solomonovo, 지토미르州의 Industrial Park Korosten, 그리고 빈니차州의 Vinnytsia Industrial Park 등 총 4개소이며, 추가적으로 7개 산업단지는 현재 건설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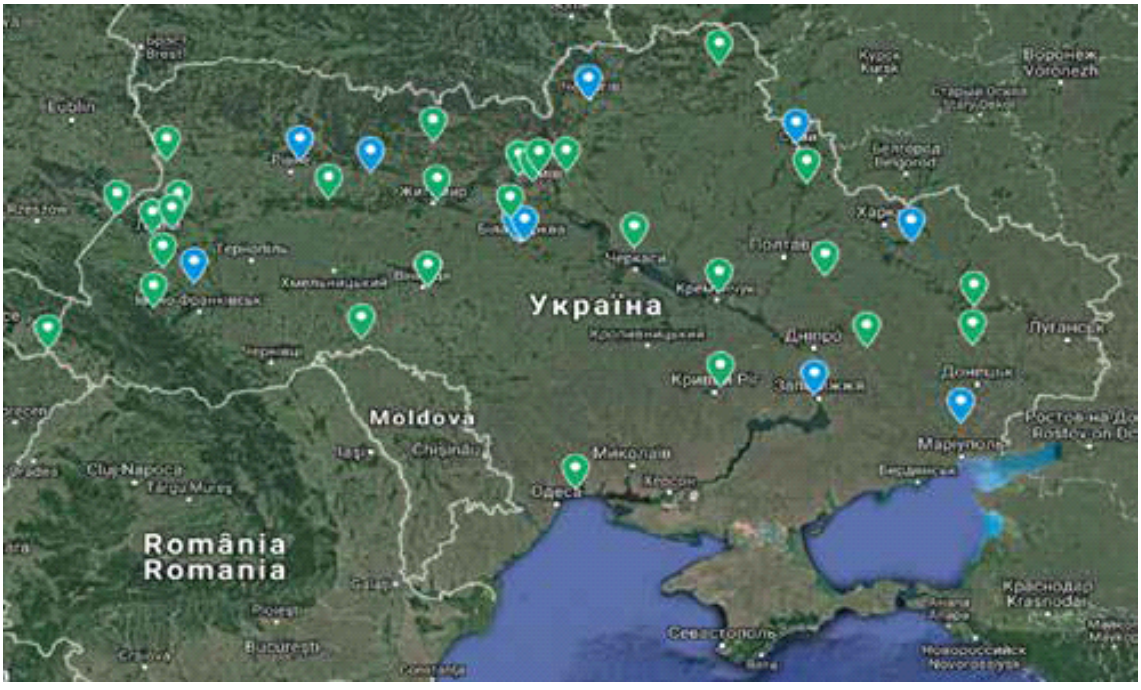

[그림 3-4] 우크라이나 산업단지 분포도

<출처 : 외교부·한국개발연구원(2018)>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족한 재정지원과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원제도의 부재 등 정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산업단지 개발이 부진한 실정이다. 우크라이나 경제부에 따르면, 2016년~2019년 동안 단 4개의 산업단지만을 대상으로 총 720만 흐리우냐 규모의 정부 자금지원이 있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산업단지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약 20억 흐리우냐를 산업단지 내 회사건설, 재건, 운영지원 등의 분야에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로의 투자유치를 위해 향후 3년간 현재 건설·운영되고 있는 4개의 산업단지와 추후 조성될 산업단지 25개소를 대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15년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조성규모를 최소 15㏊에서 10㏊로 완화하고 최대 허용면적도 기존 700㏊에서 1,000㏊로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별도의 조세 혜택은 아직 운영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 부가세 및 관세 혜택에 대해 법안을 제출·검토 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산업단지용 신규 장비 및 부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현재 조성이 완료되어 운영 중인 산업단지는 총 4개로, 키이우州의 빌라 체크바 산업단지(Bila Tserkva Industrial Park)는 키이우와 리비우에 IT 혁신센터를 설립한 경험이 있는 UFuture 그룹이 280만 달러를 투자하여 설립하였다. 생산라인, 물류창고, 보관창고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우크라이나 산업단지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단지로 총 70㏊ 규모로 약 30개의 기업이 입주할 수 있으나, 2019년 기업입주 이후 산업단지관리회사까지 포함하여 6개 기업이 입주해있는 상태이다. 자카르파탸州의 솔로모노보 산업단지(Industrial Park Solomonovo)는 Atoll Holding 그룹 내에 속해 있는 Sezparkservis社에서 2014년 설립한 산업단지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의 동유럽 4개국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최첨단 자동차 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중유럽과 동유럽의 중심지로 성장하고자 투자유치 중이다. 2020년 기준 우크라이나 자동차 생산비중의 81%에 해당하는 3,386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Atoll Holding 그룹의 Skoda 자동차 제조공장 Eurocar가 입주해있다. 빈니차州에 위치한 빈니차 산업단지(Vinnytsia

Industrial Park)는 빈니차시 경제에 대한 투자유치, 도시의 투자 이미지 개선, 산업 및 기업활동의 발전을 위한 우호적 조건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가구 생산, 기계 및 장비의 수리 및 설치, 엔지니어링, 물류 및 서비스 산업이 주요 유치대상이다. 빈니차 산업단지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경쟁력 향상 및 폴란드-우크라이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폴란드 개발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된 Golden Site 2020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지토미르州에 위치한 코로스텐 산업단지(Industrial Park Korosten)는 도시발전과 개선을 목적으로 코로스텐시 주도로 조성하였으며, 코로스텐 MDF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유치업종은 악기 제작, 조명, 목공 산업, 물류 등으로, 목재 합판, 바닥재 등을 제조하는 기업인 Bfproject 社가 1억 5천만 유로를 투자받아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입주하고 있다.

[표 3-3] 우크라이나 주요 산업단지 현황

산업단지	설립 연도	개발사	규모 (ha)	주요 유치업종	주요 인프라	주요 입주기업
빌라체크바 산업단지	2016	UFuture	70	-	• 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 전기 • 천연가스 • 도로	• Plank Electrotechnic • Volicya-Agro • Nova Poshta • UNISET • VIRASTAR
솔로모노보 산업단지	2014	Sezparkservis	66.2	• 자동차 산업	• 수도 공급 • 폐수관리 시스템 • 전기 • 천연가스 • 도로 • 변전소 • 소방서	• Eurocar
빈니차 산업단지	2016	Vinnytsia시	35.7	• 가구 생산 • 기계 및 장비의 수리 및 설치 • 엔지니어링 • 물류 및 서비스	• 수도 공급 • 폐수관리 시스템 • 전기 • 천연가스 • 도로	• UBC Group • Winter sport
코로스텐 산업단지	2014	Korosten시	42.2	• 악기 제작 • 조명 • 목공 산업 • 물류 등	• 수도 공급 • 폐수관리 시스템 • 천연가스 • 도로	• Bfproject

<출처 : 해외개발 Preview(2023)>

2.2 동유럽 개발 사례

1) 폴란드 개발사례

① 브로츠와프 아마존 물류센터(Wroclaw Amazon Fulfillment Center)②

독일의 물류 수요가 비용 절감 목적으로 주변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기존 서유럽 중심의 유럽 물류시장이 인프라 구축, 기술발전 등으로 중앙 및 동부 유럽의 물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폴란드는 물류시장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폴란드는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시간당 단위노동 비용이 독일의 30% 수준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크며, 과거 주요 철도 거점임과 동시에 최근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로 구축한 A4 고속도로는 폴란드 주요 도시뿐 아니라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역의 물류거점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측면까지 더해지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폴란드를 새로운 생산공장 또는 물류기지로 선택을 하고 있다. 아마존 또한 독일 시장을 타깃으로 하며 2014년 9월 폴란드에 브로츠와프 아마존 물류센터(Wroclaw Amazon Fulfillment Center)를 구축하였다.

[그림 3-5] 브로츠와프 아마존 물류센터 전경

<출처 : 이남훈(2017)>

브로츠와프 아마존 물류센터는 아마존 EU 물류 자회사인 Amazon Fulfillment Poland가 전체 건물 100%를 15년간 장기 책임 임차하는 형태로, 총 매입금액은 부동산 매입가 7,200만 달러와 취득부대비용 및 예비비 등 340만 달러를 포함한 총 7,540만 달러로, 현지 담보대출 3,960만 달러를 제외한 지분투자(Equity) 금액은 3,580만 달러이다.

[표 3-4] 브로츠와프 아마존 물류센터 개요

위치	· 브로츠와프(Wroclaw) 시
임대면적/토지면적	· 123,449㎡(약 37,000평)/252,448㎡(약 76,400평)
준공일	· 2014년 9월
임차인	· 아마존 EU 물류 자회사인 Amazon Fulfillment Poland Sp.zo.o. (모기업이 임대차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연대보증)
임차율	· 100% 임차(15년 3개월)
토지소유권	· 완전 소유권(Freehold)
매매금액	· 72,000,000달러(약 918억 원)
매도자	· Amazon Fulfillment Poland Sp.zo.o.(Sales & Leaseback 방식)
거래방식	· 지분증권 거래(share transfer)

<출처 : 이남훈(2017)>

브로츠와프 아마존 물류센터는 고객 맞춤형 설계(Built-to-Suit)로 개발되어, 아마존의 무인로봇 기술과 자동화시설을 탑재하고 있다. 10m에 달하는 천장높이는 수직적으로 상품을 적재하는 시설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바닥하중도 이를 반영하여 일반적 기준보다 4배 이상인 5톤/㎡로 설계되었다. 또한 층고가 높은 관계로 상층부와 하층부의 온도차로 인한 상품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단열재를 일반창고에 비해 5배 수준으로 보강하였다. 아마존은 고정비용을 늘리지 않으면서 신속한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일즈 앤 리스백(Sales and Leaseback) 방식을 취했는데, 이는 임대창고의 물량이 보장되고 위험이 낮으므로 낮은 이자 수준으로 채권을 발행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림 3-6] 브로츠와프 아마존 물류센터 내부

<출처 : 이남훈(2017)>

② 특별경제구역(SEZ) 조성사례

폴란드의 산업지역은 크게 산업단지(Industrial and Technology Park)와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이하 'SEZ')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단지는 지방정부가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폴란드 전역에 77개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SEZ로 지정되어 있다. 산업단지 입주시에는 투자보조금 혜택과 함께 부동산세 감면, 에너지·난방·용수 등 유틸리티의 저렴한 공급 등의 이점이 있다.

한편, SEZ는 기업이 유리한 조건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 지정된 행정구역으로, 폴란드 전역에 걸쳐 11,000㏊ 면적에 14개 SEZ가 운영되고 있다.

[그림 3-7] 폴란드 특별경제구역(SEZ)

<출처 : 폴란드 투자무역청 홈페이지>

SEZ에 투자하는 기업은 25~50% 수준의 법인세 감면 및 투자금의 최대 50%

까지 세금 감면 등의 지원과 함께 지방정부로부터 부동산세 면제, 직업훈련 보조금 같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폴란드 정부는 2018년 6월부터 단순 제조업 투자에서 벗어나 신기술, R&D 등 투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와 함께 기존 14개 SEZ를 폴란드 국토 전체로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투자기업은 기존 14개 SEZ 뿐만 아니라 비 SEZ 지역에서도 투자금액과 질적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폴란드의 14개 SEZ 현황은 [표 3-5]와 같다.

[표 3-5] 폴란드 주요 산업단지 현황

SEZ	규모	운영 성과	주요 투자부문	주요 투자자
KAMIENNA GÓRA	1,386ha	• 투자액 : 37억 PLN • 투자자수 : 55 • 발급된 허가건수 : 127 • 일자리 창출 : 8,360	자동차,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종이 및 종이 제품, 출판 관련 서비스	Bauer Print Wykroty, Joyson Safety Systems, Wepa Piechowice, Dr. Schumacher, Dr. Schneider Automotive, Toyota Boshoku, Weber-Hydraulika
KATOWICE	978ha	• 투자액 : 440억 PLN • 투자자수 : 416 • 발급된 허가건수 : 590 • 일자리 창출 : 90.000	자동차, 유리 제품, 철강, 목재 가공, 식품 및 건설	Opel Manufacturing, NGK Ceramics, FCA Powertrain, Brembo, SK hi-tech battery materials, Nexteer Automotive, Kronospan OSB, DSO, Rockwell Automation
KOSTRZYŃ-SŁUBICE	900ha	• 투자액 : 100억 PLN • 투자자수 : 150 • 발급된 허가건수 : 344 • 일자리 창출 : 36,000	자동차, 제지, 목재, 플라스틱 가공	ICT, Faurecia Gorzów, TPV Displays, Barlinek Inwestycje, Volkswagen Poznań, Europol Meble, Teleskop, Gedia, Amica Wronki, Phoenix Contact Wielkopolska
KRAKÓW TECHNOLOGY PARK	383ha	• 투자액 : 126억 PLN • 투자자수 : 195 • 발급된 허가건수 : 265 • 일자리 창출 : 38,975	식품 가공, 금속제품 제조, 운송산업 요소 및 부품 제조	Lafarge Cement, Nidec Motors & Actuators, Shell, Velvet Care, Valeo Autosystemy, MAN Trucks, Grupa Azoty, Royal Canin
LEGNICA	918ha	• 투자액 : 120억 PLN • 투자자수 : 57 • 발급된 허가건수 : 170 • 일자리 창출 : 20,000	자동차 및 금속 산업	Volkswagen Motor, Sitech, Winkelmann, Sanden Manufacturing, BASF, Gates, Faurecia Legnica, Vitro, Voss Automotive, CCC Factory, H&M

[표 3-5] 폴란드 주요 산업단지 현황(표 계속)

SEZ	규모	운영 성과	주요 투자부문	주요 투자자
ŁÓDŹ	592ha	• 투자액 : 230억 PLN • 투자자수 : 167 • 발급된 허가건수 : 350 • 일자리 창출 : 75,000	가전제품, 식품 가공, 플라스틱 가공, 화장품 및 의약품, IT/BPO	Euroglas, Gillette Poland International, UMA Investments, Whirlpool Company, Haering, Ericsson, Infosys, Business Support Solution
EURO-PARK MIELEC	1,000ha	• 투자액 : 118억 PLN • 투자자수 : 191 • 발급된 허가건수 : 449 • 일자리 창출 : 36,500	항공, 자동차, 플라스틱가공, 화학	Polish Aviation Works, MTU Aero Engines, BORGWARNER, BURY, KIRCHHOFF, Kronospan Mielec, SPLAST, FIBRAIN, ML SYSTEM
POMERANIAN	1,738ha	• 투자액 : 156억 PLN • 투자자수 : 139 • 발급된 허가건수 : 177 • 일자리 창출 : 17,959	전자, 금속, 기계, 가구	Anwil, Bridgestone Stargard, Cargotec, Ciech Soda, Flextronics International, Iglotex, International Paper Cellulose Fibers, Jabil, Lacroix Electronics
SŁUPSK	538ha	• 투자액 : 34억 PLN • 투자자수 : 75 • 발급된 허가건수 : 90 • 일자리 창출 : 5,500	플라스틱 가공, 목재, 식품, 금속, 자동차, 건설, 물류 및 창고업	KRONOSPAN, ALBATROS ALUMINIUM, NORDGLASS II, PAULA FISH, OZEN PLUS, ROTHO, AJ FABRYKA MEBLI, LEANN STAŃCZYK, Korpo
STARACHO WICE	245ha	• 투자액 : 31억 PLN • 투자자수 : 76 • 발급된 허가건수 : 183 • 일자리 창출 : 10,000	세라믹, 금속, 화학, 자동차	Cerrad, Cersanit II, Gerda 2, MAN Bus, Orizzonte, LSC Communications/RR Donnelley, Starpol II, STAR-DUST, Ceramika Nowa Gala II
SUWAŁKI	195ha	• 투자액 : 55억 PLN • 투자자수 : 128 • 발급된 허가건수 : 251 • 일자리 창출 : 18,000	목재(장식용품 포함), 금속, 기계, 플라스틱	SAMASZ, TANNE, ROCKWOOL, PFLEIDERER MDF GRAJEWO, Spółdzielnia Mleczarska MLEKPOL, PRONAR, KOMAGRA, KAN, PADMA
TSSE EURO-PARK WISŁOSAN	443ha	• 투자액 : 106억 PLN • 투자자수 : 156 • 발급된 허가건수 : 213 • 일자리 창출 : 27,000	금속, 자동차, 기계, 가구, 식품	LG Chem Wrocław Energy, LG Electronics Wrocław, Heesung Electronics, Pilkington Automotive, QUADWinkowski, UPM RAFLATAC

[표 3-5] 폴란드 주요 산업단지 현황(표 계속)

SEZ	규모	운영 성과	주요 투자부문	주요 투자자
INVEST-PARK	1,639ha	• 투자액 : 330억 PLN • 투자자수 : 215 • 발급된 허가건수 : 478 • 일자리 창출 : 65,000	자동차, 식품, 포장, 가전 제품, 화학	Mercedes-Benz, Toyota Motor Manufacturing, Volkswagen, Umicore, Mondelez, Electrolux, 3M, Mando Corporation, Colgate-Palmolive
WARMIA-MAZURY	150ha	• 투자액 : 65억 PLN • 투자자수 : 148 • 발급된 허가건수 : 336 • 일자리 창출 : 9,337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전자제품, 금속가공, 가구, 식품	Porta Doors, Michelin, Polmlek, Tymbark, Agrochem, Corab, Meble Taranko, Heinzplastics, Kostrzewa, Elstar, NET, Cedrob

<출처 : 폴란드 투자무역청(2019), 폴란드 투자무역청 홈페이지>

2) 러시아 개발사례

① 러-중 해외경제무역협력구 사업

중국은 자원의 확보와 해상 물류통로인 출해구 확보 등을 위해서 러시아 투자를 진행해왔다. 그 중 해외경제무역협력구(境外经贸合作区, 이하 '협력구') 사업은 러시아의 자원과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기반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에서 공산품을 생산하는 국제협력 산업단지로 중국의 자본과 러시아의 법제도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국가급 협력구와 지방급 협력구의 2가지 형태로 구분[10]된다.

러-중 협력구 사업은 중국정부의 지원 하에 중국 기업들이 구매 및 임대하는 방식으로 해외 토지를 확보한 후 건설[11]한다. 현재 중국 상무부 심사를 통해 지정된 협력구는 캉지국제투자유한공사(康吉国际投资有限公司)가 투자한 러시아 우수리스크경제무역협력구, 헤이룽장둥닝화신경제무역유한공사(黑龙江东宁华信经济贸易有限责任公司)가 투자한 중러(연해주)농업산업협력구, 헤이룽장무단장룽웨경제무역유한공사(黑龙江牡丹江龙跃经贸有限公司)가 시행사로 투자한 러시아 룽웨임업경제무역협력구가 지정[12]되어 있다.

10) 이기열 외, 환동해권 국내기업 진출 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KMI, pp.71-77

11)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검색일: 2020. 5. 27.)

[표 3-6] 중러 국가급 협력구(기업) 현황

구분	진출업체	내용	주요 시행사 및 대표 입주 기업
제조	러시아 우스리스크 경제무역협력구 (俄罗斯乌苏里斯克经贸合作区)	• 위치: 연해주 우수리스크시 • 면적: 228만㎡ • 투자액: 20억 위안 (인프라: 7억 위안) • 특성: 2006년 상무부 허가 • 산업: 경공업, 가전, 목재, 칼라강판 등 • 계획: 총 60개 중국 기업 유치 계획	• 캉지 국제투자 유한공사 (康吉国际投资有限公司) • 헤이룽장지신공업무역그룹(黑龙江吉信工贸集团), 저장캉나이그룹(浙江康奈集团), 원저우 화룬공사(温州华润公司)가 공동 설립 • 신얼타이 신발(鑫尔泰鞋业), 지린목업(吉信木业), 지리얼 가구(利吉尔家具) 등 27개(2014) • 동방강철유한공사(东方钢铁有限公司)
농업	중러(연해주) 농업산업협력구 (中俄(滨海边疆区)农业产业合作区)	• 위치: 연해주 미하일로프카, 허럴(Khorol), 포크라니치니 등 3개 구역 • 면적: 1,000㎢ • 특성: 국가급 해외농업 협력구로 지정(2015.4) • 산업: 재배업, 양식업, 가공업, 물류창고	• 둥닝화신공업무역(그룹)유한공사 (中国黑龙江省东宁华信工贸（集团）有限公司) • 타이위안농목과학기술개발유한공사(泰源农牧科技开发有限公司)
임업	러시아 룽웨 임업경제무역협력구 (俄罗斯龙跃林业经贸合作区)	• 위치: 아무르(주요), 파스코브, 이만, 추코트카 등 4개 구역 • 면적: 9만㎢ • 투자액: 13억 달러 • 산업: 임업 생산가공, 물류서비스, 컨벤션센터 • 계획: 40개 기업 유치 계획	• 무단장시룽웨경제무역유한공사(牡丹江市龙跃经贸有限公司) • 헤이룽장나이리그룹(黑龙江耐力集团, 40%), 이춘신춘그룹(伊春新春集团, 30%) 및 쑤이펀허산샤공사(绥芬河三峡公司, 30%)가 협력 설립

<출처 : 一带一路战略平台>

이렇듯 중국은 러시아의 자원 수입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 간 대화채널 확대·강화를 기반으로 물류 인프라와 농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 중이다. 또한, 이를 위해 중국은 러시아와의 다양한 투자 펀드를 조성하여 실질적인 투자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협력 분야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2015년 중·러 양해각서 체결 이후 국무원 총리를 중심으로 국가 주요 사업들과 거시경제 조정을 담당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 동북 3성 등 지방정부 간의 효과적인 업무협조와 위원회 산하의 동북진흥사 운영을 기반으로 러시아 개발 및 협력이 원활[13]해졌다.

12)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2017), p. 25.

13) KOTRA(2017), p. 25.

② 러시아 Arctic LNG-2 사업

러시아는 북극 야말 LNG사업의 개시로 LNG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에너지 시장 내 위상이 강화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자본 투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 2035에 따르면 야말 반도와 기단 반도를 포함한 북부 지역을 LNG 생산거점으로 선정하고 2035년까지 글로벌 LNG 시장에서 점유율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바텍은 천연가스의 연간 생산량을 2035년까지 최대 40% 늘리겠다고 밝히고, 노바텍의 두 번째 LNG 프로젝트인 Arctic LNG-2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rctic LNG-2 사업은 북극권 기단 반도에 LNG 생산을 목적으로 액화플랜트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러시아 야말-네네츠 자치구에 위치한 육상 가스전을 개발하여 액화 후 북극항로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로 LNG를 수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림 3-8] 야말 LNG와 Arctic LNG-2 위치

<출처 : Novatek, 홈페이지, 2020.10.15>

Arctic LNG-2 사업은 660만 톤의 트레인 3개를 설치하여 연간 1,980만 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계획으로 야말 LNG 보다 약 330만 톤 많은 천연가스를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야말 LNG 사업의 투자비용인 270억 달러에 비해 1/3정도 낮은 100억 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Arctic LNG-2는 육상가스전으로 해양가스전인 사할린과 비교시 채굴 비용이 저렴하고 극한기후 때문에 액화비용이 절감되어 카타르 LNG 생산원가의 절반 수준[14]으로 보고되고 있다.

[표 3-7] Arctic LNG-2 사업과 야말 LNG 사업 비교

구분	Arctic LNG-2	야말 LNG
발주사	노바텍(Novatek)	노바텍(Novatek)
위치	북서부 시베리아 기단 반도 내	야말반도 북동지역
가스 공급원	Salmanovskoye	South Tambeyskoye
최종 투자결정	2019년 승인(예정)	2013년 말
생산가동	2022-2025년 (예정)	2017년
생산능력	연간 약 1,980만 톤 (약 660만 톤의 트레인 3개)	연간 1,650만 톤 (550만 톤의 트레인 3개)
총 건설 투자비용	100억 달러	270억 달러
LNG 계약	일부 현물거래	96% 계약 완료
손익분기점	야말 LNG 프로젝트의 1단계와 유사한 1,000㎥당 250달러 이하로 추정	1,000㎥당 250달러

<출처 : KMI(2018)>

러시아 정부는 Arctic LNG-2 사업의 외국투자자로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요 국가들을 투자자로 선정하였다. 2017년 11월 중국의 CNPC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 후 2019년 CNPC의 자회사인 CNODC와 CNOCC는 각각 10%의 지분투자를 결정[15]했으며, 일본의 Japan Arctic LNG와 Mitsui & Co 및 JOGMEC 또한 10%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최종적으로는 중국의 CNPC(10%), CNOCC(10%), 일본의 미쓰이 물산(10%), 프랑스의 Total(10%), 노바텍(60%)로 지분구조가 결정[16]되었다.

14) 한국투자증권, 산업분석, 2018.4.18., p.28

15) http://www.novatek.ru/ru/press/releases/index.php?id_4=3173(검색일: 2020.08.20.)

지분 투자 외에도 북극LNG-2사업의 기본설계를 위해 러시아 NIPLGas社 51%, 영국 TechnipFMC社 33%, 독일 Linde社 16% 지분의 노바엔지니어링 합작회사(NovaEngineering JV)를 설립[17]하였고, 해당 사업과 연계된 사업인 사베타 항만과 내륙을 연결하는 북위도 루트 간선철도 건설을 위해 러시아의 비스(VIS)社는 중국공상은행(Industrial and Commercial Bank of China , ICBC)과의 투자협력협정을 기반으로 야말-네네스 자치주와 협정서를 체결[18]하였다.

[표 3-8] 북극LNG-2 사업 참여 국가별 역할

구분	상류			중류			하류		
	세부 부문	국가	기업	세부 부문	국가	기업	세부 부문	국가	기업
석유 산업	시추생산	러시아	노바텍	파이프 라인 저장운송	러시아	미공개	가스 판매	러시아	노바텍
관련 산업	생산시설 설계	러시아	노바텍	저장시설 건설	한국	대우해양 조선	가스 수입	미공개	미공개
		영국	Technip FMC						
		독일	Linde						
	지분투자	러시아	노바텍	철도 건설	러시아	RJD			
		중국	CNPC						
			CNOCC						
		일본	미쓰이						
		프랑스	토탈						
	중장비 운송기계 설치	네덜 란드	Mammoet	조선	한국	대우 해양조선			
					중국	후둥 중화조선			

<출처 : KMI(2020)>

16) https://www.kommersant.ru/doc/4082101(검색일: 2020.08.20.)

17) http://www.keei.re.kr/web_keei/pendingissue.nsf/xmlmain4/DD7B343341801BF249258276001178A3/$file/33_%EB%9F%AC%EC%8B%9C%EC%95%84%EC%A4%91%EC%95%99%EC%95%84%EC%8B%9C%EC%95%84.pdf(검색일: 2020.08.20.)

18) https://www.kommersant.ru/doc/4048002(검색일: 2020.08.31.)

③ 즈베즈다 조선단지 사업

볼쇼이카멘 선도개발구역에 위치한 즈베즈다 조선단지는 러시아 로스네프트(Rosneft)와 가스프롬뱅크(Gazprombank)가 합작 설립한 로스네프테가즈(Rosneftegaz)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건설은 중국 기업인 China Communication Construction Company가 주도하였다. 푸틴 대통령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볼쇼이카멘 선도개발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17개 중 즈베즈다 조선소 관련 투자 프로젝트는 총 3개이며 총 투자 금액은 1,455억 루블 투자 규모가 가장 크다.

러시아 정부는 즈베즈다 조선단지를 대형선박, 특수선 및 해양 플랫폼을 생산하는 러시아 유일의 조선소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19]로 총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2015년 12월 17일 즈베즈다 조선단지 유한회사가 설립 후, 도장실 구축, 중톤급 선박 건조 및 해양 장비용 이동식 도크가 있는 부두 건설 및 장비 설치를 위한 1단계 공사를 시작[20]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90.94㏊ 면적에 드라이독 건설 및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구분[21]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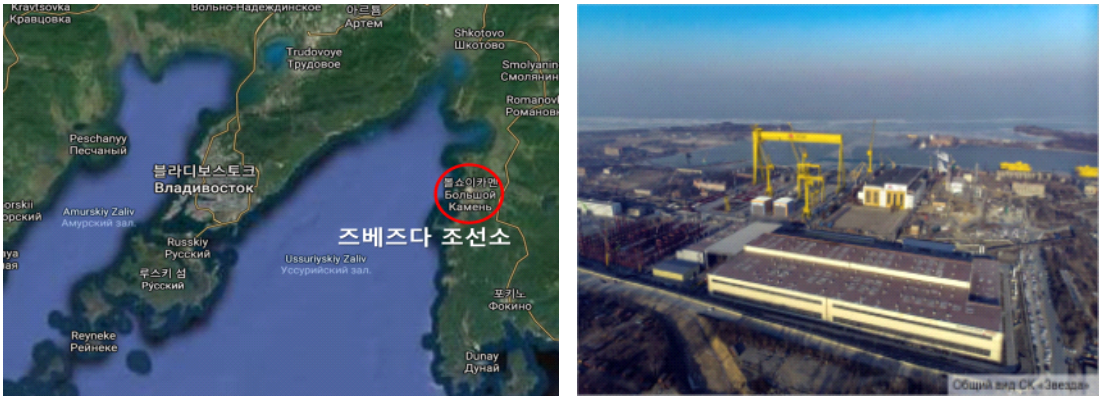

[그림 3-9] 즈베즈다 조선소 위치와 조선단지 현황

<출처 : 해외개발 Preview(2020)>

19) https://gge.ru/press-center/news/glavgosekspertiza-rossii-vydala-polozhitelnye-zaklyucheniya-po-etapam-st roi telstva-dvz-zvezda-na-dal/?sphrase_id=4390(검색일: 2020.09.21.)

20) https://www.zrpress.ru/business/primorje_29.01.2019_92916_mtk-primorje-2-pomog-uvelichit-gruzoobor ot-po-vetke-khunchun--makhalino.html(검색일: 2020.09.21.)

21) https://minstroyrf.gov.ru/press/glavgosekspertiza-rossii-soglasovala-proekt-stroitelstva-tsentra-obrabotki-dann ykh-ssk-zvezda/(검색일: 2020.09.21.)

한국 기업의 경우 2019년 9월 삼성중공업이 쇄빙LNG운반선의 기술파트너로 선정되었으며,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즈베즈다 조선소와 쇄빙LNG운반선 설계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019년 11월 노바텍과 15억 달러(약 1조 7,640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5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노바텍의 2차 발주에서는 중국의 후동중화조선과 대우조선해양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었다.

4. 소결

기존 전후 복구사업 사례를 살펴보면,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주체들 중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복구사업이 추진되어왔다. 승전의 주축이었던 서방국가들은 전재의 수행과 동시에 전후 재건사업 참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 인도적 사업과 함께 복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적인 여론 조성을 통해 각종 지원을 유도하고 이끌어왔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국제기구와 MDB, 서방국가들을 중심으로 각종 지원을 이어오고 있지만 직접적인 전쟁 참여는 지양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쟁의 직접적인 주체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한정되어 있다. 특히, 최근 주요 국가의 정치상황 변화나 전세계 각지에서의 분쟁상황 등을 고려할 때 서방국가들의 전폭적인 재건사업 참여는 한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협력사업을 이어간다면, 향후 한국이 재건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전 전후복구 사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때, 기존 전후 복구사례들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재건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안전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기존 전후 복구사례에서는 안전확보를 위한 치안비용의 증가로 인해 각종 사업이 축소, 변경, 취소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군 또는 경찰 등의 지원을 바탕으로 재건사업 현장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건사업 수행 시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경우 현지에서 한국 정부 또는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 악화로 재건사업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재건사업과 인도적인 원조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현지 경험이 풍부한 NGO들과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다변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 발발 직전 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부가세 및 관세 혜택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재건사업과 함께 전쟁의 피해지역 외에서도 산업단지 등의 건설에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앞선 전후 복구사례들에서 문제시되었던 안전확보에 있어서도 유리할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전후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무원 초청연수 및 ODA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제도 개선 등 향후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선제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이 필요하며, 이는 앞서 제시한 한국 정부 및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전쟁의 피해지역만을 재건사업의 대상지로 보지 않을 경우,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들과 연계한 지역들 또한 재건사업의 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다. 특히, 폴란드 등 인근 V4국가들의 경우 전쟁 종료 이전 우크라이나로 진출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 EU 국가들로 통하는 관문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경우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통관 및 관세 등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혜택 등을 인근 국가들과의 협약을 통해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경우 현재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이긴 하지만 동일 문화권으로 관련 법·제도 및 관습, 문화 등에 있어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러시아로 진출 경험이 있는 국내 기업들의 경험을 십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진출을 위한 One Team Korea 등을 구성 시 해당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거나, 해외건설협회나 KIND, KOTRA 등이 주최하는 다양한 설명회, 포럼, 세미나 등에 해당 기업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다면 향후 우크라이나 진출에 있어 예상되는 다양한 시행착오 과정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관련 법·제도[22)]

1. 우크라이나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제도 개요

▮ 우크라이나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된 법·제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된 법률은 포괄적으로 40개 이상의 법률 및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나, 각 법률이 통합된 방향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도시계획 및 개발에 있어 다양한 법적 규제가 도시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다양한 법의 제·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해나가고 있는 중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공간계획 체계는 법·제도 상에서는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지방(local, 정주지)의 3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하위 단계의 공간계획은 상위 공간계획의 방향에 부합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국가공간계획의 경우 2020년 이후의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역(regional) 수준의 공간계획 중 4개 지역(주, oblast)을 대상으로 하는 주 영토계획 또한 현 시점에 부합하는 최신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군(raion)의 영토 계획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이 전체 군(raion)의 27%이며, 과거 수립 이후 개정되지 않은 군(raion)의 영토 계획이 61%로, 총 87%의 군(raion)에서 영토 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황이다.

▮ 우크라이나 공간계획의 위계 및 계획별 주요 내용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공간계획은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지방(local, 정주지)의 3 단계로 구분되어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중, 국가(national) 수준의 공간계획은 우크라이나 영토 전반에 대한 계

22) 면책조항 : 본 자료는 향후 한국의 LH를 포함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우크라이나 진출 시 참고자료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로, 자료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법률자문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실제 우크라이나 진출시에는 반드시 우크라이나 현지 법률전문가 또는 로펌,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의 추가적인 검토 및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자요의 내용에 대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질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획과 우크라이나 영토의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구분된다. 국가 전반에 걸쳐 수립하는 “우크라이나 영토 계획의 일반 계획”은 사회경제적 수요, 환경적 제약, 자원 기회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토지이용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1-2010 버전과 2011-2020버전의 계획이 우크라이나 국영 연구소인 DIPROMISTO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된 2011-2020버전 이후의 최신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여전히 2020년 계획을 사용 중이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영토의 특정 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하위 국가 공간계획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구분된 흑해 연안 및 아조프해, 카르파티아 산맥의 산악지역, 체르노빌 참사로 인한 방사능 오염지역과 그외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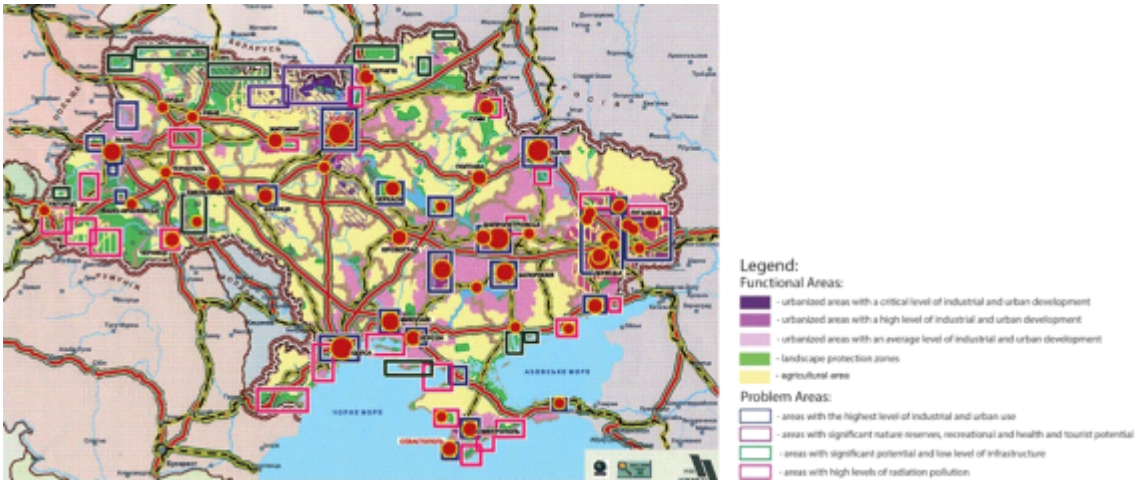

[그림 4-1] 우크라이나 영토 계획의 일반 계획

<출처 : Mykola Habrel et al.(2022)>

참고 : DIPROMISTO

- 우크라이나의 공간 및 도시 계획 분야 연구 및 기획 기관
- 우크라이나 지역 개발, 건설 및 주택부(Ministry of Communities and Territories Development)의 거버넌스 분야에 속한 국영 기업
  ※ 우크라이나 지역 개발, 건설 및 주택부 : 공공주택 및 인프라 개발을 담당하는 우크라이나 정부 부처로, 2022년 12월 2일 기반시설부(Ministry of Infrastructure)와 병합하여 Ministry of Development of Communities, Territories and Infrastructure로 재편
- DIPROMISTO의 활동은 공간 및 도시 계획 및 건축 분야의 프로젝트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목표로 하며, 영토 계획 및 개발을 위한 규범적이고 방법론적인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거주지, 지역에 대한 공간 및 도시계획 문서를 정교화하는 데 중점
- 지역개발, 건설 및 주택부(Ministry of Communities and Territories Development) 명령 'No.73'에 따라 표준화 기술 위원회의 "영토 및 정주지의 계획"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영토 및 정주지의 계획에 대한 과학적, 연구, 규범적 방법론 및 정보 지원 기능 담당

우크라이나 공간계획 위계 중 중간 단계인 “지역(regional) 수준의 공간계획”은 크림 자치공화국에 대한 영토 계획과 지역(주)에 대한 영토 계획, 그리고 군(raion)의 영토 계획으로 구분된다. 크림 자치공화국 영토 계획은 현재 러시아로 합병되어 있는 크림 자치공화국 대상의 공간계획이며, 지역(주)의 영토 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역의 24개 지역(주, oblast)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이다. 지역(주)의 영토 계획은 1988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Kyivska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 2010년 이후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군(raion)의 영토 계획은 136개 군(raion)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계획이다. 군(raion)은 본래 총 490개로 구분되어 있었으나, 2020년 7월 17일 Verkhovna Rada(우크라이나 의회)에 의해 490개의 군(raion) 대부분과 이전에 군 외부에 있던 "지역적 중요성을 지닌 도시"를 136개의 군(raion)으로 병합·개편하였다. 병합 이전인 490개의 군(raion)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61%에 달하는 298개의 군(raion)이 오래된 계획만이 수립되어 있으며, 27%에 해당하는 130개의 군(raion)의 경우 계획 수립 자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전체 군(raion)의 87%에 달하는 군(raion)에서 계획 수립이 미흡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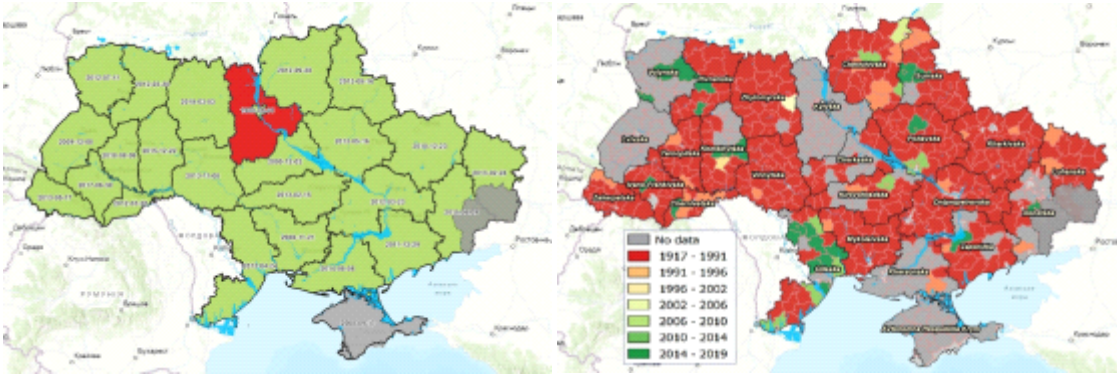

주의 영토계획 수립 현황　　군의 영토계획 수립 현황

[그림 4-2] 주 및 구역의 영토계획 수립현황(2020.07 기준)

<출처 : Decentralization in Ukraine>

우크라이나 공간계획의 최하위 위계는 지방 혹은 정주지(local) 수준의 공간계획으로, 국토의 통합 공간개발(integrated spatial development), 영토의 공간개발을 위한 종합계획(complex plan for spatial development), 지방의 일반적인 계획(general scheme of locality), 역사적 건축 참조 계획(historical architectural reference plan), 지역 구역 계획(territory zoning plans), 국토

세부 계획(detailed territory plans)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토의 통합 공간개발은 지역 공동체 개발을 위한 장기적인 공간·사회·경제적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분야 간 전략 계획으로, 공간개발을 위한 복합계획, 지방의 일반계획, 구역 설정 또는 세부 국토계획 등 지역 차원의 공간에 관한 계획이다. 영토의 공간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은 영토의 공간적 조직과 기능적 목적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 서비스, 인프라, 교통, 공공장소, 민방위, 문화유산 및 환경보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을 위한 주요 원칙과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2023년 4월까지 우크라이나 내에서 종합계획 승인 사례는 전무하다. 그리고 지방의 일반적인 계획은 지역의 장기 계획 및 개발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 공공 및 산업구역, 도로망 및 녹지 간의 균형을 정의하고 있으며, 역사적 건축 참조 계획은 현지의 일반적인 계획의 일부로, 역사적 유산 지역의 경계와 보호 모드를 정의하고 있다. 이외에 다양한 기능 구역에 대한 건물 매개변수를 정의하는 공간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또는 지방의 일반적인 계획의 일부인 지역 구역 계획과 지방의 일반적인 계획 조항을 명시하고 국토 일부의 계획 및 개발을 정의하는 국토 세부 계획이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따른 공간계획의 변화

현재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 시작된 전쟁이 2024년 9월 현재까지 진행 중으로, 과거 전쟁 발발 이전 우크라이나 건설시장 진출 방안과 전쟁 중 또는 전쟁 직후의 진출방안을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에도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으며 국제사회에 재건을 위한 원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쟁 발발 이전보다 신속하고 간결한 절차에 따라 재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건설면허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계엄기간 중에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원전 건설 및 시운전 등 일부 법률에 따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건설면허가 필요치 않은 상황이다. 또한, 계엄기간 중에는 일부 제한된 건설업 분야에 대해 허가없이 통보만으로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계엄령 종료 또는 취소 이후 3개월 내 당국에 사후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렇듯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므로, 전쟁 중 또는 직후의 진출방안과 전쟁 종료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다시 전쟁 이전과 동일한 진출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우크라이나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률

우크라이나에서 건축활동의 기반이 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 제14도에 따르면 “토지는 국가의 보호 하에 있는 주요한 국가재산”으로, “국민, 법인 및 국가가 법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행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헌법 제26조에서는 “우크라이나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는 우크라이나 헌법, 법률 또는 국제 조약에 명시된 예외를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외국인 또한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조성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러한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도시계획 및 개발의 제일 말단 활동인 건축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건축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크라이나 영토계획의 일반계획에 관한 법」을 기반으로 건축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2016년 개정 이후로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건축 활동은 「건축법」과 함께 「도시계획기본법」, 「도시개발 규제에 관한 법률」을 따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법률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고, 이와 연계된 기타 법률들을 살펴봤다.

2.1 국가 지역 정책의 기본에 관한 법률

국가 지역 정책의 주요 원칙을 우크라이나 내부 정책의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략의 영향을 받은 지역 및 영토의 복원을 위한 세부사항 설정을 위한 법률로, 총 6개의 장과 2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의 일반조항에서는 정책의 목적과 원칙, 방향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언급하고 있다. 2장은 국가 지역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5장은 관련 주체들의 역할 분담과 재원조달에 관한 내용, 정책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1] 국가 지역 정책의 기본에 관한 법률의 구성체계

구분	제목	주요 내용(조항)
1장	일반조항	• 용어의 정의 • 국가 지역 정책의 목적과 원칙 및 방향, 정책수립의 대상 및 주제 • 관련 법률들과의 관계
2장	국가 지역 정책의 수립 및 이행	• 국가 지역 정책 문서 체계 • 우크라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실행계획 • 지역 발전 전략 및 조치계획
3장	국가 지역 정책 주제의 승인	• 국가 지역 정책 분야에서 각 주체들의 권한에 대한 설정 • 국가 지역 정책의 수립과 이행 보장을 위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배 • 부처간 조정위원회 및 관련 기관 설립에 대한 사항
4장	국가 지역정책의 재정안정	• 국가 지역 정책의 자금 조달원 및 조달 방법 •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에 대한 사항
5장	주 지역 정책 이행의 모니터링 및 평가	• 국가 지역 정책 모니터링 원칙 및 유형, 관련 조직에 관한 사항 • 국가 지역 정책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6장	최종 조항	

<출처 : 해외개발 Preview(2023)>

본 법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 지역 정책은 자연·역사·생태·경제·지리·지역의 특성·인구 및 민족의 특성·문화적 정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크라이나 전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세부적인 목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그 지역의 역동적이고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 △사회적·경제적 통합 보장, △생활수준 제고, △안전한 환경 조성, △거주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 대해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기준 준수를 위해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 우크라이나 내각, 크림자치공화국 당국, 중앙 및 지방 행정 당국, 지방 자치 기관 등이 수립하게 되어있다. 이를 위해 국가 지역 정책의 수립 공간범위는 지역, 거대지역, 소지역(microregion)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역은 크림자치공화국, 키이우(Kyiv) 및 세바스토폴(Sevastopol) 지역 및 도시가 포함되고, 거대지역에는 공통 개발 문제를 가진 통합된 여러 지역 또는 부분, 소지역은 영토 완전성과 개발 특성이 일치하는 지역의 일부로 구분되어 있다.

공간적 범위 등에 따라 국가 지역 정책은 우크라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지역 개발 전략, 공동체 개발 전략으로 구분된다. 그 중 우크라이나 지역 발

전을 위한 국가전략에는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 추세 및 주요 문제 발굴, 국가 지역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영토의 기능적 유형 설정 등이 포함되며, 이를 위한 전략 목표와 방향, 목표 실현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과 향후 모니터링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개발 전략은 크림자치공화국, 키이우 및 세바스토폴, 도시의 사회 경제적 발전 추세 및 주요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전략적 목표, 개발 우선순위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공동체 개발 전략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마을, 정착지, 시의회 집행기관이 우크라이나 지역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에 의해 결정된 우선순위 및 관련 지역 개발 전략을 담고 있다.

[표 4-2] 지역 정책의 전략적 계획 문서의 구성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우크라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	• 지역의 사회 경제적 발전 추세 및 주요 문제 • 국가 지역 정책의 우선순위 • 영토의 기능적 유형 • 지역 발전과 지역 간 협력의 전략적 목표와 방향 • 전략적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운영 목표 • 구현의 주요 임무, 단계 및 메커니즘 • 우크라이나 지역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이행의 효율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지역 개발 전략	• 크림자치공화국, 키이우 및 세바스토폴, 도시의 사회 경제적 발전 추세 및 주요 문제 • 해당 기간 동안 지역의 전략적 목표, 개발 우선순위 • 전략적 목표 달성을 보장하는 운영 목표 • 주요 업무, 단계, 구현 메커니즘 및 자금 조달 출처 • 지역 개발 전략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시스템
공동체 개발 전략	• 공동체를 대표하는 마을, 정착지, 시의회 집행 기관이 우크라이나 지역 개발을 위한 국가 전략에 의해 결정된 우선순위 및 관련 지역 개발 전략을 고려하여 수립 • 전략의 실행은 관련 마을, 정착지, 시의회가 승인한 실행 조치 계획을 기반으로 수행 • 공동체의 개발 전략의 개발·승인·실행·모니터링 및 평가 절차에 관한 방법론은 중앙 행정 기관의 승인 득 필요

<출처 : 해외개발 Preview(2023)>

그 중, 우크라이나 진출을 위해 고려할 사항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기능적 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본 법에 의해 수립된 우크라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에서는 지역 및 지역 개발의 복원 및 촉진을 계획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복구 지역, 지역적 성장 중심, 특별한 개발 조건을 갖춘 지역,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지역 등의 기능적 유형으로 지역을

분류하고 있다. 복구 지역은 적대 행위가 발생했거나 일시적으로 점령되었거나 그 결과로 중요 기반시설 및 주택 등이 파괴된 지역이며, 지역적 성장 중심은 다른 유사한 지역 대비 더 양호한 지리·인구통계·사회경제적 지표를 보이는 지역이다. 특별한 개발 조건을 갖춘 지역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낮거나 자연·인구통계·안보 또는 기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지역이며,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지역은 자급자족 가능한 소규모 지역으로 사회·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경제·사회·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의미한다.

[표 4-3] 영토의 기능적 구분 및 주요 특징

구분	주요 특징
복구 지역	• 적대 행위가 발생했거나 일시적으로 점령되었거나 그 결과로 중요 기반시설 및 주택 등이 파괴된 지역 • 적대 행위,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의 급격한 악화, 다른 지역 및 다른 주로의 인구 이동 특징
지역적 성장 중심	• 다른 유사한 지역 대비 더 양호한 지리·인구통계·사회경제적 지표를 보이는 지역 • 해당 지역의 성장이 인접 영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지역, 공동체
특별한 개발 조건을 갖춘 지역	•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낮거나 자연·인구통계·안보 또는 기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지역 • 차별화된 개발지원을 위해 별도의 기능적 유형의 지역으로 정의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지역	• 자급자족 가능한 소규모 지역 • 사회·경제적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경제·사회·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발전이 가능한 지역 공동체

<출처 : 해외개발 Preview(2023)>

이외에 참고할만한 사항으로는 2022년 9월 7일자 법률 No. 2389-IX에 따라 추가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및 영토의 복원 계획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공격의 영향을 받은 지역에 대한 재건은 이 법에 따라 개발되고 승인된 지역 재건 및 개발 계획에 따라 수행됨을 선언하고 있으며, 지역 재건 및 개발 계획에는 지역 재건 및 개발 계획뿐만 아니라 지역 개발의 개별 조치 및 프로젝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복구 및 개발 계획 프로젝트는 우크라이나 내각이 결정한 절차에 따라 크림자치공화국, 지역, 키이우 또는 세바스토폴, 관련 부처의 장관 협의회에서 수립하며, 공동체의 복원 및 발전을 위한 계획은 우크라이나 내각이 결정한 절차 에 따라 관련 마을, 정착촌, 시의회에서 수립 및 승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2 도시계획 기본법

도시계획 기본법은 우크라이나 도시 개발의 법적, 경제적, 사회적 및 조직적 원칙을 정의하는 법률로, 자연 환경 보호 및 자연의 합리적 이용, 문화유산 보존을 보장하면서 본격적인 생활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6장 및 2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는 도시계획의 주요 내용 및 목표, 타법률과의 관계 등 도시계획기본법의 개요가 명시되어 있다. 2~4장으로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규제사항, 관련 규범·규칙에 관한 사항과 문서화에 대한 내용, 토지관련 규제사항 및 지적(토지대장)에 관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장에서는 도시계획법 위반에 따른 책임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며, 6장은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국제관계에 대해 다루고 있다.

[표 4-4] 도시계획기본법의 구성체계

구분	제목	주요 내용(조항)
1장	일반 조항	• 도시계획의 주요 내용 및 목표 • 도시계획의 대상 및 계획의 주체 • 도시계획활동의 주요 요구사항 • 관련 법률과의 관계
2장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규제사항	• 담당 기관 및 국가의 규제 내용 • 내각, 크림자치공화국, 지방의회,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등 유관기관의 권한에 대한 명시 •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특별 권한을 가진 기관의 권한
3장	관련 규범·규칙 및 문서화	• 건설 등에 관한 규범·표준·규정 • 도시계획의 문서화·이행 •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토지 개발 시 환경 안전 보장
4장	토지관련 규제사항 및 지적(토지대장)	• 도시계획에 있어 토지의 관계 • 토지의 지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목적으로 제공된 토지의 개발 권리 • 토지대상에 관한 사항
5장	도시계획법 위반에 따른 책임 및 분쟁의 해결	•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국가의 통제 • 관련법 위반에 대한 책임,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6장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국제관계	• 도시계획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및 국제협정에 관한 사항

<출처 : 해외개발 Preview(2023)>

본 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의 주요 방향은 △지역 계획, 건설 및 기타 용도의 토지 사용, △도시계획 문서 및 투자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 선택 및 제공, △건축 활동 수행, △주거 및 비주거 건물, 생산 시설 및 기타 건축물의 배치, △사회, 공학 및 교통 인프라 구축, △지역 사회의 생활 및 자연 환경 보호, △문화유산 보호, △건축 및 도시계획에서 국가적 및 문화적 전통 발전의 9가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집행 기관, 지방 자치 기관, 개인 및 법인이 우크라이나 전체 지역 및 행정 구역, 그 일부 또는 개별 토지 구획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표 4-5] 도시계획관련 주체들과 각 주체별 권한

구분	주요 권한
내각	• 도시계획 활동에 대한 국가 감독 수행 절차 정의 • 도시계획 및 건축 문제를 담당하는 특별 권한을 가진 기관의 활동 조정 • 국가 및 지역 도시계획 프로그램의 개발 보장 • 우크라이나 전역의 종합 도시계획 및 특정지역의 도시계획을 위한 기본계획의 개발 보장 • 도시계획 표준, 규범 및 규칙의 개발 및 승인 절차 결정 •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도시계획 문서 및 종합 검토 절차 수립
크림 자치공화국	• 도시계획의 실행 보장 • 지역 및 지방 건설규칙의 개발 및 시행 보장 • 도시계획 및 건축을 담당하는 특별 권한을 가진 기관의 설립 및 관리 • 크림 자치공화국 예산으로 건설되는 도시계획 프로젝트의 개발, 승인 및 시행 • 도시계획을 위한 토지의 선택 및 제공 • 도시계획 활동에 대한 국가 감독 수행
지방 의회	• 도시계획을 위한 토지의 선택 및 제공 • 지역 도시계획 프로그램의 개발 및 승인 보장 • 도시계획 문서의 승인 및 변경을 위한 준비 • 지역 및 지방 건설 규칙의 개발 및 승인
시의회, 마을의회, 도시의 의회	• 지역 도시계획 프로그램, 해당 지역의 종합 계획 및 기타 도시계획 문서 승인 • 도시계획을 위한 토지 선택, 토지 제공 및 지역 경계 변경 제안 • 지방 건설 규칙 및 도시계획 문서의 승인 및 수정 • 도시계획 및 건축을 담당하는 특별 권한을 가진 기관 설립
지방 행정기관	• 도시계획 정책의 실행 • 지역계획 및 주요 도시계획 프로그램 및 문서의 승인 • 지역 및 지방 건설 규칙의 시행 감독 • 지방 의회로부터 위임된 권한 수행
시, 마을, 도시 의회의 집행기관	• 의회 결의에 따라 도시계획을 위한 토지의 선택, 토지 제공 및 도시계획 문서에 따른 토지 사용의 규제 • 지역 내에서의 토지 및 건축물의 계획적 사용과 개발에 대한 규제 • 도시계획 문서, 종합 계획, 세부 계획 및 건설 제한에 관한 조건 제공 • 건축물이 완공되었을 때 해당 시설의 인수에 관한 절차 수행 •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조직 • 도시계획과 관련된 카다스트(토지 및 부동산 대장)의 구축 및 유지 관리 • 도시계획 관련 법률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위반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 중단

<출처 : 우크라이나 도시계획기본법>

법 제7조와 8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고회의(Verkhovna Rada), 우크라이나 내각, 크림 자치공화국 최고회의 및 내각, 지방 행정 기관, 지방 자치 기관, 도시계획 및 건축을 담당하는 특별 권한을 가진 기관 및 기타 기관에 의해 도시계획이 수립되며, 해당 기관들에 의해 국가·지역 및 지방 도시계획 프로그램, 도시계획 문서, 지역 및 지방 건설 규칙의 승인 및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9조부터 14조까지 공간단위의 위계별 의회와 집행기관 등에서의 도시계획 관련 권한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으며, 제15조에 따라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특별 권한을 가진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21조에 따르면 공익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의 토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수용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26조에 의거하여 도시계획과 관련된 분쟁은 지방의회에서 해결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원을 거쳐 해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제21조 도시계획을 위한 토지 지정 및 사용

도시계획 문서에 따라 도시계획을 위한 토지의 지정 및 선택은 지방 규칙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지정된 토지는 건설이 진행되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의해 토지 법률에 따라 사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 문서에 따라 공공 목적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의 토지를 매입할 우선권을 갖는다.

2.3 도시개발 규제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 규제에 관한 법률은 도시 계획 활동을 위한 법적, 조직적 틀을 확립하고 국가, 공공 및 사적 이익을 고려하여 영토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되었다. 이 법은 총 5개의 장과 4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관련 용어의 정의와 함께 도시개발의 대상 및 주체, 도시계획 문서의 요구사항 의무 준수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2장은 도시개발 분야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개발, 건축 및 건설관리 및 감독 분야 관리의 주체와 내용, 영토의 계획 및 개발에 대한 규범적 규제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3장과 4장은 각각 영토 계획과 영토 개발 규제에 관한 내용으로, 공간 위계에 따른 각종 계획에 대한 내용들과 관련 위원회의 구성, 계획의 모니터링에 대한 내용과 함께 도시개발의 절차에 따라 관련 문서의 작성과 사업의 허가를 득하고 완공 이후 시운전, 그리고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까지를 담고 있다.

[표 4-6] 도시개발 규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체계

구분	제목	주요 내용(조항)
1장	일반조항	• 용어의 정의 • 영토의 계획 및 개발 • 도시개발 분야의 법률 • 도시개발의 대상 및 주체 • 도시계획 문서의 요구사항 의무 준수
2장	도시개발 분야의 관리	• 도시개발, 건축 및 건설관리 및 감독 분야에서 관리를 행사하는 당국 • 도시개발, 건축 및 건설 관리 및 감독 분야의 관리 내용 • 영토의 계획 및 개발 조직 • 영토의 계획 및 개발에 대한 규범적 규제
3장	영토 계획	• 영토 계획에 대한 작업 자금 조달 • 국가 차원의 영토 계획 • 우크라이나 영토의 특정 지역에 대한 계획의 개발 및 승인 • 지역 차원의 영역 계획 • 크림 자치공화국 영토, 지역 및 지구에 대한 계획의 개발 및 승인 • 크림 자치공화국, 주 및 군의 영토에 대한 계획의 구현 • 지역 차원의 영토계획 • 정착지의 일반계획 • 영토의 구역계획 • 영토의 세부계획 • 건축 및 도시계획 위원회 • 지역 차원의 도시 계획 문서 초안에 대한 공개 토론 • 도시계획 지적 • 도시계획 모니터링 • 도시개발 과정에서 토지 관계 규제의 특성
4장	영토 개발 규제	• 도시계획상의 필요에 따라 지정된 지역 개발 체제 • 영토 개발 • 필지 개발용 건설 여권 • 기업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임시 구조물 • 초기 데이터 • 기술적 조건 •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문서 • 건물 및 구조물의 결과(책임)의 종류 • 영토의 복잡한 개발 구현 • 건설 작업을 수행할 권리 • 준비 작업 시작 통지 • 건설 공사 개시 통지 • 건설 공사 수행 허가 • 허가되지 않은 물건의 철거 • 완공된 건설 목적물의 시운전 • 주 건축 및 건설 관리
5장	최종 조항	–

<출처 : 우크라이나 도시개발 규제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 국가, 지역, 지방에 걸쳐 효율적인 토지 사용을 목적으로 기능적 구역을 지정하고 그에 따라 건설하게 될 주택 및 기타 용도의 건물을 포함한 구조물과 각종 인프라를 도시계획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의 주체는 행정 당국과 크림 자치공화국의 의회 및 장관 협의회, 지방자치단체, 개인 및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6-1조에는 영토의 공간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종합계획은 전체 영토를 대상으로 계획되는 공간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으로, 국가, 공공 및 사적 이익의 균형 원칙을 준수하고 영토 공동체의 통합 개발 개념을 고려하여 영토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 및 승인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4항에서는 종합계획에 정착지의 일반계획과 영토의 세부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제5항에 정착지의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경우 영토의 구역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20항에서 전략환경평가의 필수성과 함께 제21항에서 계획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을, 정착촌, 시의회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이하 제17~19조에서는 정착지의 일반계획, 영토의 구역계획, 영토의 세부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계획의 공간적 범위와 해상도 등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세부 내용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제29조는 토지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본 정보들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계획 조건 및 제한 사항, 기술 사양, 디자인 작업 등이 포함된다. 그 중, 도시계획 및 제한 사항에는 해당 필지의 위치 및 소유에 관한 사항과 함께 토지의 용도와 건축물에 대한 높이 규제사항, 개발밀도, 해당 주거단위의 인구밀도, 건축선 등에 대한 내용, 기타 각종 규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을 기반으로 도시계획 및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허가기관은 신청서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31조는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문서에 관한 내용으로, 결과(책임) 등급에 따른 검토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인구의 위생 및 복지, 생태, 노동 보호,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기준 준수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경미한 CC1등급의 경우 해당 건설 프로젝트는 의무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건물과 구조물의 강도, 신뢰성, 내구성 측면에서 공학적, 지질학적, 인공적인 조건이 복잡한 지역에 건

설될 경우와 예산 기금, 주 및 시립 기업, 기관 및 단체의 기금 및 국가 보증에 따라 제공되는 대출을 사용하여 건설 된 경우 예상 비용이 프로젝트 문서의 예상 부분과 관련하여 UAH 300,000을 초과하는 경우,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CC1 등급의 건설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건물 및 구조물의 결과(책임)의 종류는 동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각 등급별 건축면허의 필요에 관한 내용은 제34조에 나타나있다.

[표 4-7] 건물 및 구조물의 결과(책임)의 종류 및 관련 건설면허

등급		주요 기준	건설면허
CC1	결과(책임) 측면에서 경미한 등급	• CC2 및 CC3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건설활동	건설면허 불필요
CC2	결과(책임) 측면에서 중간 등급	• 4층을 초과하는 건물 • 20명 이상의 인원이 영구적으로 상주하거나 또는 100명 이상의 인원이 주기적으로 방문함에 따라 그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미칠 수 있는 건물 • 파괴 시 2,500 이상의 임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건물	해당 등급의 건설면허 필요
CC3	결과(책임) 측면에서 중요 등급	• 문화재 또는 문화재 보호 구역에서 수행되는 신규 건설 • 1, 2등급의 고위험시설 • 100m 이상의 건물 • 400명 이상의 인원이 영구적으로 머물면서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 공공 또는 다기능 건물	

<출처 : 우크라이나 도시개발 규제에 관한 법률 제32조, 34조>

2.4 토지법

우크라이나 토지법은 시민, 법인, 공동체 및 국가가 토지권을 가지며, 이를 통해 토지가 합리적으로 사용 및 보호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총 10개의 섹션과 37개의 장, 2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섹션 1에서는 토지법에 관한 기본 조항부터 관련 주체별 권한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섹션 2는 토지의 구성 및 목적부터 각 용도별 세부 내용을 각각 하나의 장으로 구성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섹션 3~5는 토지관련 권리에 관한 내용으로, 토지 관련 권리의 구분 및 권리 취득 및 집행에 관한 사항, 토지관련 권에의 보장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섹션 6~7은 토지의 보호 및 통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섹션 8에서는 토지법 위반 시 책임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표 4-8] 토지법의 구성체계

구분	제목	주요 내용(장)
섹션 1	일반 부분	• 기본 조항 •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주체별 권한에 관한 사항
섹션 2	우크라이나 땅	• 우크라이나 토지의 구성 및 목적 • 각 용도별 세부 내용이 각각 하나의 장으로 구성
섹션 3	토지에 대한 권리	• 토지 소유권, 사용권, 토지권 등 토지관련 권리에 대한 사항 • 토지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섹션 4	토지권 취득 및 집행	• 시민 및 법인의 토지권 취득에 관한 사항 • 토지 및 토지관련 권리의 판매에 관한 사항 • 토지권의 종료에 관한 사항
섹션 5	토지권 보장	• 토지소유자 및 토지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 토지분쟁의 해결
섹션 6	토지 보호	• 토지 보호의 목적 및 내용·절차에 관한 사항 • 오염된 토지의 이용 및 토지보전에 관한 사항
섹션 7	토지 이용 및 보호 분야의 통제	• 행정구역 단위 경계의 설정과 변경 • 토지이용계획 • 토지관리 • 토지 이용 및 보호에 대한 감독 • 토지 모니터링 • 국유지 지적 •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및 보호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 농업 및 임업 생산 손실에 대한 보상
섹션 8	토지법 위반에 대한 책임	
섹션 9	최종 조항	
섹션 10	경과조항	

<출처 : 우크라이나 토지법>

토지법 제19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토지는 토지의 사용목적에 따라 △농경지, △주거용 및 공공개발용 토지, △자연보호구역 및 기타 자연보호 목적의 토지, △보건 목적의 토지, △휴양지, △역사적, 문화적 목적을 지닌 토지, △임업용 토지, △수자원 토지, △산업, 운송, 전자 통신, 에너지, 국방 및 기타 목적을 위한 토지로 구분된다. 이중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주거용 및 공공개발용 토지와 산업, 운송, 전자 통신, 에너지, 국방 및 기타 목적을 위한 토지의 주요 용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거용 및 공공개발용 토지는 주택 개발, 공공건물

및 구조물, 기타 공공시설에 사용되는 토지를 뜻하며, 산업, 운송, 전자 통신, 에너지, 국방 및 기타 목적을 위한 토지는 산업, 광업, 운송 및 기타 기업의 주요, 보조 및 보조 건물과 구조물, 접근 도로, 인프라 네트워크, 행정 및 가정용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의 위치 및 운영을 위해 제공되는 토지로, 그 중 산업단지 면적은 10ha 이상 1,000ha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섹션 Ⅲ은 토지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해당 섹션에 따르면 토지관련 권리는 소유권과 사용권, 임대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 14장은 토지 소유권에 관한 내용으로, 제78조에서 토지 소유권을 토지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우크라이나 헌법, 토지법 및 유관 기타 법률에 기초하여 취득 및 행사해야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과 제80조에서 개인, 공동, 국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1조와 82조에서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법인 외에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 또한 토지를 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농업용 토지에 한정됨을 명시하고 있다. 15장은 토지의 사용권에 관한 내용으로, 제92조에서 토지의 영구 사용권을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국가 또는 공동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가 또는 공동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므로, 토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운영하는 철도, 가스, 방송 등 공익을 위한 공기업, 교육기관, 방위산업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제93조에서 50년 한도 내에서 토지 사용권을 시민과 법인, 외국인 및 무국적자, 국제 협회 및 단체, 외국 국가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장은 토지 임대권에 대한 내용으로, 토지 임대권이란 임차인이 사업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소유 및 사용하기 위한 권리를 의미하며 시민, 법인, 외국인, 국제협회 및 조직 등에 대해 토지임대가 가능하다. 토지 임대권의 경우에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 토지 전체 또는 일부를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 및 사용하도록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9] 토지 관련 권리의 종류 및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토지 소유권	• 토지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권리 • 우크라이나 헌법, 토지법 및 유관 기타 법률에 기초하여 취득 및 행사 • 개인, 공동, 국가에 대한 토지 소유권 인정
토지 사용권	• 토지의 영구 사용권은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국가 또는 공동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토지 임대권	• 임차인이 사업 및 기타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소유 및 사용하기 위한 권리 • 시민, 법인, 외국인, 국제협회 및 조직 등에 대해 토지임대 가능 •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의 동의 하에 임대토지 전체 또는 일부를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 및 사용하도록 양도 가능

<출처 : 우크라이나 토지법>

22장은 토지권리의 종료에 대한 내용으로, 제140조에서 토지 소유권의 종료와 관련하여 공공의 필요에 의한 토지 구획의 일부 또는 전체의 강제 취득에 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토지 수용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자발적인 사용권 포기 외에 관련 법의 위반 등으로 한하고 있으며, 공공의 필요를 이유로 강제 취득을 위해서는 제146조에 의거하여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2.5 산업단지법

우크라이나의 산업단지법은 경제 발전 및 영토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 활성화 및 신규 일자리 창출, 현대적 산업 및 기반시설을 개발할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원칙을 정의하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총 10장에 38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산업단지 조성 및 기능의 기본원칙에 대해 다루고 있다. 2장은 산업단지 조성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6장은 산업단지 계획부터 조성,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8장은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사항, 9장은 산업단지의 청산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 4-10] 산업단지법의 구성체계

구분	제목	주요 내용(조항)
1장	일반 조항	• 용어 정의 • 산업단지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조성 및 기능의 기본원칙
2장	산업단지 조성권	• 국유 및 공동재산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권리 • 사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권리 • 임대토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권리
3장	산업단지의 선택, 이용 및 장비	• 산업단지 입지 선정 • 산업단지 내 토지계획에 대한 요구 및 사용조건 • 산업단지 내 토지사용의 법적 형식과 절차 •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자금원천
4장	산업단지 조성 절차 및 조건	• 산업단지 조성의 발의자 •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등록부 포함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관리회사의 선정과 관련된 사항
5장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정	•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사항 • 산업단지 관리회사의 지위 취득 및 상실
6장	조성 개시자, 산업단지 관리회사, 승인된 국가기관의 권한의 기본 권리 및 의무	• 산업단지 조성 발의자의 권리와 의무 • 산업단지 관리회사의 권리와 의무 •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권한
7장	산업단지 내 경제 활동	• 산업단지 내 경제활동 조건 • 산업단지 참가자 지위 취득 및 상실 • 산업단지 내 경제활동에 관한 합의 • 산업단지 내 경제활동 참가자의 재산에 대한 법적 제도 • 산업단지 내 경제활동 참가자의 회계 및 보고
8장	산업단지의 국가적 활성화	•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국가 지원 • 산업단지 관리회사에 대한 국가지원 • 산업단지 참가자에 대한 국가 지원
9장	산업단지 청산	• 산업단지 청산 근거 및 절차
10장	최종 및 임시 조항	

<출처 : 우크라이나 산업단지법>

산업단지 조성 주체는 토지의 소유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법 제5~7조에 걸쳐 공공이 토지를 소유한 '국유지 및 공유재산',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 '임대토지'로 구분하여 산업단지 조성 주체를 밝히고 있다. 먼저 국유지 및 시유지에 산업단지 조성 시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민을 대신하여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가 당국, 지방 자치기관이 조성권을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유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마지막으로 임대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 임대 계약이 적절하게 변경되고 임대인이 산업 단지의 개념을 승인하기로 결정한 후,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 토지에 산업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제8~12조에 걸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본 법에 따르면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지는 도시계획 문서에 따라 산업용으로 적합한 산업용 토지여야 하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의 총 면적은 최소 10㏊ 이상 1,0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유지 및 공유재산에 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단지 내 토지의 사용기간은 산업단지 조성 결정이 채택된 날로부터 최소 30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산업단지 내의 토지사용권과 관련해서 국유지 및 공유재산에 조성된 산업단지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대 방식으로 관리 회사에 부여되며, 개인 소유 토지에 조성된 산업단지의 경우, 토지 구획에 대한 권리는 법에 규정된 양식과 방식으로 산업단지 참여자 및 관리 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만일 산업단지의 임대 토지에 조성된 경우 토지의 임차인은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사전 승인 없이 우크라이나의 토지법에 따라 토지 또는 그 일부를 참가자에게 직접 전대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산업단지 설립의 절차 및 조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및 개인 등이 산업단지 조성을 발의한 이후, 5영업일 이내에 산업단지 설립 결정서 사본과 산업단지 개념서를 제출하고 산업단지 등록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우크라이나 내각이 승인한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은 문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21일 이내에 문서를 검토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산업단지 등록부에 등재된다. 이때, 산업단지 등록부에의 등록 여부는 ①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노동자원의 가용성, ②산업단지 개발에 필요한 발의자의 참여 가능성, ③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행정부의 산업단지 지원 가능성, ④투자 유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제품 수출, 중소기업 유치 등 예상 파급효과, ⑤산업단지 입주 의향서 및 계약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여 등록된 산업단지는 미등록 산업단지에 비해 정부예산을 지원받기에 용이하며, 지역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지분참여 면제, 상품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기에 용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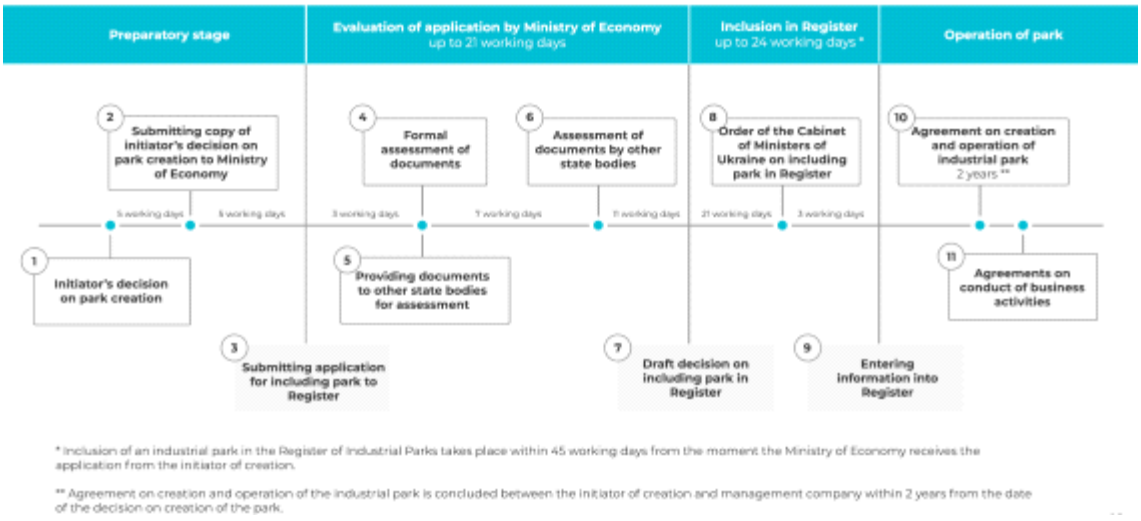

[그림 4-3] 산업단지 조성 절차

<출처 : State Support for Industrial Parks>

8장은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시 제공되는 인센티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34조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는 주 및 지방 예산과 법으로 금지되지 않은 기타 재원을 통해 제공이 가능하며, 국가 예산 초안과 산업 단지 개발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한 각 지방 예산 결정 초안에 의거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때 제공되는 인센티브는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내 경제활동 수행을 위한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보상, △산업단지 조성 및는 관련 기반시설(고속도로, 통신선, 열, 가스, 물, 전기, 유틸리티 등) 건설을 위한 융자, △관련 인프라 연결에 대한 보상(전력망, 철도, 가스, 열 및 수도 연결에 대한 보상 포함) 등이다.

마지막으로 9장에서는 산업단지 청산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산업단지를 청산하는 사유는 조성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와 3년 동안 산업단지 내에서 참가자가 경제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로 제37조에 명시되어 있다. 이때 산업단지 청산은 제38조에 의거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한 사람이 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관리회사 또는 참여자의 경우 사업체로서의 지속적인 영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청산되는 경우, 관리회사 또는 참여자의 소유권으로 분리되지 않은 토지 구획에 대한 권리는 조성 개시자에게 이전된다.

2.6 외국인투자법

우크라이나의 외국인투자법은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제도 특성 규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총 7장에 걸쳐 2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유형 및 대상, 수행형태, 외국인 투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2장은 투자활동에 관한 법제를 기반으로 외국인 투자 보호에 대한 내용, 3장은 외국인 투자 활동에 대한 국가로의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되어 있다. 4~5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설립과 제품의 판매 및 과세, 관련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6장은 특별(자유)경제구역 내에서의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내용, 7장에서는 분쟁 발생시 분쟁심사를 진행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표 4-11] 외국인투자법의 구성체계

구분	제목	주요 내용(조항)
1장	총칙	• 용어의 정의 • 외국인 투자의 유형 및 투자 대상 • 외국인 투자의 수행형태 • 외국인 투자 평가
2장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국가 보장	• 투자활동 법제 • 법령 개정시 보장 • 강제 수용 및 국가기관과 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부터 보호 •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실 보상과 배상 • 투자활동 종료 시 보장 • 외국인 투자 수행의 결과로 얻은 이익, 소득 및 그 밖의 자금 이체 보장
3장	외국인 투자 수행에 관한 국가 등록과 통제	• 외국인 투자의 국가 등록 • 외국인 투자의 국가등록 거부 • 외국인 투자에 관한 통계 보고서
4장	외국인 투자 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의 조직 및 법적 형태 및 설립에 필요한 문서 • 과세 • 제품(용역, 서비스) 판매 조건 • 지적소유권
5장	양여계약, 생산협동조합, 일반 생산과 일반 투자활동의 그 밖의 형태에 관한 계약을 바탕으로 한 외국인 투자	• 양여계약 • 투자활동에 관한 계약서 • 계약서에 따른 경제활동 규제
6장	특별(자유)경제구역 내 외국인 투자	• 특별(자유)경제구역 내 외국인 투자의 규제
7장	분쟁 심사	• 분쟁심사 절차

<출처 : 우크라이나 외국인투자법>

우크라이나 외국인투자법에서 명시된 외국인 투자자란 우크라이나 법령과 상이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우크라이나 영토 내 영구 거주지를 가지지 아니하고 행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개인), 외국 정부, 국제 정부 기구 및

비정부 기구, 우크라이나 법령에 의한 외국인 투자활동 주체로 정의되어 있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은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법정 자본금의 10% 이상이 외국인 투자 지분으로 구성된 모든 조직 및 법적 형태의 기업 또는 기관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법 제2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유형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외국 및 우크라이나 통화, 동산과 부동산, 지적소유권 등 다양한 투자의 유형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기업의 지분 취득, 기업소유권의 인수,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 외국인 투자의 수행 형태 또한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의 대상을 우크라이나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모든 대상에 출자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행정 절차상의 제한사항이 많고, 상위법과 하위법 사이에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것들이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있다.

[표 4-12] 외국인투자의 유형 및 수행 형대

구분	주요 내용
외국인 투자 유형	•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에 의해 태환 통화로 인정 되는 외국 통화 •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른 우크라이나 통화 • 모든 동산과 부동산 및 관련 재산권 • 태환 통화로 된 주식,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회사지분참여권(우크라이나 법령 또는 다른 국가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법정 자본금 지분에 대한 소유권) • 금전적 청구권, 은행의 보증이 있고, 투자자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상관습에 따라 인증되고, 태환 통화로 된 가치를 지닌 계약 의무 이행 청구권 • 그 가치가 투자자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상관습에 따라 태환 통화로 인증되고, 우크라이나 전문 가치 평가로 인증된 모든 지적소유권(우크라이나 영토 내 공인된 저작권, 발명권, 실용신안권, 산업모델권, 상표권, 노하우권 등 포함) • 경제 활동 수행권(투자자 국가의 법률 또는 국제거래관행에 의해 그 가치가 태환 통화로 인증되고,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 받은 광업권 포함) • 기타 우크라이나 법령에 따른 가치
외국인 투자 수행 형태	• 우크라이나 법인, 개인과 합작 설립된 기업에 지분 참여 또는 현재 활동 중인 기업의 지분 취득 • 100% 외국인 투자자 소유의 기업 설립, 외국 법인의 지점이나 그 밖의 지소 설립 또는 현재 활동 중인 기업 소유권의 전부 인수 • 우크라이나 법률로 금지되지 않은 주택, 아파트, 사무실, 설비, 차량, 그 밖의 소유물 등 재산, 재산 일체의 직접 수령 또는 주식, 채권, 그 밖의 유가증권 형태로 동산과 부동산의 직접 취득 • 독자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 내 토지와 천연자원 이용권을 취득하거나 그러한 이용권을 가진 우크라이나 법인이나 개인 사업체에 참여하여 해당 권리 취득 • 그 밖의 재산권 취득 • 생산분배협정에 따른 경제(영리)활동 • 법인격 없이 우크라이나 경제 활동 주체와의 계약을 근거로 하는 활동 등 우크라이나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아니한 그 밖의 방법

<출처 : 우크라이나 외국인투자법>

법 제2장에서는 제7~12조에 걸쳐 외국인 투자 보호에 대한 국가 보장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 투자자 대우 및 특혜로, 우크라이나 영토 내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와 그 밖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적용하며, 경제 우선 개발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실현되는 외국인 투자 유치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별 영리 활동 주체에게는 투자와 그 밖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특혜가 적용 가능하다고 나타나 있다. 이외에 국방, 국가 안보, 사회 질서 유지, 환경 보호 관련 법령 개정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 보호 보장이 변경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에 따라 그러한 법령의 시행일부터 10년 간 외국인 투자 보호에 관한 국가 보장을 적용하는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보호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자연 재해, 사고, 전염병 발생 시 구조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의 국유화 금지, 외국인 투자자에게 손실 보상과 배상, 투자 활동 종료 시 보장, 외국인 투자 수행의 결과로 얻은 이익, 소득 및 그 밖의 자금의 이체 보장 등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보장은 제 13조에 따라 우크라이나 내각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실제 출자 후 3 영업일 이내에 크림자치공화국정부, 주 및 키이우와 세바스토폴 도시 국가 행정처에 외국인 투자를 등록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제26조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 우크라이나가 조인한 국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 간 외국인 투자 국가 규제, 외국인 투자 기업의 활동 관련 분쟁은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심사하며, 모든 기타 분쟁은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심사하거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해외 소재 중재원 등 중재원에서 심사 가능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 제도를 통해 경제의 우선순위 부문에 대한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경제의 우선순위 부문이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산업단지, IT, 농업 및 농산물 가공, 친환경 운송 및 관련 부품 생산, 친환경 에너지, 창조산업, 항공기 제조, R&D 혁신산업, 인프라, 산업기계 생산을 의미한다. 그 중, 산업단지에 대한 인센티브는 금지산업을 제외한 가공산업, 산업 및 가정 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처리 제외), 연구개발, IT 및 통신관련 산업이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경제활동 외에도 산업단지 조성 시에도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관련 기반시설관련 융자 및 각종 세금 면제 또는 인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표 4-13]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특별 제도 중 산업단지 관련 인센티브

구분	주요 내용	
허용산업	• 가공산업 • 산업 및 가정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 처리 제외)	• 연구개발 • IT 및 통신
금지산업	• 소비제품 생산(자동차 및 택시, 트레일러, 오토바이, 10인 이상 운송용 차량, 물품 운송용 차량 제외) • 복권 발행 및 조직 • 도박 시장에서의 활동 • 해외 취업 중재	• 우크라이나 관할권 밖의 수생 생물 자원의 어획물 •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체의 생산 및 판매 • 가정용 쓰레기 처리
인센티브	• 산업단지 조성 및 산업단지 내 경제활동 수행을 위한 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보상 • 산업단지 조성 및는 관련 기반시설(고속도로, 통신선, 열, 가스, 물, 전기, 유틸리티 등) 건설을 위한 융자 • 관련 인프라 연결에 대한 보상(전력망, 철도, 가스, 열 및 수도 연결에 대한 보상 포함) • 산업단지 내 사업활동으로 인한 법인소득세 10년간 면제(투자자가 해당 금액을 투자 프로젝트 개발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 • 산업단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규 장비(구성요소) 수입시 관세 및 수입과정에서의 VAT 면제 • 토지세 인하	

<출처 : 해외개발 Preview(2023)>

2.7 민관협력(PPP, Public-Prvate Partnership)에 관한 법

우크라이나의 민관협력에 관한 법(이하 PPP법)은 공공 파트너와 민간 파트너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조직적, 법적 원칙과 계약 기반의 민관 파트너십의 기본 원칙을 정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총 6장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은 민관협력에 대한 정의와 특징, 법적 원칙, 적용분야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2장은 민관협력의 이행 형태 및 목적에 관한 내용으로 민관협력 실시를 위한 토지이용 및 자금의 원천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장은 민관협력 이행을 결정하기 위한 조건으로 민관협력사업의 효율성 분석 이후 결정 채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장은 민간 파트너에 대한 내용으로 민간파트너의 정의와 경쟁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5장은 민

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의 지원과 분쟁의 해결, 민간파트너의 권리보장, 관련 기관의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표 4-14] PPP법의 구성체계

구분	제목	주요 내용(조항)
1장	일반 조항	• 민관협력의 정의 및 특징 • 민관협력의 법적 원칙 • 민관협력 이행의 기본원칙 • 민관협력 적용 분야
2장	민관협력의 이행 형태 및 목적	• 민관협력 이행 형태 • 민관협력의 대상 • 민관협력 실시를 위한 토지 이용 • 민관협력 자금원천
3장	민관협력 이행에 관한 결정	• 민관협력 이행 제안 • 민관협력 이행의 효율성 분석 • 민관협력 이행 결정 채택
4장	민간 파트너의 정의	• 민간파트너의 정의 • 민간 파트너 확인을 위한 경쟁 실시 원칙 • 민간파트너 선정 경쟁 결과 정보 공개 • 공모전 우승자와 민관 협력 체제 내에서 계약 체결
5장	국가지원, 국가보장 및 국가 통제	• 민관협력 이행을 위한 국가 지원 • 분쟁 해결 • 민간 파트너의 권리 보장 • 민관협력 체계 내에서 체결된 계약 이행에 대한 통제, 모니터링 및 최종 평가 수행 • 민관협력 분야에서 국가 정책의 형성과 이행을 보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6장	최종 및 임시조항	•

<출처 : 우크라이나 민관협력에 관한 법>

본 법에 따르면, 민관협력은 민관 협력 대상의 건설(신축, 재건축, 복원, 점검 및 기술 재장비) 및 관리(사용, 운영, 유지 관리)를 위해 민간파트너가 일부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를 하는 사업의 형태로, 5년 이상 50년 이하의 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3조에 따르면, 민간협력의 기본 원칙으로 평등, 차별금지, 상호 이익, 효율성 보장, 재산 보호, 계약 준수, 위험 부담, 경쟁 기반의 민간파트너 선정을 들고 있다.

[표 4-15] 민관협력사업 이행의 기본 원칙

구분	주요 내용
평등	공공 및 민간파트너는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
차별 금지	공공 또는 민간파트너의 권리에 대한 차별 금지
상호 이익	양측 모두의 이익을 위한 협력 모색
효율성 보장	공공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것 보다 더 높은 효율 목표
재산 보호	민간파트너에게 이전된 공공 도는 지방 재산의 소유권은 기존대로 유지
계약 준수	모든 계약은 우크라이나 법률 및 PPP 조건에 따라 준수
위험 부담	PPP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위험은 공정하게 분담
경쟁 기반의 민간파트너 선정	민간파트너는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출처 : 우크라이나 민관협력에 관한 법>

민관협력사업의 적용 분야는 제4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각종 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사회서비스 제공, 우크라이나 국내 실향민을 위한 모듈식 주택의 설치 및 임시 주택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른 활동 영역에 민관협력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영역의 확장성을 갖추고 있다.

제8조에서는 민관협력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토지의 권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민관협력을 시행하기 위해 민간파트너가 토지 또는 토지 개발권을 획득해야 하는 경우, 국가는 해당 토지를 민간 파트너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비용은 민관협력사업 제안자가 부담을 하되, 제안자가 공개입찰에서 떨어질 경우, 입찰에 성공한 민간파트너가 제안자에게 해당 비용을 상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독입찰의 경우, 집행기관은 제안자와의 협상을 통해 계약의 기본 조건을 설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입찰이 완료된 경우, 공공파트너는 1개월 이내에 입찰 결과를 승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단, 민간파트너는 우크라이나 내에 법인설립이 필요하며, 사업에 선정될 경우 금융자금조달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5장의 국가지원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PPP 방식에 따라 내각 또는 권한이 있는 집행기관, 지방 당국 등이 지원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공공지원이 가능한 형태는 △공공 및 지방정부의 보증 제공,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에 따른 자금 지원, △계약서 기반의 운영비용 지급, △민간파트너가 생산한 상품,

작업, 서비스의 구매, △민간파트너에게 필요한 상품, 작업, 서비스 공급, △관련 인프라(철도, 고속도로, 통신, 열, 가스, 전기 등)의 건설 지원 등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파트너의 권리 보장을 위해 법적으로 권리를 인정·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한 공공은 민간파트너의 활동에 간섭하지 못한다. 또한, 민간파트너의 활동에 따른 결과물이 가격 규제 대상일 경우, 공공은 민간파트너의 투자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요소를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3. 우크라이나 국가재건계획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7월 개최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 URC)에서 전후 재건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국가재건계획(National Recovery Plan)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에서는 「강한 유럽 국가, 우크라이나 : 매력적인 외국인 투자처」를 비전으로 회복력(Resilience), 복구(Recovery), 현대화 및 성장(Modernization & Growth)을 3대 키워드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의 전후 재건을전시경제(2022), 전후 복구(2023~2025), 새로운 경제(2026~2032)의 3단계로 설정하고 총 복구비용을 최소 7,500억 달러로 추산하였다. 그 중,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물류망 개선, 에너지 자립 및 그린딜 사업 추진에 가장 많은 재원을 투입할 전망으로 밝히고 있다. 이외에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22년 9월 새로운 투자 이니셔티브이자 온라인 플랫폼인 '어드밴티지 우크라이나(Advantage Ukraine)' 신설하여 전력산업, 물류·인프라, 농식품업, 혁신기술, 첨단 금속가공, 제약산업, 제조업 등의 분야를 민간투자유치 유망 분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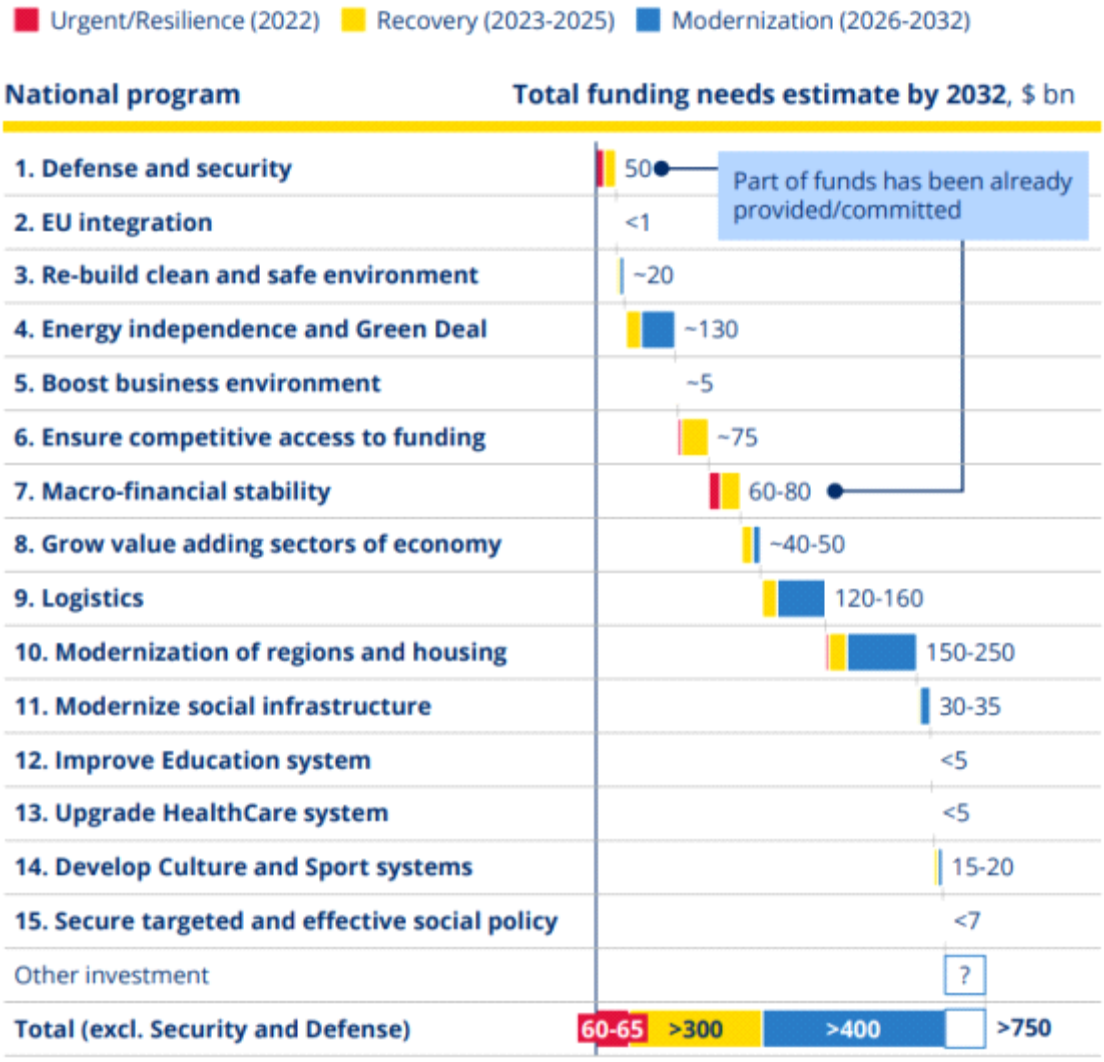

[그림 4-4] 우크라이나의 재건 프로그램과 예상 복구비용

<출처 : National Recovery Council(2022)>

그 중,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Modernization of regions and housing)' 프로그램은 가장 많은 1,500억~2,500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으로, 대규모 에너지 효율, 더 나은 건축물과 새로운 도시계획, 기타 인프라 현대화 등 하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난방 현대화 및 최적화(지역난방 및 개별난방), 열 분배 네트워크 현대화 및 최적화로 구성된 '대규모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과 도시계획 모범사례에 따른 신규 주택, 재고 주택 수리, 제로에 근접한 에너지 건축물 및 중앙집중식 냉각시스템 시범사업이 포함된 '더 나은 건축물과 새로운 도시계획' 프로그램, 마

지막으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 현대화, 도시교통의 현대화 및 전기화 등으로 구성된 '기타 인프라 현대화' 프로그램이 있다.

[그림 4-5]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프로그램

<출처 : National Recovery Council(2022)>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프로젝트는 크게, '지역 현대화 : 주택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출시'와 '신규 주택 건설 및 인프라 업그레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지역 현대화 : 주택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출시' 프로젝트에는 약 700억~1,500억 달러가, '신규 주택 건설 및 인프라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는 약 800억~1,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었다.

[표 4-16]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프로그램의 주요 우선순위 프로젝트

프로젝트	주요 내용	비용 (10억 달러)
지역 현대화 : 주택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출시	에너지 효율화 및 공급망 확보	
	- 대규모 주거용 에너지 효율 프로그램	~59
	-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 개발	<0.1
	- 15만~20만 명의 직원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출시	
	- 단열재 생산 국산화 (~1,300만 ㎡/년)	~0.6
	- 유리 생산 국산화(300kt/년)	~0.4
	- 창호 생산 국산화(500만~600만개/년)	~0.1

[표 4-16]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프로그램의 주요 우선순위 프로젝트(표 계속)

프로젝트	주요 내용	비용 (10억 달러)
지역 현대화 : 주택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출시	지역난방 및 개별난방 현대화	
	- 지역난방 현대화(히트펌프, 바이오매스 설치 포함)	~11
	- 개별난방에 있어 가스보일러를 대체하기 위한 히트펌프의 대규모 설치	~18
	임시 주택 및 손상된 주택의 재건축	
	- 임시 주택(비주거용 건물 개조, 사회주택), 융자(모기지, 보상)	~10
	- 도시계획 모범사례에 따른 신규 주택 인프라 구축(예를 들어, 부차(Bucha), 이르핀(Irpen), 체르니히우(Chernihiv)에서의 시범사업)	~31
신규 주택 건설 및 인프라 업그레이드	인프라 및 주택 현대화	
	-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현대화	최대 42
	- 기존 건축물 재고 수리	~45
	- 제로에 근접한 에너지 건축물을 위한 시범사업	~1.4
	- 지역냉각 시스템 시범사업	~1.5
	- 버스/트롤리버스, 교외철도의 현지생산에 기반한 도시교통의 현대화 및 전기화(예: 키이우)	~1.5
	기타 우선순위	
	- 경제 다각화 및 독점 석탄 채굴 인프라 개선	~1.7
	- 기타 개발 프로그램 및 지원 프로젝트	~6

<출처 : National Recovery Council(2022)>

4. 소결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 토지, 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민관협력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된 법률들의 경우, 40여개의 너무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며, 각 법률들 간에 상충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전쟁 발발 이전에 우크라이나의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관련 법률들을 정비하고 있었으며, 전쟁 발발 이후에는 재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 및 개발관련 법률들 외에 외국인투자법, 민관협력에 관한법률 등에 대한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

다. 특히, 전쟁 발발에 따른 계엄 선포로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어 향후 재건사업 진출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함에 따라 영토 내의 각 지역들에 대한 최신 계획이 부재하거나 아예 계획 수립이 되지 않은 지역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는 전쟁 외에도 관련 법률들에 존재하는 허점들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또는 ODA 등을 통해서 관련 법률들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유한다면 향후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의 도시계획기본법의 경우 공간 위계별 계획 수립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나, 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화 또는 정례화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계획이 갱신되지 않거나 부재한 지역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감독하는 기구가 없는 상황으로, 계획 수립 및 갱신 등에 대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법률 개정안 마련과 함께, 계획이 부재한 지역의 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한다면, 우호적인 관계 형성 외에도, 각종 도시개발 사업 진출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국내 유관 기관 및 민간기업들과의 조율을 통해 보다 선제적으로 진출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토지법의 경우,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나, 우크라이나에 넓게 분포하는 농지에 대한 소유는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일부 토지를 상실할 가능성과 함께, 전쟁에 따른 피해지역 외에 다른 발전의 중심지를 조성해야할 가능성 또한 농후하므로, 농주일지라도 토양, 토질, 농업생산성 등의 특정 조건을 만족할 시 외국인에게도 농지를 소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토지 수용에 대한 내용도 토지법에 포함되어 있으나, 수용이 가능한 조건과 과정, 수용시 보상에 대한 내용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투자를 위한 외국인투자법과 PPP법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에 대해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라는 한계와 함께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시 보다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국민과의 동등한 대

우 외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PPP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허가 전담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 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관마련에 대한 내용이 해당 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으며, 관련 행정절차 또한 보다 명확히 제시하여 사업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 등의 PPP사업 추진시 정부보증에 대한 내용이 해당 법률에 포함되어 있으나, 어떠한 방법으로 정부보증을 할지에 대한 내용은 누락되어 있다. 이에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고정대금 지급(Availability Payment, AP), 건설보조금(Viability Gap Funding, VGF) 등 PPP사업 추진시 받을 수 있는 정부보증 방안을 명확히 하여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2022년 수립한 국가재건계획에 의거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해당 계획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의 국가재건계획에서는 당시 추산한 총 복구비용을 7,500억 달러 중 약 1,500억~2,500억을 주택·지역 인프라 복구 및 현대화, 물류망 개선, 에너지 자립 및 그린딜 사업 추진에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해당 부문은 LH의 주요 업역인 도시 및 주택개발과 함께, LH를 주축으로 관련 공기업 및 민간기업들과 One Team Korea를 구성하여 다양한 인프라 건설과 연계한 진출방안에 부합한다. 이에, 기존 해외사업 진출 경험을 기반으로 국내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사전에 마련하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5장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방안

1.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

1.1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해 앞선 현황분석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동향, 과거 전후 재건사업 사례분석 결과, 우크라이나 법제도 등을 종합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분석을 위해 SWOT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한국의 LH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에 갖는 가장 큰 강점으로는 도시 및 주택 분야에 있어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시 및 주택을 개발하는 공기업으로서 갖는 지위에 따른 것으로, 이와 연계하여 국내 타 정부기관 및 공기업, 기타 민간기업들과의 연계성 또한 뛰어나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와 주택개발에 있어 수반되는 다양한 인프라의 연계 개발과 ODA와 EDCF 등을 활용한 사업과의 연계가 수월하며, 공기업으로서 갖는 높은 신용도를 활용하여 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도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이에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업으로 LH가 우크라이나에 진출하는 것을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공적부문으로부터의 다양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LH는 과거부터 꾸준히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외 수주형 용역사업 경험은 많은 편인 반면 실제 실행된 사업이 매우 적은 편으로, 해외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적다는 약점이 있다. 또한, LH 내부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①사전준비 → ②국내 인허가 → ③국외 인허가 → ④개발 및 운영의 4단계dp 걸쳐 진행이 된다. 지금까지 LH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한 경험에 따르면 사전준비 단계에만 3년~5년이 소요되며, 국내 인허가 과정이

1~1.5년, 국외 인허가 1년이 소요됨에 따라 착공 전까지 5년~7.5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우크라이나가 자체로 수립한 재건계획과 빠른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계엄령 하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전준비단계와 국외 인허가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크라이나의 긴박한 상황과 다수의 국가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 의지가 있는 상황을 고려시 행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2022년 공공기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금액이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1,000억에서 2,0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완화[23]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일 경우 이를 보다 완화 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2021년 추진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정부간 협력(G2G)사업을 제외한 미간협력사업의 경우 신규 투자사업을 못하도록 해외사업 기능이 조정되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정부의 진출 의지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재건수요에 따라 G2G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편으로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으나, G2G사업이라도 신규 컨설팅은 제한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PPP법률에서 민간파트너가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현재 신규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의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당시 혁신안에 따라 운영인력이 감축되었으므로, 현 정부의 해외사업 활성화 기조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참여를 고려시 해외사업 운영을 위한 조직의 개편 등 또한 요구된다.

다음으로 외부환경에 의한 기회요소로는 우크라이나의 면적은 60.3만㎢이며 인구는 4,160만명(2021년 기준)에 달하는 등 넓은 국토와 많은 인구로 인해 사업의 추진 시 필요 수요를 확보하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전쟁에 따른 피해로 인해 재건관련 다수의 사업 추진이 필요한 만큼 사업참여의 가능성 또한 높은 편으로 예측된다. 이는 외국인투자를 기반으로 한 재건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높은 관심과 맞물려 다양한 사업이 발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리적으로 EU 내의 최대 수출 시장인 V4국가들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와 인접하고 있어, 산업단지 등의 사업 추진 시 서유럽으로의

2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3(2022.12.20. 개정)

진출이 용이하며, 재건과 관련된 다양한 물자 확보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우크라이나에서는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제도의 제·개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엄령 하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를 시행 중으로 사업추진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리적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EU 미 가입국으로 EU에 속하는 국가들과의 통관·관세에 관한 혜택을 누리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여전히 진행 중인 전쟁으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정치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안이 존재하며, 전쟁으로 인한 산업활동의 피해와 복구작업 등에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면서 타 국가 및 국제기구로부터의 원조나 차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등 재정상황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또한,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노동 인력이 전쟁에 투입되는 등 재건사업에 필요한 노동력 수급에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최대 공여국인 미국과 EU가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진출 의지를 보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진출 경쟁에 있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 또한 높다.

이러한 내부의 강점과 약점, 외부환경의 기회요소와 위협요소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먼저 SO전략으로 LH가 강점을 갖는 분야이면서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 필요로 하는 부문인 도시계획 및 개발, 산업단지 개발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진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재건사업의 규모가 방대하고 재건이 필요한 분야 또한 다양하므로, 도시계획 및 개발, 산업단지 개발과 연계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One Team Korea를 구성하여 유관 공공–민간분야가 함께 진출하여 종합적인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존 종전 후 재건사업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재건사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계엄령이 해제된 이후의 진출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관련 법·제도를 살펴보고, 원활한 진출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우크라이나 정부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WO전략으로는 부족한 해외사업 경험을 보완하기 위하여 SO전략에서 제시한 One Team Korea 구성시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업을 포함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거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타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이의 일환으로 ODA 및 EDCF 등과 연계하여 사업을 분할하여 한 기관에서 투입되는 투자비용을 줄이는 등의 분할사업 또는 복합사업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간소화 및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하여 LH 내부 규정을 보완하고,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담당 인력을 증원하는 등의 내부 개선방안 또한 요구된다.

ST전략으로는 우크라이나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낼 수 있는 PPP사업의 형태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유·무상 원조사업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해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유·무상 원조사업과 협정 체결은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들과의 진출 경쟁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전후 재건사업이 본격화될 때 우크라이나로의 관련 물품 및 자원들을 원활이 공급할 수 있도록 폴란드 등의 인접국가에 먼저 진출하여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EU 회원국들이 받을 수 있는 통관 및 관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인접 국가들간 경제적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접경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조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선 진출한 인접국에서의 보다 원활한 자원 조달이 가능하며,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사업성 또한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 WT전략은 내·외부의 약점과 위협요인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해외사업 추진시 리스크 요소를 도출하고 평가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외부적으로는 MIGA 등의 공신력있는 기관의 보험가입 등을 통해서 리스크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 법률에서 제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보증을 최대한 이끌어내는 방안 또한 연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ODA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마련 또한 필요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법에서 외국인 투자시 현지인들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 방안이 필요하며, 이는 우크라이나 내의 주요 전선과 이격되어 있는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폴란드 등 인근 국가에 정착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한 사업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국가 • 정부의 강력한 진출 의지	국가 • 서방국가 대비 저조한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
		LH • 도시·주택 분야의 풍부한 사업 수행 경험 • 국내 유관 기관과의 연계성	LH • 해외사업 경험 미흡 • 공기업 예타 실시에 따른 지연 • 해외사업 추진 분야의 축소 • 해외 투자과정의 복잡성
기회(Opportunity)	• 많은 인구로 인한 사업의 수요확보 용이 • 체코, 폴란드 등 V4국가와의 인접성 • 전쟁으로 인한 풍부한 재건 수요 • 재건을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 • 관련 법률의 제개정 및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 도시계획 및 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 LH가 강점을 갖는 사업 중심으로 재건사업 진출 • One Team Korea 구성을 통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 •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제시 SO	• One Team Korea 구성 시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업 포함 • ODA·ECDF 등과 연계한 사업구도 • 해외진출관련 기능 강화 및 진출 요건 완화 • 내부 규정 개정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절차 마련 WO
위협(Threat)	• 전쟁으로 인한 대내외 정치, 안보 불안 • 열악한 재정 상황 • 노동 인력 수급의 불확실성 • 서방을 중심으로 한 다수 국가의 진출에 따른 경쟁 • EU 미가입으로 인한 통관·관세 혜택 부재	ST • PPP사업 추진을 통한 장기간에 걸친 수익 확보 • 우크라이나와의 협정 및 ODA 등의 지원사업을 통한 진출 기반 마련 • 인접 국가로의 선 진출을 통한 사업기반 구축 • 인접 EU국가들과의 접경에 자유무역지대 조성	WT • MIGA 등을 통한 리스크 헷지 방안 마련 • LH 내부 리스크 평가 및 대응 방안 고도화 •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른 최대한의 정부보증 계약 • ODA 등을 통한 인력양성 사업과 연계

[그림 5-1]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1.2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목표 및 추진전략 도출

앞선 SWOT 분석과 전략 도출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먼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서 중추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및 전략 수립」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 현 시점부터 종전 직후까지 계엄령이 유지되는 상황과, 종전 이후 정세가 안정되면서 우크라이나의 기존 또는 신규 법·제도에 따라 재건사업을 추진하게 될 상황을 고려하여 ①원활한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선제적 사업 추진, ②다양한 사업방식을 활용한 재원조달, ③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LH 내·외부 기반 조성의 3가지 전략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 전략인 “원활한 진출기반 마련을 위한 선제적 사업 추진”은 미국과 EU 등과의 경쟁에서 우선순위를 점하고, 향후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과 법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전략인 “다양한 사업방식을 활용한 재원조달”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현 재정상황과 공기업으로서 해외사업 추진시 받는 제약 등을 고려하여, PPP사업이나 분할 또는 복합방식의 사업구도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방식을 다원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마지막 전략인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LH 내·외부 기반 조성”은 LH 내부 또는 한국 정부 및 기타 기관들과의 협상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내·외부의 제도 개선, 외부 기관을 활용한 리스크 헷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들로는, ①One Team Korea 구성 및 운영, ②도시협력전략(Urban Partnership Strategy, UPS) 수립 및 기타 재건사업 발굴, ③PPP사업 및 복합사업구도 등 사업방식 다양화, ④우크라이나 관련 법·제도 개선(안) 작성 및 제시, ⑤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와 연계한 진출, ⑥진출기반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 추진, ⑦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LH 내·외부 제도 개선의 7가지를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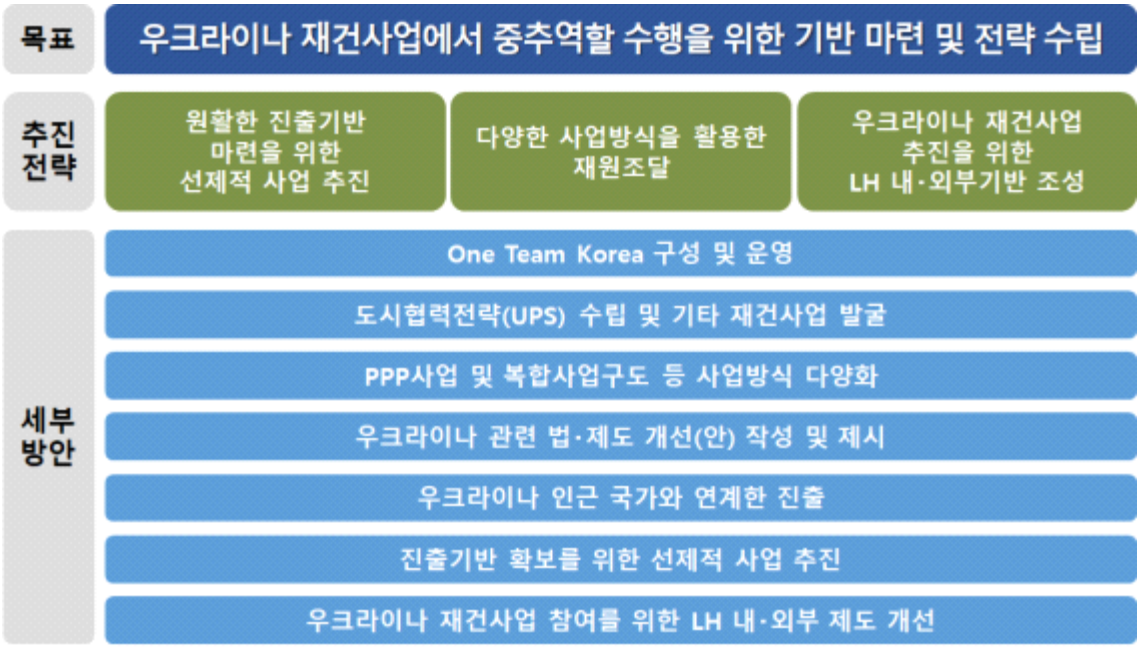

[그림 5-2]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 목표 및 추진전략

2.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세부 방안(안)

① One Team Korea 구성 및 운영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주택 또는 산업단지 등 LH의 주력 분야 외에도 도로, 철도 등의 교통 부문과 전기, IT, 상하수도 등의 자원 관련 부문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이 동반되어야 한다. 또한,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업이 참여함으로써, LH의 부족한 해외사업 경험을 보완할 수 있다. 이에 민관 동반진출 플랫폼인 민관 협의체 「One Team Korea」를 구성·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금융 및 재원관련 공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재원 마련이 용이하며, LH가 추진 가능한 제한된 컨설팅 등에 관련된 공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재건사업 전반에 걸친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듯 다양한 부문이 종합된 하나의 팀을 구성하여 해외사업에 진출할 시 다양한 사업분야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연계사업 추진 등을 통해서 개별 사업의 사업성 제고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G2G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 보증을 획득하거나, 국내의 여타 지원사업 및 관련 펀드를 활용한 복합적인 사업 추진으로 개발사업과의 시너지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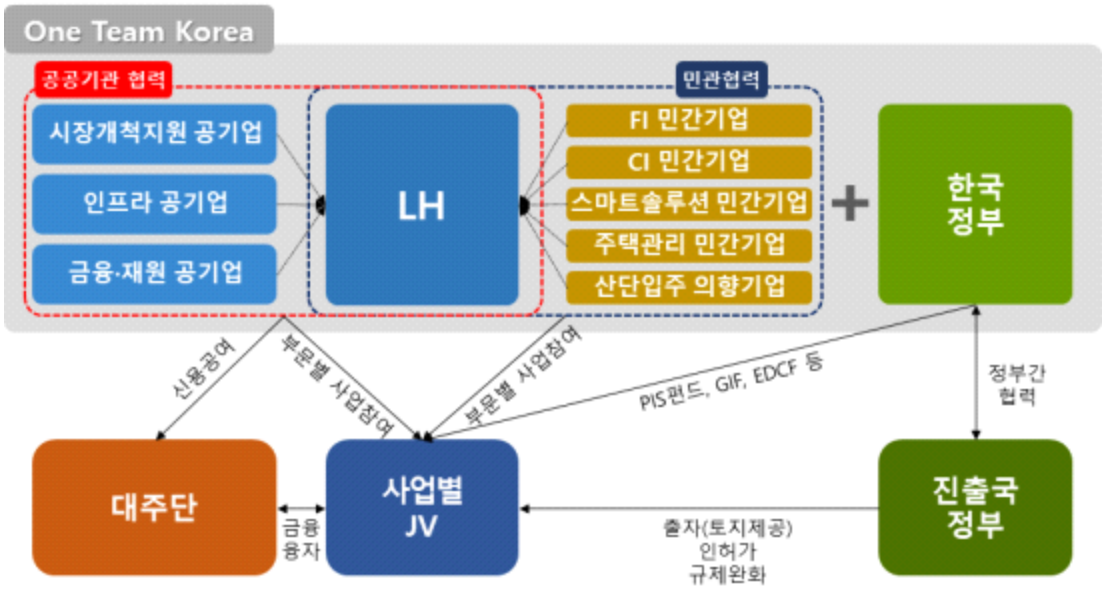

[그림 5-3] 해외개발사업 민관 동반진출 플랫폼

② 도시협력전략(UPS) 수립 및 기타 재건사업 발굴

현재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도출한 6대 선도프로젝트에는 인프라 구축 사업 외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과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둔화되던 도시화율의 추세와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시 도시의 복구와 현대화 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수요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 및 지방의 중심도시들을 대상으로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파악·해결하기 위한 도시협력전략 등 도시종합분석 및 도시공간구조 분석 외 해당 도시 발전사업 발굴 및 사업전략 등 종합계획 성격의 발전안을 수립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관련 기관에 제시하거나 유관 공무원 등의 연수에 활용할 경우,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수주 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 진행 중으로, 월드뱅크와 EU, UN 등이 함께 조사하여 제공하는 우크라이나의 피해 규모와 재건수요 등에 대한 최신자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LH가 추진할 수 있는 재건사업을 발굴한 후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우크라이나 진출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림 5-4] 키이우 마스터플랜 2040

<출처 : ГЕНЕРАЛЬНИЙ ПЛАН МІСТА КИЄВА>

③ PPP사업 및 복합사업구도 등 사업방식 다양화

우크라이나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정부의 재정 운용에 있어 해외 원조 및 차관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종전 이후에도 재건사업 등에 소요될 비용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재정 운용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재건사업의 경우 도급방식이 아닌 민간 자본을 활용한 장기운영을 통해 수익 실현이 가능한 PPP사업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One Team Korea를 중심으로 PPP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구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도시 및 주거단지 또는 산업단지 등의 PPP사업과 연계된 인프라 구축을 한국정부의 EDCF 등을 활용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복합사업방식」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PPP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연계 인프라를 One Team Korea에 속하는 다른 국내 민간기업 등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 민관이 공동으로 진출하는 사업모델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PPP법에서 사업 대상인 각종 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사회서비스 제공, 우크라이나 국내 실향민을 위한 모듈식 주택의 설치 및 임시 주택 건설 등 이외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거나, 사업의 규모가 너무 커 재정부담이 되거나 사업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하나의 대형사업을 분할하는 「사업분할방식」을 적용하여 추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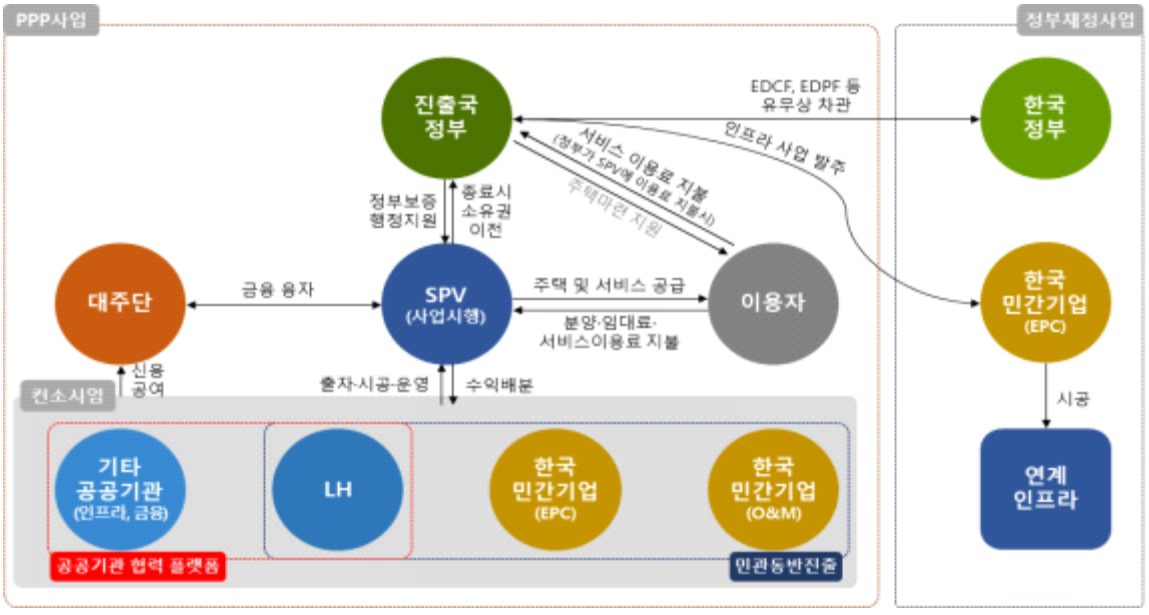

[그림 5-5] 복합사업 방식의 PPP사업 추진 구도

<출처 : 이상헌 외(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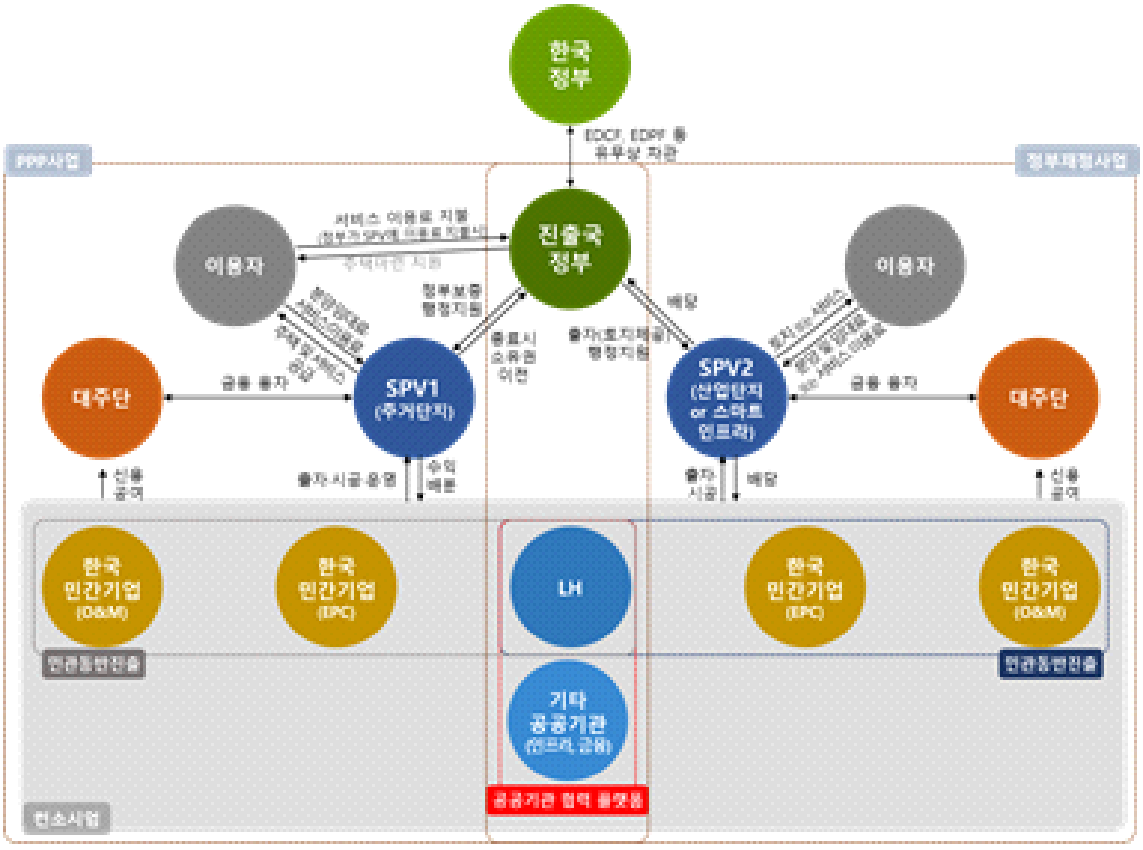

[그림 5-6] 사업분할 방식의 PPP사업 추진 구도

<출처 : 이상헌 외(2023)>

④ 우크라이나 관련 법·제도 개선(안) 작성 및 제시

우크라이나는 최근 도시계획 및 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법들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함으로써, 기존의 복잡하고 얽혀있는 법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수월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나 추가해야할 조항 등 기존 법·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ODA 사업 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와 상호관계, 법률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한 후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개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원활히 풀어갈 수 있으며, 워크라이나 정부와의 친밀한 네트워크 형성 또한 가능하다.

앞서 고찰한 법률 중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5-1] 우크라이나 법률 보완사항

구분	보완사항
도시계획기본법	• 공간 위계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적은 편으로, 계획수립을 의무화·정례화하여 국가에 제출·보고하는 조항 추가가 필요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감독하는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각 지방의 계획이 일관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관련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필수 요건은 아니며, 공간 위계별로 서로 기능이 상충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기구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함
토지법	• 외국인의 경우 농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금지되어 있음. 향후 재건사업 추진은 기존 도시지역의 개발 및 보수가 중점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 도시 내에서 기능을 재분배하거나 전쟁지역과 이격된 곳에 신규 도시를 건설할 경우, 외국인 토지소유권에 대한 제한은 외국인 투자를 저해할 수 있음 따라서 토양, 토질, 농업생산성 등의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농지 또한 외국인 소유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함 • 수용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수용 과정과 보상에 대한 내용이 미흡한 상황으로, 수용이 가능한 조건과 수용의 과정, 수용시 보상 규모의 산정과 보상방안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함
외국인투자법	• 기본적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타국에 투자시 내국인보다 다양한 리스크에 처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음
PPP법	• PPP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에 불분명한 상황으로, 인허가 관련 전담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과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정부보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명확히 어떠한 보증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음. 따라서 최소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고정대금 지급(Availability Payment, AP), 건설보조금(Viability Gap Funding, VGF) 등 PPP사업 추진시 받을 수 있는 정부보증 방안을 명확히 하여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음

⑤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와 연계한 진출

우크라이나는 동유럽에 속하는 국가로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서쪽으로는 중부유럽에 속하는 국가인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저렴한 생산비용을 바탕으로 EU 전역 제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해당 국가들은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고속도로 및 철도를 이용한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기 이전에 먼저 해당 국가들에 진출하여 물류 및 건설관련 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한다면,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로의 물자 전송에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현재 EU 회원국이 아니므로, EU회원국인 폴란드 및 헝가리 등과의 교역에 있어 통관 및 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으로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들의 접경지역을 활용하여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할 수 있다. 자유무역지대는 양 국가간의 경제협약을 통해 해당 지역을 통할 때 통관 및 관세 등에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몽골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지대인 '에렌호트-자민우드 자유무역지대' 사례가 있다. 최근 EU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의 기조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들 간의 협약이 성사될 경우, 우크라이나를 기준으로 전선에서 떨어진 서쪽의 접경지역을 활용하여 자유무역지대 조성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와 EU 회원국들 간의 보다 자유로운 경제교류를 기대할 수 있으며, 전후 필요물자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에렌호트-자민우드 자유무역지대

- 중국과 몽골의 국경에 위치한 중요한 경제 협력 구역으로, 양국 간의 무역과 물류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
-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의 핵심 지역으로, 이 지역은 중국의 '북방개방(Open to the North)' 전략의 일환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이니셔티브와도 밀접하게 연관
- 자유무역지대는 총 18km²(중국 9.03km², 몽골 약 9km²)
- 2010년부터 중국 정부는 이 지역에 막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2016년에 공식적으로 무역지대로 개장
- 국제 무역, 물류, 수출입 가공, 관광 등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농업, 가축 및 광물 자원의 교역이 활발하며, 철도 및 도로 인프라가 잘 구축

[그림 5-7] 에렌호트-자민우드 자유무역지대

<출처 : China Services INF (검색일자: 2024.09.11.)>

⑥ 진출기반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 추진

한국은 2023년 7월 우크라이나와의 정상회담에서 안보지원, 인도지원, 재건지원의 3대 분야에 대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합의 한 이후, 2023년 9월 양국의 합의하에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23억 달러 규모의 EDCF 공여협정을 체결하는 등의 지원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최대 공여국인 미국과 EU에 비하면 적은 규모로, 추후 재건사업 진출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대관계를 쌓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제적 사업의 일환으로 ODA, EDCF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앞선 '도시협력전략(UPS) 수립 및 기타 재건사업 발굴', '우크라이나 관련 법·제도 개선(안) 작성 및 제시',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의 자유무역지대 조성' 등의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전쟁으로 인해 숙련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지금부터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법률에서는 외국인 투자사업에도 우크라이나 현지인의 고용을 필수로 하고 있으므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재건사업 관련 분야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현지에서의 노동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또한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는 전시상황으로 우크라이나로의 직접적인 진출에는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 인접한 국가들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2022년 3월 「우크라이나 피란민 지원 특별법」을 시행하여 피난민들을 지원하는 등의 우호적인 정책으로, 2024년 1월 기준 폴란드 정부가 운영하는 피란민 쉘터에 42.2천 명이 거주 중이다. 이러한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인력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숙련된 노동력의 확보와 함께, 향후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우크라이나에 재정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크라이나인들의 한국에 대한 친밀함과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시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⑦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LH 내·외부 제도 개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외부적으로는 공기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하는 방안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리스크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방안과 절차 간소화, 인력 충원 등이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사업의 규모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므로,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LH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한국정부 주도의 사업일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LH 내부의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먼저 리스크 요소 도출 및 평가, 대응을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실시하되, 전쟁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국제투자보증기구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 등의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보험과 함께, 한국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은 정부보증을 끌어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 요인 도출부터 리스크를 평가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LH 내부에서의 투자의사결정 등의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한하여 이를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외부적으로도 각종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와의 협상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난 LH혁신안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LH의 해외사업 분야와 인력이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경우,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및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향후 유럽으로의 진출 기회 또한 확대될 수 있다. 이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LH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력 충원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분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과 관련해서는 ①사업의 발굴, ②인프라 구축, ③금융 및 재원의 조달의 3가지 분야로 나누어 LH 외 관련 기관들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먼저 사업발굴 부문에서는 해외건설협회의 역할이 요구된다.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해 국별 환경, 시장동향, 건설통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주활동, 프로젝트 조사·분석, EDCF 연계 목적 조사·분석, 현상공모 및 입찰 참여 등에 대해 수주활동 최대 1억 원, 기타지원 최대 3억 원 지원하는 등의 시장개척 지원,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통해 해외건설 정책지원 및 조사·연구 수행, 해외건설 금융지원 방안 발굴, 해외 인프라금융 협력세미나 개최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 현재에도 우크라이나 전황을 지속적으로 메일링 서비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내에 분야별 전문 공기업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도로 건설과 관리에 특화된 전문 공기업으로, 2005년 캄보디아 도로 시공감리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해외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분야 또한 시공감리, 사업관리, PPP, 기술자문, MP, ITS 등으로 다양하다. 한국전력공사는 발전과 송전 등에 특화된 공기업으로 1995년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사업을 시작으로, 화력발전, 재생에너지, 그리드·솔루션, 원자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력발전과 상하수도 등의 사업에 특화된 공기업으로, 1993년 중국 산서성 분하 강유역 조사사업을 시작으로 투자사업, ODA사업, 기술용역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공항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다양한 공기업들이 전문 영역에서 우크라이나 진출에 참여가 가능하다. 이러한 인프라 관련 공기업들은 LH가 해외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할 시 관련 연계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협력이 가능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사업에서와 같이 대량의 인프라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역할이 보다 중요하다.

마지막 금융 및 재원 부문에서는 KOICA와 한국수출입은행, KIND의 역할이 요구된다. KOICA는 현재 ODA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와의 긴밀한 교류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교육, 보건, 거버넌스, 인권 등 다양한 인도적 사업의 추진과 함께, 도시개발 등에 있어 도시 취약계층을 고려한 포용적 주거 및 도시개발과 공공공간의 조성 및 개선사업 수행, 회복력 있고 안전한 도시개발을 위한 다분야 통합, 핵심 인프라 건설 연계형 통합적 도시개발원조사업 추진 등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공적수출신용기관(Export Credit Agency, ECA)으로 대출·보증·보험 등 공적 지원역할 수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건설사를 대상으로 해외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대출 및 이행성 보증을 지원 지원하거나 해외 발주처 대상 건설공사 결제자금 지원, 투자형개발사업 대상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투자법인의 시설·운영자금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의 직·간접적 지분출자 등의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앞서 제시한 추진전략 중 사업분할방식 또는 복합사업방식 등의 추진 시 한국수출입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해외 프로젝트 기획과 타당성조사 지원,

프로젝트 정보 제공, 금융조달능력 제고 등 투자개발사업의 전단계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도시개발, 교통인프라, 전력·에너지 및 플랜트, 수자원 및 환경부문에 대해 사업발굴부터 사업개발, 금융지원 수행, 국내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발행되는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에 대해 발행시장 또는 유통시장에서 취득 또는 처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재원조달에서의 역할이 가능하며, 특히 LH의 컨설팅 기능이 KIND로 이관됨에 따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컨설팅에서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사업 발굴	해외건설협회 등	• 우크라이나 개황, 시장동향 등 정보 제공 • 우크라이나 진출 지원 → 민간기업간, 민간-공공간 연계 • 우크라이나 전황 정보 제공 등
인프라 구축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사업 연계 인프라 구축 • 인프라 구축 이후 관리·운영
금융 및 재원조달	KOICA	• 교육, 보건, 인력양성, 도시공간 개선사업 등 ODA사업 추진
	한국수출입은행	• 대출·보증·보험 등 공적 지원 • 직·간접적 지분출자 (EDCF를 통한 사업분할방식 또는 복합사업방식 등 투자)
	KIND	• 우크라이나 사업 추진 시 재원조달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컨설팅

[그림 5-8] 분야별·기관별 역할분담

제6장 결 론

1.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현황 및 전후 재건사업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동향, 과거 전후 재건사업의 사례분석, 우크라이나의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우크라이나의 재건 수요는 엄청난 규모로, 제2차 긴급 재건 피해 및 수요 조사(RDNA2)에 따르면 총 재건 비용은 약 4,110억 달러로 추산된다. 이 중 주택 재건 비용만 686억 달러에 이르며, 주택뿐만 아니라 인프라, 산업 시설, 에너지, 교통망 등도 전면적인 재건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다자간 기구가 주도적으로 자금 조달과 재건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국은 6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사업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후 재건사업은 이라크와 리비아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단기적인 복구 이상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과거의 재건사업들은 전후 정치적 안정성이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으며, 국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법·제도적 기반마련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역시 정치적 안정과 함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까지도 다양한 법률의 제·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LH를 위시한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법과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크라이나의 법적 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현지의 도시계획과 개발 관련 법률이 서로 상충하고, 법률의 적용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최근의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법, 토지법, 외

국인투자법, PPP법 등 우크라이나의 주요 법률에 대해 살펴봤다.

상기의 우크라이나 현황과 전후 재건 사례, 우크라이나 법률 등에 대한 검토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전략 수립을 위한 SWOT 분석을 통해 강점, 약점, 기회요소, 위협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LH가 갖는 가장 큰 강점은 도시 및 주택개발 분야에서 축적된 풍부한 사업 경험과 국내외 여러 기관 및 민간기업과의 강력한 협력 네트워크이다. 또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LH가 우크라이나에 진출할 경우 공적 부문의 다양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점으로는 LH가 해외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성공적으로 수행한 해외사업 경험이 적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LH의 해외사업 추진 과정은 긴 사전 준비 기간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사업 착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외적요인으로서의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보면, 넓은 국토와 4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재건사업 추진 시 수요 확보가 용이하다.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복구가 필요한 만큼 다수의 재건사업이 발주될 가능성도 높으며, 우크라이나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 인접국들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어 물자 확보와 서유럽 진출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위협요소로는 여전히 진행 중인 전쟁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과 열악한 재정 상황,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EU의 강한 지원 의지로 인한 경쟁 심화가 있다. 더불어 전쟁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와 각종 리스크가 잠재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전략으로는 먼저, LH는 도시계획 및 산업단지 개발 등 강점을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진출하고, 공공 및 민간 분야가 함께 참여하는 One Team Korea를 구성해 종합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LH의 부족한 해외사업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사업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업과 협력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등의 신속한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PPP 형태로 장기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출하고, 유·무상 원조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며, 인접국인 폴란드 등에 먼저 진출해 자원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기반을 다져야 한다. 마

지막으로, LH는 해외사업 추진 시 리스크 요소를 사전에 도출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MIGA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우크라이나 정부의 보증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더불어, 전쟁으로 인해 예상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ODA 사업 등을 통해 현지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폴란드 등의 인접 국가에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 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목표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기반 마련 및 전략 수립"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3가지 주요 추진전략을 도출하였다. 첫째, 원활한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선제적 사업 추진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미국과 EU 등의 경쟁 속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다양한 사업방식을 활용한 재원 조달로, 우크라이나의 열악한 재정 상황과 LH의 공기업 특성상 해외사업 추진 시 받는 제약을 고려하여, PPP(민관협력)나 분할, 복합 방식의 사업 구조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전략이다. 셋째, LH 내·외부 기반 조성 전략은 LH 내부 조직 개편과 함께 한국 정부 및 기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을 포함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방안들로는, ①One Team Korea 구성 및 운영, ②도시협력전략(Urban Partnership Strategy, UPS) 수립 및 기타 재건사업 발굴, ③PPP사업 및 복합사업구도 등 사업방식 다양화, ④우크라이나 관련 법·제도 개선(안) 작성 및 제시, ⑤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와 연계한 진출, ⑥진출기반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 추진, ⑦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LH 내·외부 제도 개선의 7가지를 도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①사업의 발굴, ②인프라 구축, ③금융 및 재원 조달의 3가지 부문을 담당하는 유관기관들과의 역할분담안을 제안하였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한국 기업들에 큰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한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복잡한 법·제도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하기 위한 국내에서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재건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는 체계

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통해 법·제도적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장기적인 전략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LH와 민간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현황 및 전후 재건사업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동향, 과거 전후 재건사업의 사례분석, 우크라이나의 도시계획 및 개발 관련 법제도 검토를 중심으로,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 이후의 원활한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한 방안들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단일 사업에 대한 검토 및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물론, 단일 사업의 도출은 현재의 우크라이나 피해 상황과 그에 따른 복원계획을 기반으로 사전에 도출할 수 있지만, 10월 현재에도 여전히 전쟁이 지속되면서 그에 따른 피해양상 또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기에 향후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재건사업의 유형과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재건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WB)과 국제기구 등에서 자료수집 및 분석을 통해 재건이 필요한 분야와 규모 등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앞서 제시한 전략 중 우크라이나 재건과 기존 도시들의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인근 국가와의 연계를 위한 접경지역에서의 자유무역지대 개발 등 향후 수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 사업에 대한 후속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작업들이 선행될 때 LH가 향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실제 단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와 여타 해외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정부의 기조에 대응하기에는 해외사업 추진과 관련된 LH의 업역 및 관련 조직은 과거에 비해 축소된 상황이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향후 LH 해외사업의 방향 설정과 그에 따른 조직의 재구성, 관련 내규의 제·개정 등에 대한 전략적인 연

구의 수행 또한 요구되며, 연구 이외에 국토부 등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KIND와 해외건설협회 등의 유관기관과 민간기업들과의 소통을 위한 채널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와 업무 등이 누적될수록 향후 LH가 해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주도적이고 결정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s

강세기(2024), “우크라이나 재건추진 동향(RDNA3 주요 내용”, 해외건설 브리프,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2023),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정부간 협력 성과와 향후 지원 방안”,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설명회 자료

김지혜, 이성우, 김엄지, 김지영(2020), 「주요국 러시아 에너지 개발 사업 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비교분석」 중간보고서, KMI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러시아 침공을 전후로 한 우크라이나의 지역별 경제 격차 문제 분석」

박복영(2003), “이라크 전후 재건과정 및 재건비용”, 오늘의 세계경제 03-1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복영, 배희연(2003),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동향 및 전망 : 인프라 복구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유정(2012), “리비아, 카다피 사태 이후 재건 사업 관련 우리기업의 진출 가능성 확대”, 해외경제투자정보, 한국수출입은행

법무법인(유)태평양(2024), “우크라이나 PPP사업관련 소개”, 우크라이나 PPP법률 및 건설시장 진출절차 세미나 발표자료

법무법인(유)태평양(2024), “우크라이나 건설시장 진출시 참고사항”, 우크라이나 PPP법률 및 건설시장 진출절차 세미나 발표자료

손성일(2006), “대이라크 개발원조의 성과와 한계 : 주요 공여국과 KOICA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한국개발연구원(2018), 「2017/18 우크라이나 지식공유 프로그램 : 국내 및 해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메커니즘 및 도구」

유영방(2006),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한 한국정부의 원조”, 국제개발협력, 한국국제협력단

이기열, 신수용, 최나영환, 이현주, 조진철, 유현아, 어은주, 송정현(2018), 「환동해권 국내기업 진출 사례 분석 및 개발 추진전략 – 극동 러시아 지역 사례 중심으로」, KMI

이남훈(2017), 「물류시설의 투자와 개발(폴란드 아마존 물류센터 사례)」

이상헌, 정연우, 이승은(2023), 「LH 글로벌사업 추진을 위한 PPP 활용방안 연구」, LH 토지주택연구원

키이우 도시계획부(2024), 「ГЕНЕРАЛЬНИЙ ПЛАН МІСТА КИЄВА(키이우 마스터플랜)」

폴란드 투자무역청(2019), 「Polish Investment Zone」

한국투자증권(2018), 「산업분석」

KIND(2023), "한-우크라이나 간 '6대 선도프로젝트'",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설명회 자료

KMI(2018), 「해운·조선·에너지, 자원개발과 연계한 북극항로 진출 확대 방안」

KOTRA(2003),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 진출방안 및 KOTRA 지원대책」

KOTRA(2024), 「2024 우크라이나 진출전략」

KOTRA(2017),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KOTRA(2023), 「우크라이나 국가정보」

LH 토지주택연구원(2020), 「해외개발 Preview 러시아편」

LH 토지주택연구원(2023), 「해외개발 Preview 우크라이나편」

Mykola Habrel, Mykhailo Kosmii & Mykhailo Habrel, 2022. "Meritocentric model of spatial development in Ukraine: Updating the General scheme of planning of the state territory", SPATIUM 47, 21-31

National Recovery Council(2022), 「Ukraine's National Recovery Plan」

Ukraine Invest(2023), 「State Support for Industrial Parks」

WEF(2019),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World Bank, Government of Ukraine, EU and UN(2024), 「Ukraine Third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RDNA3)」

World Bank, Government of Ukraine, EU and UN(2023), 「Ukraine Rapid Damage and Needs Assessment」

구글 지도, https://www.google.com/maps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eei.re.kr

우크라이나 국회 홈페이지, https://zakon.rada.gov.ua/laws/main/en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http://mpe.kmu.gov.ua
우크라이나 정부 홈페이지, https://www.kmu.gov.ua/en
우크라이나 지방분권(Decentralization in Ukraine) 홈페이지(New territorial administrative division is approaching – some thoughts about situation in the field of spatial planning in Ukraine), https://decentralization.gov.ua/en/news/12630
우크라이나 통계청, http://www.ukrstat.gov.ua
폴란드 투자무역청, https://www.paih.gov.pl/en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China Services INF, https://www.chinaservicesinfo.com
Global Trade Atlas,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mi/info/kr/global-trade-atlas.html
IEA Data and Statistics,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
KIEL 세계경제연구소, https://www.ifw-kiel.de
KIEL 연구소의 Ukraine Support Tracker, https://www.ifw-kiel.de/topics/war-against-ukraine/ukraine-support-tracker
Kommersant 홈페이지, https://www.kommersant.ru
Logistics Cluster 홈페이지, https://dlca.logcluster.org/23-ukraine-road-network
Novatek, 홈페이지, http://www.novatek.ru
Statista(2023), “Ukraine : Urbanization from 2012 to 2022”,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455947/urbanization-in-ukraine
WFP Logistics Cluster, https://dlca.logcluster.org
World Steel Association, https://worldsteel.org
一带一路战略平台, http://www.drcnet.com.cn/www/ydyl/channel3.aspx?uid=8012#zhidao
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 홈페이지, https://www.mofcom.gov.cn

VOA 뉴스(2024.10.24.), “한국, 우크라이나에 23억 달러 추가 지원하기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07.18.), “국제금융기구 수장들과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 참여 방안 논의”
무역뉴스(2024.10.24.), “최상목 "우크라이나 지원 본격 이행‥연내 2억달러 인도적 지원"”
한국농정(2023.10.22.), “우크라이나발 위기, 사료값 폭등 불 지른다”